

연구보고서 2022-07

제주지역 재산 상속 · 증여의 성별 구조와 향후 과제

| 신승배,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와 향후 과제

연구 책임자 :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 문순덕(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구 기간 : 2022년 2월 ~ 10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성원 간의 결속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재산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자녀의 인생 출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제주사회에서 재산 상속 관행은 아들과 장자 중심의 제사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제사 문화가 점차 열어져 가고 재산 상속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과 분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래 제주사회의 상속은 전통적 장남·아들이대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 여건 및 부모자녀 관계 속성에 따라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제주 도민의 재산 상속·증여 경험,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재산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관행,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결과 제주지역에서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부동산 상속은 주로 아들로 이어지는 반면 딸은 현금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여전히 높지만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의 선호도는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대비형과 현실형, 평등형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산 상속 인식에 있어 남성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을 상속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제월전의 상속도 제사주제자보다 장자 상속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벗어나 평등적이고 현실적인 상속 인식 고취,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이해 촉진, 재산 상속의 의무에서 선택으로의 변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 방안 마련, 재산 상속에 따른 가족공동체의 해체 위기 인식 각성 필요 등이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고승한 원장, 제주문화예술재단 고희송 지역문화팀장, 제주축제산업진흥원 김석범 원장, 법무사 김상식 사무소 김하룡 사무장,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안현미 교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오수정 경영지원실장, 제주테크노파크 경영혁신실 진관훈 수석연구원, 제주복식연구소 현진숙 소장과 익명의 평가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을 맡은 본원의 신승배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제주연구원 문순덕 석좌연구위원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의 노고를 담아 마련된 본 보고서가 제주사회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가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도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연구 요약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도민의 재산 상속·증여 경험,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재산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관행,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재산 상속(증여 포함) 관련 관습과 의식, 재산 상속·증여를 둘러싼 분쟁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최근 공개한 8차년도(2019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반적 현황 파악
 - 이 자료에 포함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비교분석
- 제주도민 성인대상 재산 상속·증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성별 특성, 상속·증여 경험 및 형태, 상속 관련 관습적 실태, 자녀 등에게 재산 증여 경험, 향후 상속·증여 의사, 상속·증여 인식, 재산 상속 분쟁 인식, 재산 상속 관련 의식, 재산 상속 선호형태 등 분석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한 재산 상속·증여 문화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제안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재산 상속·증여 관련 문헌연구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년도 원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40세 이상 성인 남녀 520명 대상 설문조사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 조사
- 조사기간: 2022년 7월 27일 ~ 8월 10일
- 표본추출방법: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비례할당표집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4.3%

○ 심층면접조사

- 재산 상속/증여 경험이 있는 40세 이상 성인 남녀 16명 대상 심층면접
- 표본추출방법: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누적표집
- 조사기간: 2022년 6월 20일 ~ 7월 30일

○ 전문가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계,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다.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년도 원자료 수집 및 분석
3단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4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5단계	분석 결과 정리	⇨	· 분석결과 정리 · 집필

제2장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법·제도 검토

1.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법·제도 검토

가. 재산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함

나. 상속의 형태

- 상속 형태는 첫째, 상속대상에 따라 신분 상속과 재산 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과거 호주상속제가 2008년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재산 상속만이 인정됨. 둘째,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이 있으며, 셋째, 상속인의 결정 방법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 있음

다. 상속분

- 상속분이란 각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의무의 비율, 즉 배당 받을 몫의 비율을 뜻함. 즉 상속재산의 분할 전, 상속 재산의 1/2과 같이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속분권”을 의미함. 이와는 달리 계산한 결과 각 공동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할 재산가액인 “상속분액”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은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라. 증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민법 제554조)

2.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특성

- 제주지역의 재산 상속은 생전처분에 의한 분재,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재산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재, 법정상속의 세 가지가 있었음
- 최근 제주지역 재산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수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며, 상속세 산출세액 또한 2017년 25,840백만원에서 2021년 57,81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증여세 신고 건수 또한 2017년 3,999건에서 2021년 5,653건으로 증가했음

으며, 1인당 평균 증여 재산 가액 또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3.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서 본 상속·증여

가. 상속 또는 증여 경험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전체 1.2%이며, 그중 여성 1.5%, 남성 0.9%로 여성의 경험 비율이 0.6%p 더 높음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주된 형태로 나타남
 -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 69.3%, 남성 72.7%로 남성이 3.4%p 더 높음
-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배우자인 반면 남성은 부모가 주를 이루고 기타 친인척도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은 주로 남성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주를 이룸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대부분 2010~2019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5억원 이상 재산 금액은 여성과 60대 이상에서 더 높음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18.5%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60대 이상이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유형은 자녀 51.3%, 형제·자매 41.1%, 친척 7.6% 순으로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성별로는 여성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주로 배우자이기 때문임
-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재산 분배 방식은 남녀 모두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균등분배 경험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는 100.0% 균등분배인 반면 60대 이상은 절반 정도만 균등분배 방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나. 향후 상속 또는 증여 기대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음. 다만 상

속 또는 증여 기대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주로 자신의 부모님인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는 남녀 모두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음. 다만 거주용 부동산은 남성이 특히 남성의 기대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현금에 대한 기대는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은 주로 살아있는 동안 전부 활용할 계획인 경우가 가장 많음

다.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30.3%이며, 특히 여성의 기대가 더 높음.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는 대부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남성은 현금이 거주용 부동산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은 친족에게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5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할 계획인 경우가 46.0%로 많음.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에 대해 여성은 친족에게 남길 계획이 가장 많고, 남성은 근소한 차이로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이 조금 더 많음

라. 증여한 경험

- 증여를 한 경험은 0.9%로 적은 편이며, 성별로는 여성 0.8%, 남성 1.1%로 남성의 경험이 0.3%p 더 높음.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여성과 60대 이상은 부동산, 남성과 50대는 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을 증여한 대상은 대부분 첫째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의 첫째 자녀 비율이 73.7%로 특히 더 높음
- 증여한 시기는 2018년이 가장 많음. 증여한 당시 재산의 금액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여성은 5천만원 미만이 39.2%로 가장 많고, 남성은 1억~2억 미만이 29.6%로 가장 많음

마.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의사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비율은 전체 40.3%로 나타났으며, 여성 35.1%, 남성 47.4%로 남성의 상속 또는 증여 의사가 12.3%p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는 자녀 수대로 균등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등분배 방식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동거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 조건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자산이 주류를 이룸. 여성과 남성, 50대와 60대 이상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고, 40대는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않은 이유는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 생전 모두 소진이 그 이유로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소결

- 재산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말함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민법 제554조)
- 상속이든 증여이든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하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남겨주신 재산인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분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을 의미함. 또한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승계 가능하지만 증여는 친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제주지역의 재산 상속은 생전처분에 의한 분재,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재산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재, 법정상속의 세 가지가 있음. 또한 최근 상속과 증여의 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공개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년도 자료를 통해서 상속·증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여성이 더 높았으며,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주된 형태로 나타났음.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배우자인 반면 남성은 부모가 주를 이룸
 - 여성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주로 배우자이기 때문임
 -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재산 분배 방식은 남녀 모두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았지만 남

성의 균등분배 경험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는 100.0% 균등 분배인 반면 60대 이상은 절반 정도만 균등분배 방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음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30.3%이며, 특히 여성의 기대가 더 높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는 자녀 수대로 균등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않은 이유는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 생전 모두 소진이 그 이유로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3장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 조사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분석대상자는 여성 263명, 남성 257명으로 총 520명이며, 이 중 여성은 50.6%를 차지함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거주자가 68.8%로 가장 많으며, 성별 거주지도 여성과 남성과 모두 제주시 거주자가 각각 70.7%, 66.9%로 가장 많음.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으며, 성별 연령도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 이상이 각각 43.3%, 38.1%로 가장 많음. 거주기간별로는 60년 이상 36.9%로 가장 많고 여성의 거주기간은 60년 이상이 40.7%, 남성은 50년 미만이 38.9%로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이 79.6%로 가장 많으며, 성별 혼인상태는 역시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각각 74.5%, 84.8%로 가장 많음.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62.5%로 가장 많음. 성별 교육수준도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69.2%, 55.6%로 가장 높음
- 맞벌이인 경우는 74.4%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가 각각 71.4%, 77.1%로 가장 많음.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44.4%로 가장 많음.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도 여성과 남성 모두 500만원 이상이 각각 41.8%, 47.1%로 가장 많음.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이 2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가 24.2%로 많음.

- 여성의 직업은 서비스직 35.0%, 남성의 직업은 기능/조립/단순노무직이 29.6% 가장 많음
- 건강상태별로는 좋음이 63.8%로 가장 많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이 좋다는 비율이 각각 58.2%, 69.6%로 가장 높고 특히 남성이 더 높음. 계층의식은 중간층이 86.9%로 가장 많음. 여성과 남성 모두 중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음

2. 상속 또는 증여 경험

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 분석대상자의 79.2%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맞벌이 부부, 전문대졸 이상의 경험이 가장 많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건강상태 좋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은 부동산이 50.7%, 현금 47.1% 등의 순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음. 여성과 40대는 현금이 가장 많고, 남성과 50대, 60대 이상은 부동산이 가장 많음. 상속 또는 증여를 준 피상속인과 증여자는 주로 부모이며, 그중 아버지가 52.2%로 가장 많음. 다만 아버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는 남성 71.2%, 여성 32.4%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음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음. 다만 60대 이상은 1999년 이전이 55.5%로 가장 높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48.2%로 가장 많음. 5천만원 미만은 여성과 60대 이상이 각각 59.8%, 57.8%로 가장 높음
- 공동상속 경험은 48.1%이며, 이 경우는 50대와 서귀포시 거주자가 특히 더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공동상속인 유형은 형제·자매가 대부분임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유산의 분배 방식은 장남·장녀가 많이 받거나 형제·자매간 균등분배 방식이 각각 41.7%, 40.2%로 가장 많고 부모 봉양 자녀 우대는 4.0%에 그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특히 장남·장녀 우대는 40대와 60대 이상, 계층의식 중간층이 높고, 균등분배 방식은 50대와 계층의식 상층에서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없음’ 70.4%로 나타남. 다만 기대가 있는 경우는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남성과 전문대졸 이상 더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대 유산의 종류로는 거주용 부동산이 37.5%로 가장 많음. 다만 여성과 50대는 기타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 40대와 60대 이상은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음
-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은 자녀에게 남기려는 계획이 6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하겠다는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31.0%로 많음.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자녀에게 남기려는 계획이 71.3%로 가장 높고, 미혼/기타는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모두 자녀에게 남기려는 계획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농림어업직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 배우자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있음’ 23.8%, ‘없음’ 76.2%로 나타남.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경우는 여성,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건강상태 좋음이 가장 높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대하고 있는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이 4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금이 28.6%로 나타남.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는 여성이 특히 더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함
- 기대 유산은 자녀에게 남기려는 계획이 7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28.4%로 많음. 자녀에게 남기려는 계획은 서귀포시 거주자가 91.4%로 특히 더 높음

라. 재산 증여 경험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16.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함. 또한 고졸 이하, 농림어업직, 건강상태 좋지 않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경험이 증가함

-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현금이 63.5%로 가장 많음. 현금을 증여한 경험은 연령대가 낮을 수록 증가하고 부동산 증여 경험은 50대 이상에서 나타났고 특히 60대 이상이 높음
- 증여한 대상은 첫째 자녀가 55.5%로 절반가량 차지함. 증여한 시기는 2010~2019년이 49.2%로 가장 많음
- 증여 당시의 재산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음. 여성은 5천만원 미만, 남성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50대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이 가장 많고 40대와 60대 이상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음

마.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의사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의사는 74.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의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농림어업직과 사무직/판매직, 계층의식 중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유산의 분배 방식은 자녀균등분배를 가장 선호하고, 그 영향력은 적지만 여전히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 조건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60대 이상이 더 선호함. 자녀균등분배 방식은 배우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4.7%,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30.7%,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남. 이는 길어진 노후 기간에 대한 부담의 영향으로 보임

3.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실태

가.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

-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및 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남녀 균분상속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확대되고 상속과 부양의 연결고리 또한 약화되었지만 전통형 상속 인식 중에서도 재산 상속을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를 유지되고 있음

- 사회환원형 상속 인식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반면 평등형 인식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유형이며 자녀균분상속을 가장 선호하고, 현실형 상속 인식은 부모를 봉양한 사람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 경제적 도움의 필요, 구두 상속, 애착 정도 등의 조건보다 부모의 봉양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대비형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형이며,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과 상속보다는 노후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선호도가 특히 높아 고령화 사회로의 변모와 길어진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고 있음

나.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유형별 비교

- 재산 상속 인식의 선호도는 총 5점 중 노후대비형 4.26점, 평등형 3.63점, 현실형 3.35점, 전통형 2.59점, 사회환원형 2.03점으로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사회환원형이 가장 낮음
- 전통형 선호도는 남성과 60대 이상, 고졸 이하가 더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농림어업직, 건강상태 좋지 않음, 계층의식 중간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환원형 선호도는 남성, 50대 제주도 거주자, 관리직/전문직, 계층의식 하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등형 선호도는 여성, 40대, 서귀포시 거주자,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 계층의식 상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실형 선호도는 여성, 40대, 서귀포시 거주자, 미혼/기타, 고졸 이하, 계층의식 상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대비형은 여성, 제주도 거주자, 전문대졸 이상이 더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에 관한 요인 분석

- 표본적합도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값이 .810으로 적합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000으로 .05보다 작아 자료의 상관이 5요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1요인은 21개 문항 가운데 6개의 측정변인이 묶이는 것으로 전통형에 해당하고, 2요인은 3개의 변인이 묶여 사회환원형에 해당하며, 3요인은 4개의 변인이 묶여 평등형에, 4요인은 5개 변인이 묶여 현실형에, 5요인은 나머지 3개 요인이 묶여 노후대비형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적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Cronbach의 α 계수는 전통형 .879, 사회환원형 .872, 평등형 .811, 현실형 .676, 노후대비형 .631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임
- 따라서 재산 상속 선호 형태는 전통형, 사회환원형, 평등형, 현실형, 노후대비형의 각기 별개의 구성체로 구성되며 이 구성체 간에는 판별·수렴 타당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음

4.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 부모 사망 당시 유산 배분 방식은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은 고졸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사무직/관리직, 건강상태 좋지 않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에 있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73.3%이며, 아들과 딸의 차별은 제주도 거주자, 계층의식 중간층과 하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남
 - 차별 유형은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형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들 2 : 딸 1 비율의 차등 상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형태는 남성과 농림어업직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들과 딸의 2 : 1 차등 상속 유형은 여성과 서비스직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은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이는 계층의식 중간층과 하층에서 더 많이 나타남. 계층의식 상층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방식이 가장 많음
-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시기는 생전 증여가 4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음. 생전 증여는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더 많이 이뤄졌으며, 전문대졸이상, 맞벌이 부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사무직/판매직과 관리직/전문직인 경우에 더 많이 이뤄졌으며, 계층의식별로는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이뤄졌으며 특히 상층에서 더 많이 이뤄짐
- 제월전의 상속은 장자 상속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제월전의 장자 상속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고졸 이하, 맞벌이가 아닌 경우, 농림어업직에서 더 많이 나타남.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무 승계 방식은 상속인 공동 책임이 55.0%로 가장 많고, 상속인 공동책임은 여성과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채무 승계의 범위는 상속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형태가 90.0%로 대부분임

5. 재산 상속 분쟁 관행

- 상속 분쟁의 해결은 집안(가족)회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많으며, 집안(가족)회의를 통한 해결은 50대, 서귀포시 거주자, 전문대졸 이상, 건강상태 보통에서 가장 많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증가함
- 바람직한 상속 분쟁의 해결 방법 역시 집안(가족)회의를 선호하는 경우가 67.3%로 가장 많고, 소송에 의한 해결은 15.2%에 그침. 집안(가족)회의를 통한 분쟁 해결은 서귀포시 거주자, 전문대졸 이상, 관리직/전문직에서 특히 더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을 경험한 경우, 만족도는 2.42점으로 낮은 편임.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만족도는 남성이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함

6.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 재산 상속에 대한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하여 알고 있는 비율은 87.7%임. 남녀균분상속을 알고 있는 비율은 남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 서비스직이 가장 높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증가함
- 남녀균분상속을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5.5%이며,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0대, 사무직/판매직, 건강상태 보통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남.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으로 부모를 부양한 자녀 우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를 인지하고 있던 비율은 33.8%이며, 인지 비율은 남성, 서귀포시 거주자, 맞벌이,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건강상태 좋음인 경우에 가장 높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증가함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을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6.5%이며, 매우 적합 인식은 서귀포시 거주자, 계층의식 상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채무 승계 범위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된다는 한정승인이 95.6%로 가장 지지도가 높고, 한정승인 지지는 서귀포시,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남

-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82.5%로 높고, 이러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함. 또한 제사주재자 우대는 제주도,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농림어업직, 건강상태 좋지 않음, 계층의식 하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남

7. 소결 및 시사점

가. 요약 및 소결

1) 상속 또는 증여 경험

-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부동산의 상속이 남성에게 더 많이 이뤄짐. 또한 부동산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아 부동산의 상속이 주로 아들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반면 딸은 현금 형태가 주를 이루며,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을 받은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낮은 편임. 기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부모이며, 기대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지만 여성의 거주용 부동산 기대는 남성보다 낮음. 여성은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에 비해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증여에 대한 기대가 높고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후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상속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16.8%에 그쳤고, 연령이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증여한 경험이 더 많고, 주로 현금을 증여한 경험이 주를 이룸. 앞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40대와 50대에도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재산의 상속 및 증여를 유예하고 있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여전히 높고, 기대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 역시 높지만 기대 유산의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적지 않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로 생전 자기 소진과 유산을 남길 여유 부족이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의 선호도 평균이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등형, 현실형, 전통형, 사회환원형 순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대비형과 현실형, 평등형에 선

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산 상속 인식에 있어 남성보다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형 상속 인식 중에서도 부모 봉양 자녀에 대한 우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 부양 책임은 상속 인식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남

3) 재산 상속의 관습 실태 및 관행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경험이 73.3%로 높고, 아들과 장자 우대,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 형태의 차별이 행해짐. 제월전의 상속도 제사주재자보다 장자 상속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재산 상속 분쟁은 주로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하였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만족도는 2.42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4)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인식

- 재산 상속에 대한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와 적합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도 적합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남
-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사주재자 우대 인식이 높음

나. 시사점

- 제주사회의 재산 상속 인식은 탈전통적 과도기에 머물고 있음.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벗어나 평등적이고 현실적인 상속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못함. 탈전통적 상속 인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산의 형성은 부부 공동 노력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여성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재산의 분배는 전통적 관습에 의존하여 장자 또는 아들 우대 등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
 - 성평등 인식 확산과 함께 성에 따른 차별적 재산 분배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고,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 및 적합성 인식도 높지만 제사주재자 우대와 60대 이상의 아들과 장남·장녀 우대 인식은 여전함
 - 관습적 상속 인식을 탈피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60대 이상을 위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

대에 이르는 역사 속의 남녀균분상속 사례를 활용하면 성평등 의식 고취와 함께 탈전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남녀균분상속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부모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어 이른 증여 요구가 있는 경우 자녀세대와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 세대 간 갈등완화 및 이해 촉진 노력이 필요함

- 50대와 60대는 이미 40대~50대에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들의 증여를 한 경험은 이에 비해 매우 적어 부모세대들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세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것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지가 높지만 노후불안 때문에 재산 분배 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여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지속적인 저성장 경제환경과 불평등 속에서 재산축적이 어려운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과 시기가 부모세대와 다를 수 있음

- 최근에는 젠더 갈등과 더불어 세대 갈등도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세대 갈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부모세대에는 은퇴 준비, 은퇴 후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자녀세대에는 금융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관계 교육이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음

제4장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심층면접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재산의 증여와 상속 방법, 시기,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었고, 증여와 분증이 가족구성원 간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해결 방법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장에서는 피상속인/상속인 특성, 증여자/수증자 특성, 피상속인/상속인 기대치, 증여자/수증자 기대치, 자식이 상속인/수증자가 되어야 한 이유, 아들과 딸이라는 성별에 따른 증여와 상속의 불평등 등을 조사하고자 함

나. 조사방법

- 피상속인/상속인, 증여자/수증자 경험이 있는 4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16명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심층면접 후, 각 사례를 분석함
- 2022년 6월 20일 ~ 7월 30일

다. 조사내용 및 서술방법

- 심층면접 설문지는 가이드에 해당하며, 인터뷰 시점에서 면접 대상자에 따라 부분 수정함
- 심층면접 조사 영역은 크게 재산 증여와 재산 상속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절차와 방법, 성차별 정도,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미래 대안 등을 포함하였음
- 심층면접 조사 내용(표 4-1 참조)
 - 증여자(부모세대)의 인식, 수증자의 인식 변화
 - 피상속인(부모세대)의 인식, 상속인의 인식변화
 - 재산 증여/재산 상속과 의무
 - 재산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대별 인식 변화

라.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로는 여성 10명, 남성 6명으로 총 16명이며, 연령별로는 40대 1명, 50대 6명, 60대 8명, 70대 1명임
- 상세 내용은 <표 4-2> 참조

2. 증여자(부모세대)와 수증자의 인식 및 태도

가. 증여자(부모세대)의 재산증여에 대한 고정관념

- 일반적으로 부모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식을 위해 증여를 원하며, 이를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음. 반면 자식은 자신들의 증여 지분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하기도 함. 다른 한편으로 재산 증여와 관계없이 부모 봉양 인식이 높고, 재산 증여에 특별한 기대

가 없기도 함

-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의 입장에서 증여시기를 정할 때 자식의 성실성과 경제적 자립도를 고려함. 증여시기 및 부모와 자녀 간 분배 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아들과 딸의 차등 분배, 제사의례 의무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 존재
- 증여자의 재산 분배 결정권은 고령일수록 남편의 결정권이 큼. 60대로 내려오면 부부간 분배기준 협의 사례가 있기도 함

나. 증여자(부모세대)의 재산 증여 시기 및 방법

- 재산의 증여는 아버지의 사망 후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과 증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함. 노후자금 준비를 이유로 한 재산의 분배 지연, 분배 방법, 자녀의 이른 증여 요구나 더 많은 분배 요구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부모 세대는 제사의례 수행을 이유로 장자 우대, 아들과 딸의 차등 분배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균등분배를 요구하기도 함
- 수증자들은 증여자가 증여 의사를 밝혔을 때와 달리 증여 또는 상속 시점에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함. 상속시점의 상황에 따라 원 제안을 거절하고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함. 한편으로 본인이 상속인일 때는 아들, 장자, 부모 봉양 등 유리한 주장을 통해 더 받으려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증여할 때는 균등분배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함
- 증여는 부모 생전에 이뤄지므로 자식들의 수용이 비교적 수월하나 부모 사망 후 이뤄지는 상속은 자식들이 주체가 되므로 서로 자신의 몫을 계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때 배우자와 장자의 역할이 더 중요함
-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부모 사후 상속문제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의 폭을 확대하는 집안이 늘어나고 있음
 - 자식의 결혼자금, 전세자금, 주택매입 자금 지원, 사업자금 지원 등을 이유로 증여하기도 함. 이때 자녀 간 차등이 발생하게 되면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딸의 집으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딸에게는 현금 증여 경향이 강하며, 딸이 부모의 재산 증식에 주도적인 기여하더라도 아들이 수증 1순위가 되거나 더 많은 지분을 수증하게 되기도 함

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갈등 양상

- 최근 길어진 노후기간과 함께 부모세대는 노후비용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재산 상속과 증여의 방법, 시기, 편안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늘어남. 이에 따라 부모세대는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 선호가 증가하고,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자녀의 부모 부양 거부를 우려하기도 함. 부모 부양책임과 돌봄 비용 부담이 자식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증여자와 수증자 간 분배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기도 함. 법률에 기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가족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자녀수대로 균등분배하더라도 부모 봉양, 장자 우대 등을 이유로 더 많은 분배 지분을 요구하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한 자녀를 우대하거나 자녀의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을 이유로 차등분배에 동의하더라도 부모 사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부모세대의 입장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자녀 위주의 재산 증여 관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3. 피상속인(부모세대)과 상속인의 인식 및 태도

가. 피상속인(부모세대)의 재산 상속 고정관념

-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녀들 간 상속 분배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산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가족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함
- 피상속인인 부모세대는 축적한 재산의 다음 세대 상속을 당연시함. 특히 8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장남의 재산 상속이 당연한 세대이기도 함. 최근까지도 유교적 관습에 따라 장남의 재산 상속과 가족의례 책임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고, 장남과 차차남 간에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나기도 함
- 상속인인 자녀세대는 2000년대 들어서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모의 재산 규모와 상속, 증여에 관심이 증가하고 상속에 대한 기대심리도 증가함.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만 상속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램. 또한 60대 부모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 결정권은 남편 사망 후 어머니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장남 상속을 당연시하는 80대 이상의 부모세대에서도 어머니에 의해 조상전을 차남에게 상속한 경우도 있고, 남편 사후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 분배 방식을 결정하기도 함

- 이 경우 아들이 이를 수용하더라도 장자 의무는 유지하면서 상속지분이 축소되는 경우 며느리와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

나. 재산 상속의 시기 및 방법

- 재산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이행됨. 이때 자녀들 간 상속 재산의 분배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장자 상속 관습이나 부모 부양책임 불이행, 부모 돌봄비용 부담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분배방식을 주장하기도 함
- 재산의 주 소유자인 아버지의 사망 시 배우자인 어머니 또는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합의를 통해 분배 방법을 결정하게 됨. 어머니의 결정권이 약한 경우, 장남이나 어머니를 돌보는 자녀에 의해 분배 방식이 결정되기도 함. 분배방법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법에 따르거나 균등분배 방식을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 간 합의가 우선임
- 과거에는 장자상속 관례에 따라 딸이 재산축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그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장자의 재산분배 결정에 따라 딸들이 상속 포기각서를 써주기도 함
- 최근에는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딸들도 상속지분을 요구하는 추세이며,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재산 분할이 갈등의 쟁점이 되자 일부 부모세대는 사망 후 자녀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함
- 제주도는 과거부터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은 가능하면 딸에게만 증여하는 풍속이 있음. 딸에게는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으로 증여를 제한하고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함. 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나 집안 사정에 따라 남편 소유 재산과 합쳐지거나 아들에게 상속하기도 함
- 아들이 없는 경우 친정재산을 상속한 딸이 친정부모의 제사와 별초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제사주제자의 몫으로 외손자에게 친정부모의 집터를 상속하기도 함

다. 재산 상속에 따른 갈등 양상

- 재산 분배는 가족 내 참여할 갈등을 초래하기도 함. 집안 재산 축적에 주된 기여를 한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이나 부모 부양을 전담한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함
- 특히 아들에 비해 딸의 기여가 분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시기가 오면

아들에게 상속하는 관습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쓴 자녀가 있는 경우도 다른 자녀들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음

- 생전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 지분을 공개했으나 균등상속을 구두로 밝혔지만 사후에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40대 이하 세대들은 제사명절과 같은 유교의례에 대한 의무감이 약하고 이를 재산 상속과 별개로 인식하기도 하며, 30대 자녀들은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부모의 재산을 사용하길 바라고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원함
- 상속 재산의 분배에 이견이 있는 경우 침해한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재산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남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 분배에 관한 부모의 입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4. 증여자의 노후 보장과 수증자의 역할

가. 부모 봉양 및 돌봄 의무

- 자녀가 재산 상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또는 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딸에게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비용의 불평등한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부모의 재산 증여 또는 상속 후 자녀의 부모 부양 및 돌봄 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재산 분배 방식에 불만이 있는 자녀의 돌봄 외면 등도 발생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 목적에 따라 제사명절과 같은 의례적 의무와 부모 부양 및 돌봄 의무를 자녀에게 알리고 재산 분배 방식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재산 상속과 유교적 의례 의무

- 과거에는 재산 상속과 제사의례, 선산 돌봄 등과 같은 유교적 의례 의무가 함께 상속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입장차가 있음. 지금도 제사의례 전담 명분으로 여전히 장자상속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사의 강제성이 없고, 장자가 고향에 살지 않아 이를 다른 형제가 담당하게 될 경우 딸들이나 차남 이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60대 이하 세대들의 제사의례 지속이 어려울 수 있고 매장문화 역시 감소하면서 장자상속 및 조상전이나 제월전도 그 의미가 약해짐. 문중 재산 상속이나 양자의 지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약해지고 있음

다. 증여자(부모세대)의 노후 준비

- 유교적 관습과 의식이 약화되면서 60대 이하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재산 분배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자녀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배하려는 추세임. 부모세대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며,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부담지우고 싶지 않다고 함
- 50대 부모들은 자녀균등분배 인식이 확고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노후 대비와 함께 재산 분배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60대인 부모세대는 부모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 부양과 돌봄을 부담하며, 제사 의례를 행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자신들의 노후를 의탁하기 어려운 세대임
- 40대 이하의 자녀세대는 재산증식도 어렵고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인식하며, 50대와 60대는 상속인이자 피상속인으로 자녀들 간 공평한 상속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 세대에 상속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노후대비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가운데 부모세대들은 여전히 재산 상속을 통하여 자녀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세대 간 재산 상속인 증여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5. 재산 증여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가. 세대별, 성별 상속인의 가치관 변화

- 조선시대 중기 이후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 상속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 70대는 노후준비를 위해 재산을 남겨둬야 하며, 가능하면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함. 다만 상속인으로서 아들은 딸들과 균등분배에 부정적 입장임
- 60대 이하 세대들은 아들과 딸의 균등분배를 보편적으로 인식하지만 보편적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며, 20대와 30대 자녀세대는 부모의 재산 상속에 대해 유연함. 부모의 노후에 대한 부담을 지고 싶지 않으며, 자녀 간 균등분배 인식이 높음
- 장자 상속 문화가 약해지면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아들과 딸의 차등 분배 인식도 낮아지고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약해짐. 부모세대는 노후준비 후 잔여 재산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고 부모 부양 및 돌봄 이행과 유교의례 이행, 자녀의 재산 축적 기여 등을 고려한

분배를 고민하고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차별적 불평등 관습을 수용하지 않음

나. 고령화 대비 재산 상속 유형

- 장남과 차남 등 아들들을 중심으로 재산과 제사의례를 분배해 왔으나 아들과 딸에 균등하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줄이라고 하고 있음
- 지금까지 상속관행이 관습적인 가족공동체 영속에 목적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혈연 중심의 재산 상속에서 벗어나 사회환원 등 공익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6. 소결 및 시사점

-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부모의 상속의지는 여전하나 긴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 상속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 세대로의 재산 상속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며, 부모는 자신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함
 - 재산 상속의 범위를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재산 축적 목적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상속과 증여로 인한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신의 부모들을 부양하고 유교적 의례 의무로 이행했지만 자녀세대로부터의 돌봄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재산 상속 및 분배의 목적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함
- 재산의 분배 및 상속 시기에 있어 부모 세대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최근 결혼과 출산으로 감소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확산은 혈연중심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족 가치에도 변화를 가져옴
- 재산 증여 및 상속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족공동체의 영속성이지만 재산 증여 및 상속 시기 및 분배 방식은 세대 간, 세대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따라서 장자 중심 상속과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차별적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함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부동산의 상속이 남성에게 더 많이 이뤄짐. 또한 부동산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아 부동산의 상속이 주로 아들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반면 딸은 현금 형태가 주를 이루며,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을 받은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여전히 높고, 기대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 역시 높지만 기대 유산의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적지 않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로 생전 자기 소진과 유산을 남길 여유 부족이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의 선호도 평균이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등형, 현실형, 전통형, 사회환원형 순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대비형과 현실형, 평등형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산 상속 인식에 있어 남성보다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형 상속 인식 중에서도 부모 봉양 자녀에 대한 우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 부양 책임은 상속 인식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남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경험이 73.3%로 높고, 아들과 장자 우대,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 형태의 차별이 행해짐. 제월전의 상속도 제사주재자보다 장자 상속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음
- 재산 상속 분쟁은 주로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하였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만족도는 2.42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재산 상속에 대한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와 적합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도 적합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남

-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사주재자 우대 인식이 높음

나.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심층면접 조사 결과

- 일반적으로 부모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식을 위해 증여를 원하며, 이를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음. 반면 자식은 자신들의 증여 지분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하기도 함. 최근 길어진 노후기간과 함께 부모세대는 노후비용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재산 상속과 증여의 방법, 시기, 편안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늘어남
- 이에 따라 부모세대는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 선호가 증가하고,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자녀의 부모 부양 거부를 우려하기도 함. 부모 부양책임과 돌봄비용 부담이 자식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부모세대의 입장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자녀 위주의 재산 증여 관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자녀가 재산 상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지금도 제사의례 전담 명분으로 여전히 장자상속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사의 강제성이 없고, 장자가 고향에 살지 않아 이를 다른 형제가 담당하게 될 경우 딸들이나 차남 이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음. 조상전이나 제월전도 그 의미가 약해짐. 세대 간 재산 상속인 증여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조선시대 중기 이후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 상속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 장자 상속 문화가 약해지면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아들과 딸의 차등 분배 인식도 낮아지고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약해짐. 부모세대는 노후준비 후 잔여 재산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고 부모 부양 및 돌봄 이행과 유교의례 이행, 자녀의 재산 축적 기여 등을 고려한 분배를 고민하고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차별적 불평등 관습을 수용하지 않음
- 지금까지 상속관행이 관습적인 가족공동체 영속에 목적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혈연 중심의 재산 상속에서 벗어나 사회환원 등 공익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2. 정책적 시사점

가. 탈전통적 상속 인식 고취

- 제주사회의 재산 상속 인식은 탈전통적 과도기에 머물고 있음.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벗어나 평등적이고 현실적인 상속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못함.

따라서 탈전통적 상속 인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산의 형성은 부부 공동 노력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여성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재산의 분배는 전통적 관습에 의존하여 장자 또는 아들 우대 등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
- 성평등 인식 확산과 함께 성에 따른 차별적 재산 분배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고, 현행 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 및 적합성 인식도 높지만 제사주재자 우대와 60대 이상의 아들과 장남·장녀 우대 인식은 여전히 높음
- 관습적 상속 인식을 탈피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60대 이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 속의 남녀균분상속 사례를 활용하면 성평등 의식 고취와 함께 탈전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남녀균분상속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나.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이해 촉진

- 부모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어 이른 증여 요구가 있는 경우 자녀세대와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 세대 간 갈등완화 및 이해 촉진 노력이 필요함
- 50대와 60대는 이미 40대~50대에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들의 증여를 한 경험은 이에 비해 매우 적어 부모세대들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세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것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지가 높지만 노후불안 때문에 재산 분배 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여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지속적인 저성장 경제환경과 불평등 속에서 재산축적이 어려운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과 시기가 부모세대와 다를 수 있음
- 최근에는 젠더 갈등 더불어 세대 갈등도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세대 갈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성인 자녀와 노부모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관계 교육이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음

- 재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소지를 최대한 감소시키며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재산 상속 재무계획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 있음. 이는 가계별 적절한 재산 상속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세대의 노후설계와 자녀세대의 경제관리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 재산 상속의 의무에서 선택으로의 변화

-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부모의 상속의지는 여전하나 긴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 상속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 세대로의 재산 상속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며, 부모는 자신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함
- 재산 상속의 범위를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재산 축적 목적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상속과 증여로 인한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상속과 기부를 고려할 필요 있음. 자녀 세대는 유산 상속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께 참여를 권유할 필요 있음
- 세대 간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재, 사회적 상속과 기부에 대한 정보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 방안 마련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신의 부모들을 부양하고 유교적 의례 의무로 이행했지만 자녀세대로부터의 돌봄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재산 상속 및 분배의 목적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함
- 재산의 분배 및 상속 시기에 있어 부모 세대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핵가족화된 시대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상속 지분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배우자상속제도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 기여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임
-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와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작성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담부 증여를 홍보할 필요 있음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나 농지연금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적극 유도할 필요 있음

마. 재산 상속에 따른 가족공동체의 해체 위기 인식 각성 필요

- 최근 결혼과 출산으로 감소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확산은 혈연중심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옴
- 재산 상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공동체의 균열과 갈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산 증여 및 상속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족공동체의 영속성이지만 재산 증여 및 상속 시기 및 분배 방식은 세대 간, 세대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따라서 장자 중심 상속과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차별적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상속·증여 중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상속·증여 관련 갈등을 사회적으로 예방할 필요 있음

목 차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법·제도 검토	9
1.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법·제도 검토	11
2.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특성	15
3.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서 본 상속·증여	17
4. 소결	35
제3장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실태	39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1
2. 상속증여 경험	44
3.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실태	84
4.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96
5. 재산 상속 분쟁 관행	111
6.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116
7. 소결 및 시사점	130
제4장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심층면접	133
1. 조사개요	135
2. 증여자(부모세대)와 수증자의 인식 및 태도	139
3. 피상속인(부모세대)과 상속인의 인식 및 태도	150

4. 증여자의 노후보장과 수증자의 역할	163
5. 재산증여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175
6. 소결 및 시사점	17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3
1. 요약 및 결론	185
2. 정책적 시사점	188
참고문헌	192
부록: 설문지	193

표 목 차

<표 2-1> 상속 순위	11
<표 2-2> 상속세 신고 현황(2017~2021)	16
<표 2-3> 증여세 신고 현황(2017~2021)	17
<표 2-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	18
<표 2-5>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 성, 연령	19
<표 2-6>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19
<표 2-7>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	20
<표 2-8>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 유형	21
<표 2-9>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분배 방식	23
<표 2-10> 향후 상속 또는 증여 기대	23
<표 2-11>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종류	24
<표 2-12>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	25
<표 2-13>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종류	27
<표 2-14>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	28
<표 2-15> 증여한 재산의 종류	29
<표 2-16> 증여한 대상	30
<표 2-17> 증여한 시기	31
<표 2-18> 증여한 당시 재산의 금액	31
<표 2-19>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유산의 분배 방식	33
<표 2-20>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	34
<표 2-21>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	35
<표 3-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3
<표 3-2>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종류 - 성, 연령	47
<표 3-3>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 성, 연령	48
<표 3-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 성, 연령	49
<표 3-5>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 금액 - 성, 연령	51

<표 3-6> 공동상속인 및 공동수증자 유형 - 성, 연령별	53
<표 3-7> 유산 분배 방식	55
<표 3-8> 유산분배 방식	56
<표 3-9>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 성, 연령	58
<표 3-10>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59
<표 3-11>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61
<표 3-12> 부모님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성, 연령 ..	62
<표 3-13> 부모님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혼인상, 직업 ..	62
<표 3-14>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65
<표 3-15>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성, 연령	67
<표 3-16>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거주지	67
<표 3-17> 증여한 재산의 종류 - 성, 연령	71
<표 3-18> 증여한 대상 - 성, 연령	72
<표 3-19> 증여한 시기 - 성, 연령	73
<표 3-20> 증여 당시 금액 - 성, 연령	74
<표 3-21> 향후 유산 분배 방식	78
<표 3-22> 향후 유산 분배 방식	80
<표 3-23> 향후 상속/증여할 자산 유형 - 성, 연령	82
<표 3-24>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 성, 연령	83
<표 3-25>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거주지, 교육수준, 계층의식 ..	84
<표 3-26>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전통형 - 성, 연령	88
<표 3-27>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전통형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 상태, 계층의식	89
<표 3-28>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사회환원형 - 성, 연령	90
<표 3-29>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사회환원형 - 거주지, 직업, 계층의식	90
<표 3-30>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평등형 - 성, 연령	91
<표 3-31>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평등형 - 거주지, 월평균 가구소득, 계층의식 ..	91
<표 3-32>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현실형 - 성, 연령	92

<표 3-33>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현실형 - 거주지, 혼인상태, 교육수준, 계층의식	93
<표 3-34>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노후대비형 - 성, 연령	93
<표 3-35>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노후대비형 - 거주지,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94
<표 3-36>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유형별 요인분석결과	95
<표 3-37>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 - 성, 연령	96
<표 3-38>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98
<표 3-39>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 성, 연령	99
<표 3-40>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 거주지, 계층의식	100
<표 3-41>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 성, 연령	101
<표 3-42>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 직업	102
<표 3-43>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 - 연령	103
<표 3-44> (여성의 경우) 친정 유산의 배분 방식 - 계층의식	103
<표 3-45> 재산의 상속 시기 - 성, 연령	105
<표 3-46> 재산의 상속 시기 -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105
<표 3-47> 제월전 상속 - 성, 연령	107
<표 3-48> 제월전 상속 - 혼인상태,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108
<표 3-49> 채무 승계 방식 - 성, 연령	109
<표 3-50> 채무 승계 - 월평균 가구소득	110
<표 3-51> 채무 승계 범위 - 성, 연령	110
<표 3-52> 상속 분쟁의 해결 - 성, 연령	112
<표 3-53> 상속 분쟁 해결 방식 - 거주지, 거주기간, 교육수준, 건강상태, 계층 의식	112
<표 3-54>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 - 성, 연령	114
<표 3-55>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 - 거주지, 교육수준,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115
<표 3-56>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 성, 연령	117
<표 3-57>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118
<표 3-58>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인식 - 성, 연령	119

<표 3-59>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인식	120
<표 3-60>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 - 성, 연령	121
<표 3-61>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 인지 여부 - 성, 연령	122
<표 3-62>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 인지 여부 - 거주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123
<표 3-63>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 성, 연령	125
<표 3-64>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 거주지, 계층의식	125
<표 3-65> 채무 승계 인식 - 성, 연령	126
<표 3-66> 채무 승계 인식 - 거주지, 맞벌이 여부	127
<표 3-67> 제사상속과 재산 속의 관계 인식 - 성, 연령	128
<표 3-68>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 인식 - 거주지,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129
<표 4-1> 심층면접 조사 내용	137
<표 4-2>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38

그림 목 차

[그림 2-1]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17
[그림 2-2]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 여부	20
[그림 2-3]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 유형	21
[그림 2-4]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분배 방식	22
[그림 2-5]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	25
[그림 2-6]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26
[그림 2-7]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27
[그림 2-8] 증여를 한 경험	29
[그림 2-9]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의사 있음	32
[그림 2-10]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유산의 분배 방식	32
[그림 2-11]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	35
[그림 3-1]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44
[그림 3-2]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있음 - 성, 연령, 교육수준	45
[그림 3-3]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있음 -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	45
[그림 3-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	46
[그림 3-5]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47
[그림 3-6]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49
[그림 3-7]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	50
[그림 3-8] 공동상속인 여부	51
[그림 3-9] 공동상속인 있음 - 성, 연령,	52
[그림 3-10] 공동상속인 있음 -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52
[그림 3-11] 공동상속인 유형	53
[그림 3-12] 유산 분배 방식	54
[그림 3-13]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57
[그림 3-14]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60

[그림 3-15]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61
[그림 3-16]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63
[그림 3-17]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 성, 연령	63
[그림 3-18]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계층의식	64
[그림 3-19]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65
[그림 3-20]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66
[그림 3-21] 재산 증여를 한 경험	68
[그림 3-22]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 성, 연령	68
[그림 3-23]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69
[그림 3-24]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 직업, 건강상태	70
[그림 3-25] 증여한 재산의 종류	70
[그림 3-26] 증여한 대상	71
[그림 3-27] 증여한 시기	72
[그림 3-28] 증여 당시 금액	74
[그림 3-29] 향후 상속/증여 여부	75
[그림 3-30] 향후 상속/증여 의사 있음 - 성, 연령	76
[그림 3-31] 향후 상속/증여 의사 있음 - 혼인상태, 직업, 계층의식	76
[그림 3-32] 향후 유산 분배 방식	77
[그림 3-33] 향후 상속/증여할 자산 유형	81
[그림 3-34]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82
[그림 3-35]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전통형	85
[그림 3-36]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사회환원형	85
[그림 3-37]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평등형	86
[그림 3-38]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현실형	87
[그림 3-39]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노후대비형	87
[그림 3-40]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유형별 비교	88
[그림 3-41]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	96
[그림 3-42]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98

[그림 3-43]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100
[그림 3-44]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	102
[그림 3-45] 재산의 상속 시기	104
[그림 3-46] 제월전 상속	106
[그림 3-47] 채무 승계 방식	109
[그림 3-48] 채무 승계 범위	110
[그림 3-49] 상속 분쟁의 해결	111
[그림 3-50]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	113
[그림 3-51]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만족도	116
[그림 3-52]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만족도 - 성, 연령	116
[그림 3-53]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117
[그림 3-54]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인식	119
[그림 3-55]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	120
[그림 3-56]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인지 여부	122
[그림 3-57]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124
[그림 3-58] 채무 승계 인식	126
[그림 3-59]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 인식	12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도민의 재산 상속증여 경험,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재산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관행,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재산 상속증여는 시대와 민족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치나 가족가치와 다양한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제례문화의 변화와 재산 상속증여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분쟁 혹은 갈등문제 등으로 인해 양성평등한 개선요구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가족구성원의 재산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승계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함. 첫째, 재산 흐름의 유형은 가족구조를 나타냄. 즉,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재산을 어느 정도 분배받는가를 보면 그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가족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상속인이나 수증자에 누가 포함되는가를 보면 가족집단의 규모를 알 수 있음. 둘째, 재산 상속증여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임.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가족 성원 간의 결속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재산축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큼.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자녀의 인생 출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임. 이렇게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족구조를 조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음(문영소김양희, 1990)
- 상속이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재산이 경제자원으로서의 효용뿐만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기에 친밀한 개인들로 구성된 가족 내에서도 은밀하게 이야기 되는 민감한 문제(Stum, 2000)임. 재산이 갖는 은밀한 성격과 가족의 죽음이 갖는 민감성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명확한 의사소통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이재림, 2017)
- 가족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학문적으로 밝혀진 것은 극히 제한적임.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이나 가족자원의 관점에서 상속의 형태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연구, 상속법, 상속세 등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음. 특히 경제학적 관점

에서의 연구는 상속을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이나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어떤 형태의 자원이, 어떤 자녀에게, 얼마만큼 상속되는지를 결정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 재산 상속 관련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사항들에 대해 적시하자면 다음과 같음. 첫째, 상속은 단순한 경제적 또는 법적 이슈가 아니라 가족관계 상의 복잡한 감정적 문제(Sousa et al., 2010; Stum, 2000)이기 때문에 상속과정에서 상속인들은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역시 상속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함
- 둘째, 상속은 부모와 자녀라는 세대 간 자원이전의 관점을 넘어 가족관계 차원에서 부모자녀관계와 형제자매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경제자원의 이전 방향이나 금액에 초점을 맞춘 계량적 분석이었기 때문에, 상속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기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증여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흔치 않은 우리 사회에서 상속에 관한 의사결정은 상속인인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피상속인의 동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관점을 포괄한 상속과정 연구도 중요함
- 넷째, 상속과 관련한 한국의 가족 가치와 규범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선 중기 이후 한국가족에서의 상속은 장자우대, 출가외인의 유교적 가족규범에 따라 차등 상속이 이루어졌음(박미해, 2010; 박혜인·홍형욱, 2012). 노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의 제사를 주도하는 장남은 상속에서 우선권을 가졌음.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제사의 중요성이 감퇴한 현재의 상속에서도 가족주의, 장자우대, 출가외인 등의 유교적 가족규범이 상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삼안·김상찬(2011)은 제주지역의 재산 상속 관습실태, 재산 상속 관련 분쟁해결 관행, 재산 상속 관련 법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재산 상속 상 남녀차별 여부에서 전체 2/3정도가 차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제사 주재자에 대해서는 제월전이 우대되었고, 시집간 딸의 상속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남녀균분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직도 제주사회는 성차별적 의식이 남아 있으며 양성평등사회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함

- 김은희 외(2005)와 김상애(2022)의 연구에서도 제주지역의 재산 상속·증여 관행은 제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제주 사회에서의 가족은 ‘제사공동체’로 이해되기도 함. 하지만 전통 방식의 제사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 등 다양한 변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산 상속·증여는 가족 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내는 정치적 기제가 되기도 함. 김상애(2022)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주사회에서의 ‘축첩과 아들 입양’은 제사 주관과 재산 상속·증여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로부터 재산분배를 경험한 상속인과 수증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로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분석·검토하고자 함.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재산 상속·증여문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임. 이를 토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는 향후 과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재산 상속(증여 포함) 관련 관습과 의식, 재산 상속·증여를 둘러싼 분쟁 및 법제도 현황 분석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최근 공개한 8차년도(2019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반적 현황 파악
 - 이 자료에 포함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비교분석
- 제주도민 성인대상 재산 상속·증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성별 특성, 상속·증여 경험 및 형태, 상속 관련 관습적 실태, 자녀 등에게 재산 증여 경험, 향후 상속·증여 의사, 상속·증여 인식, 재산 상속 분쟁 인식, 재산 상속 관련 의식, 재산 상속 선호형태 등 분석
- 제주지역의 양성평등한 재산 상속·증여 문화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제안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재산 상속·증여 관련 문헌연구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년도 원자료 분석

- 국민연금연구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욕구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연금 및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조사는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 및 그의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40세 이상 성인 남녀 520명 대상 설문조사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대면 면접 조사
- 조사기간: 2022년 7월 27일 ~ 8월 10일
- 표본추출방법: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비례할당표집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4.3\%$

○ 심층면접조사

- 재산 상속/증여 경험이 있는 40세 이상 성인 남녀 16명 대상 심층면접
- 표본추출방법: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 누적표집
- 조사기간: 2022년 6월 20일 ~ 7월 30일

○ 전문가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계,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비고
상속 및 증여 경험 및 형태	상속/증여 경험	·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유무	
	상속/증여 내용	· 상속/증여 종류 · 피상속인/증여자 · 상속/증여를 받은 시기 · 상속/증여 당시 금액 · 공동상속인	

		· 받은 유산 분배 방식	
	부모님·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 상속/증여 기대 · 기대 유산 종류 · 기대 유산 활용 방법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 상속/증여 기대 · 기대 유산 종류 · 기대 유산 활용 계획	
	증여한 경험	· 증여한 경험 유무 · 증여한 재산의 종류 · 증여한 대상 · 증여한 시기 · 증여한 당시 금액	
	향후 자녀에게 상속/증여 희망	· 자녀에게 상속/증여 희망 여부 · 상속/증여 희망 유산 분배 방식 · 상속/증여 희망 자산 종류 · 자녀에게 상속/증여 비희망 이유	
재산 상속 의식 및 선호 형태	전통형	· 장남 우선 상속 · 남녀 차이는 당연 · 아들에게 더 상속 · 장남에게 더 상속 · 상속 자녀가 부모 노후 책임 · 종가집에 상속	
	평등형	· 모든 자녀균분상속 · 현 상속법(아들:딸:배우자=1:1:1.5)에 대한 만족 · 남녀균분 상속 · 배우자·자녀 공동상속	
	현실형	· 가장 애착하는 자녀에게 상속 · 경제적 도움 필요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 · 부모돌봄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 · 나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상속 · 구두상속이 실제 상속으로 이어져야 함	
	노후대비형	· 상속보다는 본인 노후 준비에 사용 ·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대비 · 역모기지정책 이용한 미래 준비	
	사회환원형	· 유산 전부 사회환원 · 유산 일부 사회환원 · 상속 갈등방지를 위해 사회환원	
	기타	· 아들이 없는 경우 친척에게 재산 상속 ·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 상속 · 생전에 미리 상속 ·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상속	
상속의 관습적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 유산 배분 방식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정도 · 여성의 경우, 친정의 유산 배분 방식 · 양자의 경우, 생가의 재산 상속 여부
	상속 시기	
	제월전 상속	· 제월전 상속인
	채무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 승계 방식 · 채무 승계 범위
상속 분쟁 관행	상속분쟁 해결 방식	
	바람직한 상속분쟁 해결 방식	
	소송에 의한 상속분쟁 해결 만족도	
남녀균분상속 인식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남녀균분상속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 남녀균분상속 부적합시, 적합한 상속 방식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 인지 여부 · 배우자 우대 상속 증액의 적합성
	채무 승계 인식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에 대한 인식	

다.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 ·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년도 원자료 수집 및 분석
3단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4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5단계	분석 결과 정리	⇨	· 분석결과 정리 · 집필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법·제도 검토

1.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법·제도 검토
2.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특성
3.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서 본 상속증여
4. 소결

1.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법·제도 검토

가. 재산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함
-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뜻함. 이는 재산법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됨. 하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선의, 악의, 과실 등 널리 재산법상의 지위 그 자체만 승계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승계되지 않음(민법 제1005조 단서)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함. 즉,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라 할 수 있음. 친족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음. 그러나 모든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됨.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즉,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예컨대, 아들, 딸 등)과 직계존속(예컨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가족 그리고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상속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 개시 때부터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 재산을 상속한 것이 됨(문영소·김양희, 1999; 민법 제1005조, 제187조 참조)
- 상속 순위는 <표 2-1>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됨(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표 2-1> 상속 순위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포함

2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배우자	자연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친양자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
3순위(1, 2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백숙부모)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관계·친양자 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포함
4순위(1, 2, 3순위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삼촌, 고모, 사촌 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

나. 상속의 형태

- 상속 형태는 첫째, 상속대상에 따라 신분 상속과 재산 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과거 호주상속제가 2008년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재산 상속만이 인정됨. 둘째,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이 있으며, 셋째, 상속인의 결정 방법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이 있음
- 상속 개시를 피상속인의 생전 중에 인정하는 형태를 생전 상속이라 하며 상속 개시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하는 형태를 사망 상속이라 말함. 근대적 상속 제도는 사망 상속을 원칙으로 함. 법정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 및 상속분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를 말하며 유언 상속이란 상속인과 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상속 형태를 말함. 우리 민법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함
-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으로 한정되어, 피상속인의 가장으로서의 지위나 전 유산을 단독으로 승계하는 상속 형태를 말하며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 형태를 말함. 우리 상속법은 공동 상속제를 채택하고 있음.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의 형태를 강제상속이라 말하며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인정하는 상속의 형태를 임의상속이라고 말함
- 균분상속이란 각 공동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비율이 평등한 경우를 말하며 불균분상속이란 그 비율이 평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렇지만 1990년의 개정 전에는 피상속인과 같은 호적 내에 있는 여성 상속인과 같은 호적 내에 있지 않는 여성상속인과의 상속분이 평등하지 않았음(구민법 제1009조 제2항). 또한 배우자 상속에 있어서는 아내가 상속하는 경우와 남편이 상속하는 경우에 따

라 상속분이 평등하지 않았음(구민법 제1009조 제3항). 그러나 1990년 민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여성 상속인의 상속분은 같은 호적 내에 있던 없든 관계없이 평등하게 되었으며(제1009조 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도 평등하게 개정되었음(제1009조 제2항)(문영소·김양희, 1999)

다. 상속분

- 상속분이란 각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의무의 비율, 즉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함. 즉 상속재산의 분할 전, 상속 재산의 1/2과 같이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분수적 비율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속분권'을 의미함. 이와는 달리 계산한 결과 각 공동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할 재산가액인 '상속분액'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은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분이 문제가 되는 것임. 상속분율을 의미하는 일반적 의미의 상속분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유언(지정 상속분)과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정해 놓은 법정상속분의 두 가지 경우가 있음.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는 유언 상속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 유언이 없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분할 방법을 지정하는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제한이 있으며(민법 제1012조), 공동 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분할을 할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 규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자유로이 협의하여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음(대법87.2.10. 판결, 86누470). 그 밖에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데는 '특별 수익자'가 있으면 그것을 참작하고(민법 제1008조 참조), '기여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결정하게 됨(민법 제1008조의 2)
- 제사 주재자에 대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상속은 민법에 의해 명확하게 상속인을 규정

하고 있음.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대략 3000평=9,917.35537㎡, 약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1,983.47107㎡, 약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음(민법 제1008조의3) ※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임야를 말함

라. 증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민법 제554조)
- 증여는 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또 무상(無償)·편무계약(片務契約: 당사자의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임.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음(민법 제555, 558조)
 - 이것은 증여자에게 신중을 기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진의를 명확히 하고 증거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증여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음. 즉,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었으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민법 제555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556조제1호), 증자에게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556조제2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민법 제557조)
 - 또한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민법 제559조)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을 경우, 증여자가 하자·흠결을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악의의 경우) 및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담보책임을 짐(민법 제559조 1항 단·2항). 증여의 특수한 형태로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현실증여(現實贈與)·사인증여(死因贈與)가 있음(이병태, 2016)

2.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특성

- 제주지역의 재산 상속은 생전처분에 의한 분재,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재산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재, 법정상속의 세 가지가 있었음
- 첫째, 생전처분에 의한 분재란 재산 소유자가 생존 중에 그의 소유재산을 직계비속에게 현실적으로 미리 분급하는 것을 말함. 즉 재산 소유자가 자식들을 혼인·분가시키면서 일정량의 가옥·토지·가재도구 등의 재산권을 직접 분재하였던 것으로, 다만 조상전래의 가옥은 장자에게 주었고 이외의 아들들에게는 가옥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 분재의 몫은 일정치 않아 장자가 많이 가질 수도 때로는 막내아들이 더 많이 받는 수도 있었으나 대체로 균분주의원칙에 의해 행해졌음(현용준, 1985; 한삼인·김상찬, 2011)
- 둘째, 피상속인 생존 중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그 하나는 재산 소유자가 생존 중에 공동상속인 모두를 불러 모아 구체적인 상속내용을 기재한 문서 형식을 통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임. 두 번째는 재산 소유자가 일가의 어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구술유언의 형식에 의해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임. 이때 유언장과 같은 문서가 꼭 사용되진 않았으나 많은 친족의 입회하에 행해졌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은 그 명확성이 담보될 수 있었고, 이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산분배는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유언에 의한 유산분배의 경우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적장자우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비유교적 가족가치관의 견지에서 볼 때 균분주의원칙이 지켜져 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셋째, 법정상속에 의해 재산의 분배가 행해지는 경우임. 즉 피상속인인 재산 소유자가 상속내용을 기재한 문서 작성, 또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게 되면 장자가 일괄하여 상속 또는 관리하다가, 동생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통례였음. 제주지역의 경우 법정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친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동리의 원로, 마을 관리책임자 등의 주재하에 유산의 분배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전계논문)
- 요컨대, 제주지역에서 재산 상속이 행해지는 양태에는 세 가지가 있었으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상속 균분주의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균분주의 상속관습 형성근거는 분가주의 가족관습의 형성배경과 그 논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재석(1979), 한삼인·김상찬(2011)연구에서는 제주도 특유의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배치된 생업형태(전작농업, 자경토지의 영세성)와 여기에서 비롯된 자활성, 유교적, 부모 중심적 가치체계의 약화와 자립정신에 근거한 합리주의적 생활관 등은 부모가 자식들을 혼인과 함께 분가시켜 나가는, 장자를 포함한 분가주의 관습을 형성시켰고, 이러한 가족 관습 하에서는 장자가 가계계승자의 지위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자식이면 누구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되었고 부모로서도 자식에게 어느 정도씩 분재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형성됨. 이러한 의식은 구체적으로 형제자매 사이에서 제사분담 윤행의 관습과 같은 가정 대사에의 공동참여를 낳게 되었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 균분주의 상속관습을 형성시키게 된 것으로 보고함
- 최근 제주지역 재산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수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며, 상속세 산출세액 또한 2017년 25,840백만원에서 2021년 57,81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표 2-2〉 상속세 신고 현황(2017~2021)

단위 : 명, 백만원

시점	피상속인수 (명)	총 상속 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인당 평균	
					총 상속 재산가액	산출 세액
2017	133	217,445	88,588	25,840	1,635	194
2018	148	297,545	155,677	53,595	2,010	362
2019	160	261,378	123,231	36,565	1,634	229
2020	194	300,965	142,050	41,490	1,551	214
2021	259	427,851	199,132	57,817	1,652	223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https://tasis.nts.go.kr>)

- 증여세 신고 건수 또한 2017년 3,999건에서 2021년 5,653건으로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증여 재산 가액 또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2-3〉 증여세 신고 현황(2017~2021)

단위 : 건, 백만원

시점	신고 건수	증여 재산가액	과세 표준	산출 세액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	산출세액
2017	3,999	552,726	471,140	81,027	138	20
2018	4,421	631,940	550,401	100,127	143	23
2019	4,311	661,627	577,296	103,671	153	24
2020	4,465	697,861	607,782	114,589	156	26
2021	5,653	823,599	756,914	138,738	146	25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https://tasis.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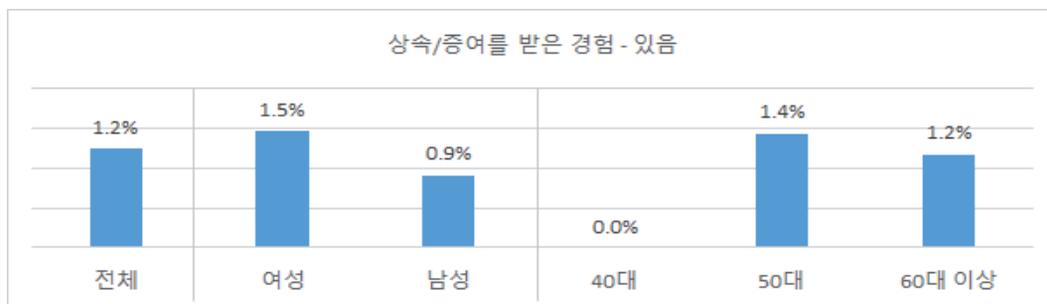
3.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서 본 상속·증여

가. 상속 또는 증여 경험

1)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전체 1.2%이며, 그 중 여성 1.5%, 남성 0.9%로 여성의 경험 비율이 0.6%p 더 높음. 연령별로는 50대 1.4%, 60대 이상 1.2%로 50대의 경험비율이 0.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주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음 응답만 표시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주된 형태로 나타남
 -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 69.3%, 남성 72.7%로 남성이 3.4%p 더 높고, 50대 72.1%, 60대 이상 69.3%로 50대가 2.8%p 더 높음

〈표 2-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

구분		부동산	동산(현금 제외)	현금	계
성	여성	112,562(69.3)	7,045(4.3)	42,841(26.4)	162,448
	남성	42,693(72.7)	0(0.0)	16,040(27.3)	58,733
연령	50대	52,499(72.1)	0(0.0)	20,303(27.9)	72,802
	60대 이상	102,756(69.3)	7,045(4.7)	38,578(26.0)	148,379
계		155,255	7,045	58,880	221,181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3) 상속 또는 증여를 준 사람

-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배우자인 반면 남성은 부모가 주를 이루고 기타 친인척도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은 주로 남성이며, 여성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음
-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여성은 배우자, 남성은 모, 50대는 모, 60대 이상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음. 또한 남성은 친인척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도 8.1%로 비교적 높음
 - 여성은 배우자 82.7%, 부 4.5%, 모 9.3% 등의 순으로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음. 남성은 모 46.5%, 모 32.0%, 기타 친인척 8.1% 등의 순으로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배우자이며, 남성은 부모와 기타 친인척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 간 상속 또는 증여의 주된 대상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50대는 모 42.2%, 부 23.1%, 배우자 20.3% 순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배우자 83.4%로 가장 높아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배우자 상속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음

〈표 2-5〉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 성, 연령

단위 : 명, %

구분	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비동거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계
성	여성	134,365(82.7)	7,302(4.5)	15,049(9.3)	2,111(1.3)	3,620(2.2)	0(0.0)	162,448
	남성	4,089(7.0)	18,805(32.0)	27,328(46.5)	0(0.0)	858(1.5)	2,915(5.0)	58,733
연령	50대	14,752(20.3)	16,846(23.1)	30,734(42.2)	2,111(2.9)	3,620(5.0)	0(0.0)	72,802
	60대 이상	123,702(83.4)	9,260(6.2)	11,642(7.8)	0(0.0)	858(0.6)	2,915(2.0)	148,379
계	138455	26107	42376	2111	4479	2915	4738	221181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대부분 2010~2019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2010~2019년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마찬가지로

〈표 2-6〉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단위 : 명, %

구분	2000~2009년	2010~2019년	계	
성	여성	0(0.0)	162,448(100.0)	162,448
	남성	4,688(8.0)	54,044(92.0)	58,733
연령	50대	2,370(3.3)	70,432(96.7)	72,802
	60대 이상	2,318(1.6)	146,060(98.4)	148,379
계	4688	216493	221181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5)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5억원 이상 재산 금액은 여성과 60대 이상에서 더 높음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은 남녀 모두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 1억 이상 재산 금액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배우자 사망에 의한 상속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
 - 연령별로도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모두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억

원 이상은 60대 이상에서만 나타남

〈표 2-7〉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

단위 : 명, %

구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 미만	1억~2억 미만	2억~5억 미만	5억 이상	계	
성	여성	59,620(37.7)	27,681(17.5)	35,707(22.6)	22,556(14.3)	12,576(8.0)	158,141
	남성	24,887(46.0)	11,652(21.5)	10,609(19.6)	4,688(8.7)	2,318(4.3)	54,155
연령	50대	31,298(46.2)	6,517(9.6)	21,100(31.1)	8,839(13.0)	0(0.0)	67,754
	60대 이상	53,210(36.8)	32,816(22.7)	25,216(17.4)	18,405(12.7)	14,895(10.3)	144,542
계	84,507	39,333	46,316	27,244	14,895	212,295	

주 : 다중응답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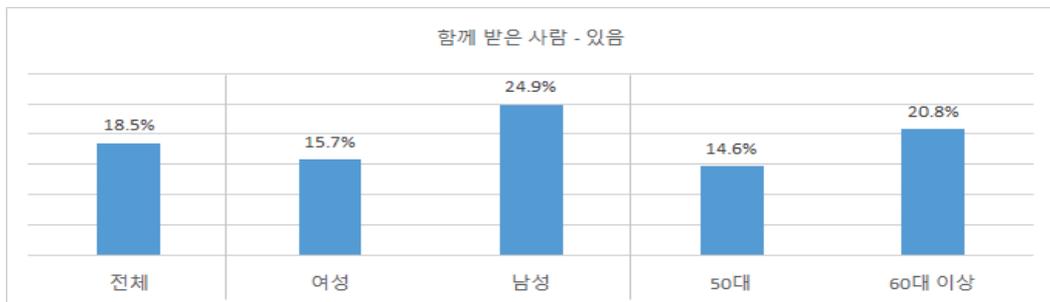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6) 공동 상속 또는 공동 수증

가)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 여부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18.5%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60대 이상이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여성 15.7%, 남성 24.9%로 남성이 9.2%p 더 많고, 연령별로는 50대 14.6%, 60대 이상 20.8%가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경험이 6.2%p 더 많음

[그림 2-2]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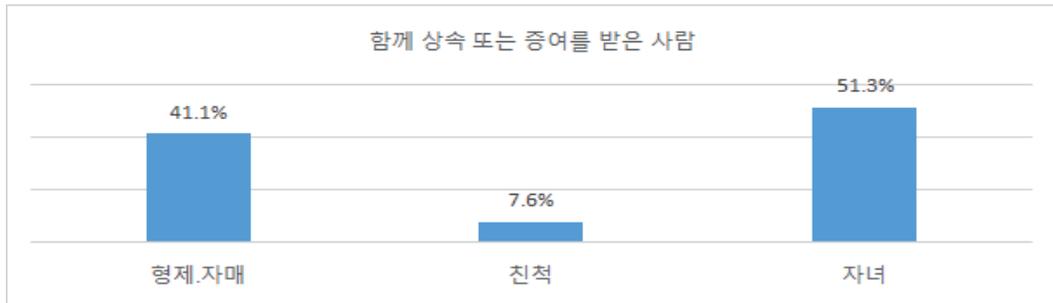
주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음 응답만 표시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 유형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유형은 자녀 51.3%, 형제·자매 41.1%, 친척 7.6% 순으로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2-3]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 유형



- 성별로는 여성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주로 배우자이기 때문임. 또한 연령별로는 50대는 형제·자매, 60대 이상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 86.9%, 형제·자매 13.1% 순이며, 남성은 형제·자매 73.9%, 친척 26.1% 순으로 여성은 자녀가 가장 많고, 남성은 형제·자매가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50대는 형제·자매 73.9%, 친척 26.1% 순으로 60대 이상은 자녀 72.4%, 형제·자매 27.6% 순으로 50대는 형제·자매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자녀가 가장 많음

<표 2-8>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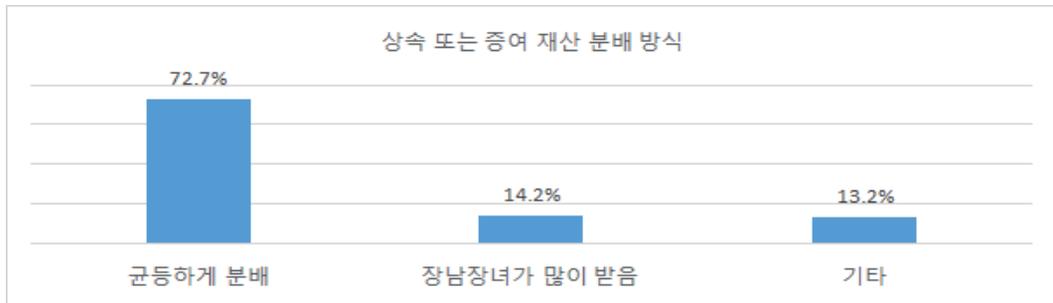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형제·자매	친척	자녀	계
전체		14,222(41.1)	2,632(7.6)	17,750(51.3)	34,604(100.0)
성	여성	2,679(13.1)	0(0.0)	17,750(86.9)	20,429(100.0)
	남성	11,543(81.4)	2,632(18.6)	0(0.0)	14,175(100.0)
연령	50대	7,464(73.9)	2,632(26.1)	0(0.0)	10,096(100.0)
	60대 이상	6,758(27.6)	0(0.0)	17,750(72.4)	24,508(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7)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분배 방식

-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분배 방식은 균등하게 분배 72.7%,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14.2%, 기타 13.2% 순으로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장남장녀 우대도 14.2%로 적지 않음

[그림 2-4]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분배 방식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재산 분배 방식은 남녀 모두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균등분배 경험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는 100.0% 균등분배인 반면 60대 이상은 절반 정도만 균등분배 방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균등하게 분배 55.4%, 기타 44.6% 순이며, 남성은 균등하게 분배 79.9%,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26.0% 순으로 남녀 모두 균등분배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남성은 80% 가량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절반 정도에 그침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균등하게 분배가 100.0%인 반면 60대 이상은 균등하게 분배 49.8%,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26.0%, 기타 24.2% 순으로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지만 50대 이하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침

〈표 2-9〉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분배 방식

단위 : 명, %

구분	균등하게 분배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기타	계	
전체	11,903(72.7)	2,318(14.2)	2,158(13.2)	16,379(100.0)	
성	여성	2,679(55.4)	0(0.0)	2,158(44.6)	4,837(100.0)
	남성	9,224(79.9)	2,318(20.1)	0(0.0)	11,542(100.0)
연령	50대	7,464(100.0)	0(0.0)	0(0.0)	7,464(100.0)
	60대 이상	4,439(49.8)	2,318(26.0)	2,158(24.2)	8,915(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나. 향후 상속 또는 증여 기대

1) 향후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여부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음. 다만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주로 자신의 부모님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50대가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더 높고 40대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 향후 상속 또는 증여 기대

단위 : 명, %

구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기타 친족으로부터	없음	계		
성	여성	45,189(0.5)	30,000(0.3)	2,115(0.0)	8,738,951(99.1)	8,816,256	
	남성	77,552(1.2)	14,807(0.2)	0(0.0)	6,157,734(98.5)	6,250,094	
연령	40대	0(0.0)	5,294(2.3)	0(0.0)	225,355(97.7)	230,649	
	50대	100,382(2.1)	31,889(0.7)	0(0.0)	4,658,675(97.2)	4,790,947	
	60대 이상	22,360(0.2)	5,404(0.1)	2,115(0.0)	9,994,411(99.7)	10,024,290	
계	122,742	-	42,587	-	2,115	-	15,045,886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종류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는 남녀 모두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음. 다만 거주용 부동산은 남성이 특히 남성의 기대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현금에 대한 기대는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 52.6%, 현금 25.6%, 기타 부동산 20.0%, 현금 제외 동산 1.7%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남성은 거주용 부동산 72.6%, 기타 부동산 23.8%, 현금 1.9%, 현금 제외 동산 1.8% 순으로 남성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기대 비율은 여성보다 10.6%p 더 높음
- 연령별로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는 40대와 50대는 거주용 부동산, 60대 이상은 기타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 40대는 거주용 부동산이 100.0%로 나타났고, 50대는 거주용 부동산 67.6%, 기타 부동산 18.9%, 현금 13.5%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기타 부동산 38.5%, 거주용 부동산 37.7%, 현금 15.1%, 현금 제외 동산 8.7% 순으로 기타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종류

단위 : 명, %

구분	거주용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토지, 건물)	동산 (현금 제외)	현금	계	
성	여성	45,648(52.6)	17,348(20.0)	1,476(1.7)	22,239(25.6)	86,711
	남성	68,170(72.6)	22,340(23.8)	1,652(1.8)	1,764(1.9)	93,926
연령	40대	5,294(100.0)	0(0.0)	0(0.0)	0(0.0)	5,294
	50대	92,750(67.6)	25,864(18.9)	0(0.0)	18,574(13.5)	137,188
	60대 이상	13,555(37.7)	13,823(38.5)	3,129(8.7)	5,429(15.1)	35,936
계	111,599	39,687	3,129	24,003	178,41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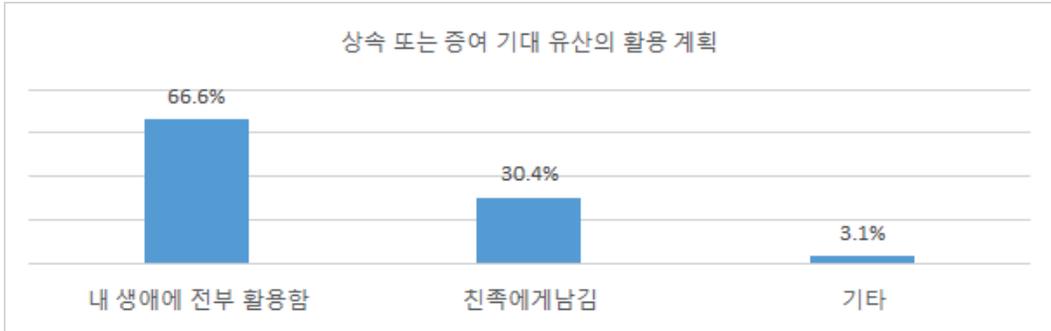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3) 향후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은 주로 살아있는 동안 전부 활용할 계획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은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66.6%, 친족에게 남김 30.4%, 기타 3.1% 순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전부 활용할 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은 남녀 모두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이 가장 많고, 연령별로도 모두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이 가장 많았으나 40대는 내 생애 전부 활용함 49.1%, 친족에게 남김 50.9%로 친족에게 남기겠다는 계획이 약간 더 많음

<표 2-12>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내 생애 전부 활용함	친족에게 남김	기타	계	
전체	107,521(66.6)	49,036(30.4)	4,958(3.1)	161,515(100.0)	
성	여성	45,688(61.5)	23,684(31.9)	4,958(6.7)	74,330(100.0)
	남성	64,052(71.6)	25,353(28.4)	0(0.0)	89,405(100.0)
연령	40대	2,600(49.1)	2,694(50.9)	0(0.0)	5,294(100.0)
	50대	88,554(70.1)	32,830(26.0)	4,958(3.9)	126,342(100.0)
	60대 이상	16,367(54.8)	13,512(45.2)	0(0.0)	29,879(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다.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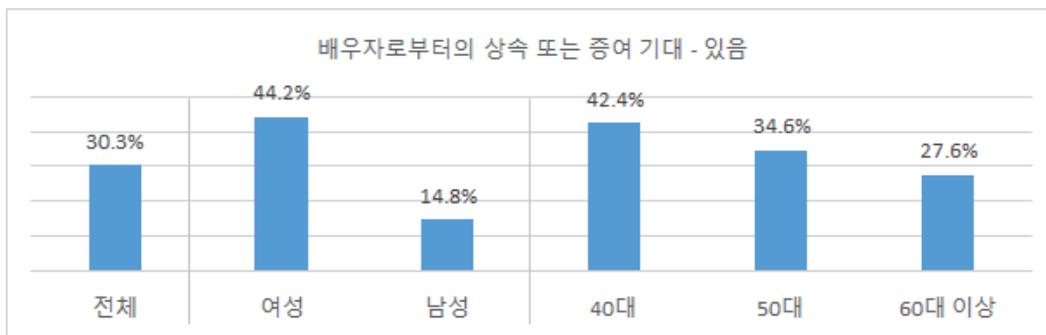
1) 향후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여부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30.3%이며, 특히 여성의 기대가 더 높음.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 비율이 증가하여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비율은 여성 44.2%, 남성 17.8%로 여성이 29.4%p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가하여 60대 이상 27.6%, 50대 34.6%, 40대 42.4% 순으로 40대의 기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주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만 표시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종류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는 대부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남성은 현금이 거주용 부동산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여성은 거주용 부동산 57.5%, 현금 24.4%, 기타 부동산 16.4%, 현금제외 동산 1.7% 순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현금 39.3%, 거주용부동산 38.6%, 기타부동산 17.9%, 현금제외 동산 1.3% 순으로 남성은 현금의 비율이 거주용 부동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두 거주용 부동산이 40대 62.6%, 50대 53.3%, 60대 이상 5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3〉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종류

단위 : 명, %

구분	거주용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부동산 (토지, 건물)	동산 (현금 제외)	현금	기타	계	
성	여성	2,416,099(57.5)	687,791(16.4)	70,548(1.7)	1,027,174 (24.4)	742(0.0)	4,202,355
	남성	372,092(38.6)	172,354(17.9)	12,546(1.3)	378,016 (39.3)	27,912(2.9)	962,921
연령	40대	90,534(62.6)	15,809(10.9)	0(0.0)	38,280 (26.5)	0(0.0)	144,622
	50대	1,120,515(53.3)	331,506(15.8)	42,882(2.0)	598,654 (28.5)	8,554(0.4)	2,102,111
	60대 이상	1,577,142(54.0)	512,831(17.6)	40,213(1.4)	768,256 (26.3)	20,101(0.7)	2,918,543
계	2,788,191	860,146	83,095	1,405,189	28,655	5,165,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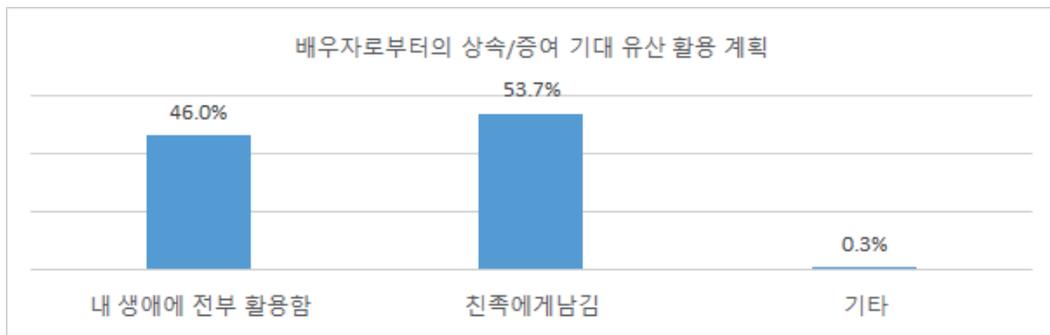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3)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은 친족에게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5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할 계획인 경우가 46.0%로 많음

[그림 2-7]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에 대해 여성은 친족에게 남길 계획이 가장 많고, 남성은 근소한 차이로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이 조금 더 많음.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이 증가하여 40대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은 친족에게 남기려는 계획이 58.5%로 가장 많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여성은 친족에게 남김 55.0%, 내 생애 전부 활용 46.0%, 기부함 0.3% 순이며, 남성은 내 생애 전부 활용 50.8%, 친족에게 남김 49.2%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친족에게 남기려는

계획이 가장 많고, 남성은 근소한 차이로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40대는 내 생애 전부 활용 75.8%, 친족에게 남김 24.2%, 50대는 내 생애 전부 활용 51.1%, 친족에게 남김 48.9%, 60대 이상은 내 생애 전부 활용 40.9%, 친족에게 남김 48.9%, 60대 이상은 친족에게 남김 58.5%, 내 생애 전부 활용 40.9%, 기부함 0.6% 순으로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가하여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친족에게 남기겠다는 계획이 가장 많음

〈표 2-14〉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내 생애 전부 활용함	친족에게 남김	기타	계	
전체	1,599,188(46.0)	1,867,809(53.7)	11,719(0.3)	3,478,716(100.0)	
성	여성	1,192,948(44.5)	1,474,268(55.0)	11,719(0.4)	2,678,935(100.0)
	남성	406,240(50.8)	393,541(49.2)	0(0.0)	799,781(100.0)
연령	40대	71,780(75.8)	22,881(24.2)	0(0.0)	94,661(100.0)
	50대	724,350(51.1)	694,331(48.9)	0(0.0)	1,418,681(100.0)
	60대 이상	803,058(40.9)	1,150,597(58.5)	11,719(0.6)	1,965,37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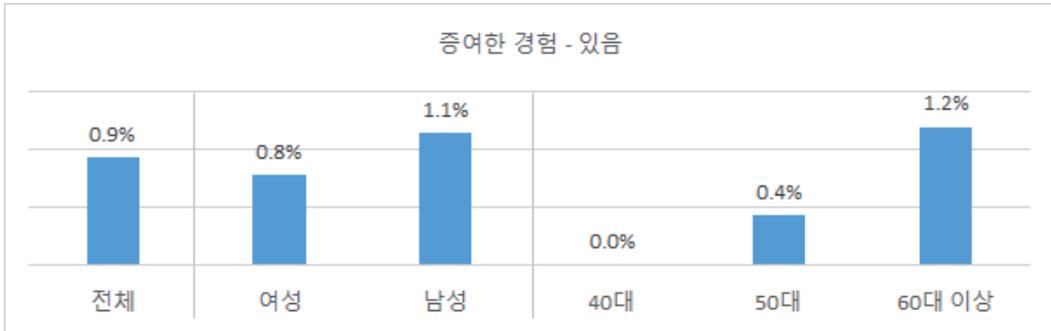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라. 증여한 경험

1) 증여한 경험 여부

○ 증여를 한 경험은 0.9%로 적은 편이며, 성별로는 여성 0.8%, 남성 1.1%로 남성의 경험이 0.3%p 더 높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1.2%, 50대 0.4%로 60대 이상의 증여 경험이 가장 많음

[그림 2-8] 증여를 한 경험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 증여한 재산의 종류

-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여성과 60대 이상은 부동산, 남성과 50대는 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증여한 재산의 유형은 부동산 63.3%, 현금 32.7%, 현금제외 동산 4.1% 순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현금 54.4%, 부동산 39.4%, 현금제외 동산 6.3% 순으로 현금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 50대는 현금 61.9%, 부동산 29.6%, 현금제외 동산 8.6% 순으로 현금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부동산 53.8%, 현금 41.4%, 현금 제외 동산 4.7% 순으로 부동산이 가장 많음

<표 2-15> 증여한 재산의 종류

단위 : 명, %

구분	부동산	동산(현금제외)	현금	계	
성	여성	49,452(63.3)	3,173(4.1)	25,547(32.7)	78,172
	남성	34,615(39.4)	5,530(6.3)	47,797(54.4)	87,943
연령	50대	6,557(29.6)	1,899(8.6)	13,714(61.9)	22,170
	60대 이상	77,511(53.8)	6,805(4.7)	59,629(41.4)	143,945
계	84,067 -	8,704 -	73,344 -	166,115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3) 증여한 대상

- 재산을 증여한 대상은 대부분 첫째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의 첫째 자녀 비율이 73.7%로 특히 더 높음
 - 여성의 증여 대상은 첫째 자녀 56.0%, 둘째 자녀 20.2%, 넷째 자녀 9.6% 등의 순이며, 남성은 첫째 자녀 42.5%, 둘째 자녀 27.3%, 셋째 자녀 19.0%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연령별로 50대는 첫째 자녀 73.7%, 셋째 자녀 17.8%, 둘째 자녀 8.6% 등의 순이며, 60대 이상은 첫째 자녀 45.1%, 둘째 자녀 26.3%, 셋째 자녀 13.6% 순의 순으로 모두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는 특히 50대에서 높게 나타남

〈표 2-16〉 증여한 대상

단위 : 명, %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일곱째 자녀	여덟째 자녀	비동거 손자녀	기타	계	
성	여성	43,789(56.0)	15,821(20.2)	6,845(8.8)	7,472(9.6)	0(0.0)	2,677(3.4)	1,568(2.0)	0(0.0)	78,172
	남성	36,624(42.5)	23,519(27.3)	16,371(19.0)	5,401(6.3)	774(0.9)	0(0.0)	998(1.2)	2,446(2.8)	86,132
연령	50대	16,335(73.7)	1,899(8.6)	3,936(17.8)	0(0.0)	0(0.0)	0(0.0)	0(0.0)	0(0.0)	22,170
	60대 이상	64,078(45.1)	37,440(26.3)	19,280(13.6)	12,873(9.1)	774(0.5)	2,677(1.9)	2,566(1.8)	2,446(1.7)	142,134
계	80,413	- 39,340	- 23,216	- 12,873	- 774	- 2,677	- 2,566	- 2,446	- 164,304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4) 증여한 시기

- 증여한 시기는 모두 2018년이 가장 많음
 - 증여한 시기는 남녀 모두 2018년으로 각각 여성 68.1%, 남성 68.5%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도 모두 2018년으로 50대 73.2%, 60대 이상 6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7〉 증여한 시기

단위 :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성	여성	11,015(14.1)	53,232(68.1)	13,925(17.8)	78,172
	남성	12,257(13.9)	60,266(68.5)	15,420(17.5)	87,943
연령	50대	5,947(26.8)	16,223(73.2)	0(0.0)	22,170
	60대 이상	17,325(12.0)	97,275(67.6)	29,345(20.4)	143,945
	계	23,272 -	113,497 -	29,345 -	166,115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5) 증여한 당시 재산의 금액

- 증여한 당시 재산의 금액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여성은 5천만원 미만인 39.2%로 가장 많고, 남성은 1억~2억 미만이 29.6%로 가장 많음. 50대는 2억~5억원 미만이 47.3%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5천만원 미만이 36.4%로 가장 많음

〈표 2-18〉 증여한 당시 재산의 금액

단위 : 명, %

구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 미만	1억~2억 미만	2억~5억 미만	5억 이상	계
성	여성	30,037(39.2)	22,182(29.0)	10,633(13.9)	11,487(15.0)	2,205(2.9)	76,543
	남성	25,145(29.1)	14,003(16.2)	25,547(29.6)	21,758(25.2)	0(0.0)	86,453
연령	50대	3,903(17.6)	7,775(35.1)	0(0.0)	10,492(47.3)	0(0.0)	22,170
	60대 이상	51,279(36.4)	28,410(20.2)	36,180(25.7)	22,752(16.2)	2,205(1.6)	140,826
	계	55,181 -	36,185 -	36,180 -	33,244 -	2,205 -	162,997

주 : 다중응답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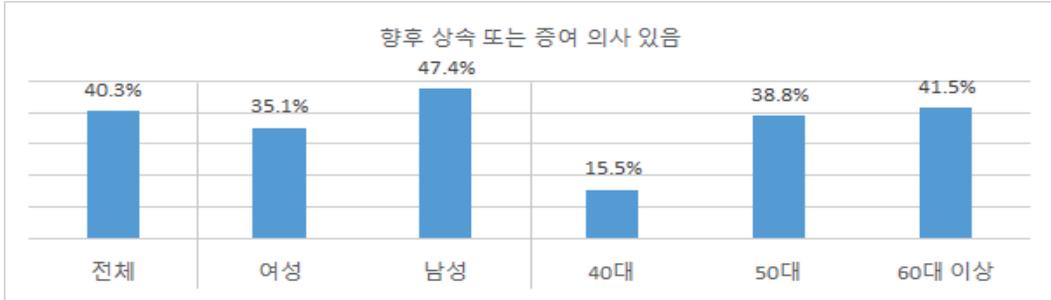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마.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의사

1)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여부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비율은 전체 40.3%로 나타났다으며, 여성 35.1%, 남성 47.4%로 남성의 상속 또는 증여 의사가 12.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속 또는 증여의사 있음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이 4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의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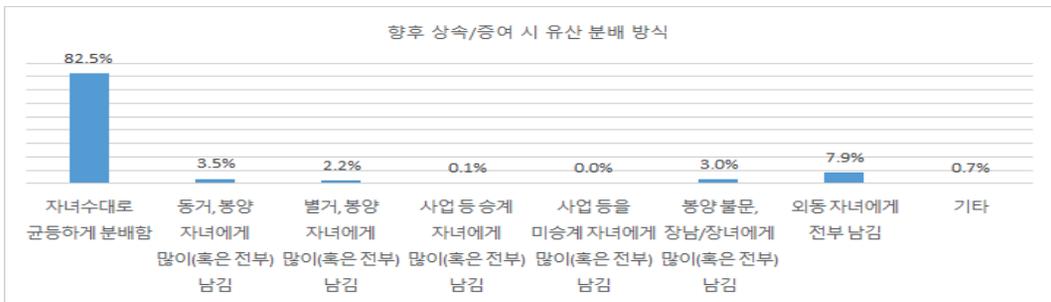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유산의 분배 방식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는 자녀수대로 균등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등분배 방식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동거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 조건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 향후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함이 82.5%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김 7.9%, 동거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3.5%,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3.0% 등의 순으로 높아 과거에 비해 그 중요도는 낮아졌지만 동거 부모 봉양의무 이행과 장남장녀 조건이 여전히 고려되고 있음

[그림 2-10]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유산의 분배 방식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 방식은 성별, 연령별로도 모두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남. 다만 외동인 경우 외에 여성과 50대는 동거 부모 봉양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는 장남장녀 조건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9〉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유산의 분배 방식

단위 : 명, %

구분	자녀 수대로 균등분배	동거, 봉양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별거, 봉양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사업 등 승계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사업 등 미승계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봉양불문, 장남/장 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김	기타	계	
전체	1,350,298 (81.0)	42,695 (2.6)	24,279 (1.5)	3,106 (0.2)	0 (0.0)	11,509 (0.7)	233,240 (14.0)	2,415 (0.1)	1,667,542 (100.0)	
성	여성	4,581,196 (82.5)	193,962 (3.5)	124,424 (2.2)	4,939 (0.1)	2,556 (0.0)	168,584 (3.0)	440,623 (7.9)	38,124 (0.7)	5,554,408 (100.0)
	남성	2,220,993 (79.3)	129,961 (4.6)	88,243 (3.2)	3,106 (0.1)	2,556 (0.1)	96,695 (3.5)	241,180 (8.6)	16,301 (0.6)	2,799,035 (100.0)
연령	50대	2,362,522 (85.7)	64,000 (2.3)	36,181 (1.3)	1,833 (0.1)	0 (0.0)	71,888 (2.6)	199,443 (7.2)	21,824 (0.8)	2,757,691 (100.0)
	60대 이상	25,790 (90.8)	0 (0.0)	0 (0.0)	0 (0.0)	0 (0.0)	0 (0.0)	2,604 (9.2)	0 (0.0)	28,394 (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3)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자산이 주류를 이룸. 여성과 남성, 50대와 60대 이상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고, 40대는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5.6%,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 29.0%,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21.7% 등의 순이며, 남성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59.9%,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21.9%,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 8.6% 순으로 남녀 모두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이 특히 더 높음. 다만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는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35.7%,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 34.3%,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0.0% 등의 순으로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음. 50대와 60대 이상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각각 45.9%, 49.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상속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비율은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표 2-20〉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

단위 : 명, %

구분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상속·증여 받은 금융자산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상속·증여 받은 기타자산	스스로 취득한 기타자산	기타	계	
성	여성	1,101,895 (29.0)	1,353,166 (35.6)	221,880 (5.8)	823,317 (21.7)	69,006 (1.8)	229,031 (6.0)	1,600 (0.0)	3,799,897
	남성	344,108 (8.6)	2,399,607 (59.9)	54,703 (1.4)	879,687 (21.9)	30,793 (0.8)	298,957 (7.5)	0 (0.0)	4,007,855
연령	40대	11,541 (34.3)	10,082 (30.0)	0 (0.0)	12,017 (35.7)	0 (0.0)	0 (0.0)	0 (0.0)	33,640
	50대	383,994 (16.0)	1,103,725 (45.9)	77,618 (3.2)	615,205 (25.6)	47,844 (2.0)	177,872 (7.4)	0 (0.0)	2,406,258
	60대 이상	1,048,150 (19.5)	2,638,966 (49.2)	198,966 (3.7)	1,075,783 (20.0)	51,955 (1.0)	350,116 (6.5)	1,600 (0.0)	5,365,536
	계	1,443,686	3,752,773	276,583	1,703,005	99,799	527,998	1,600	7,805,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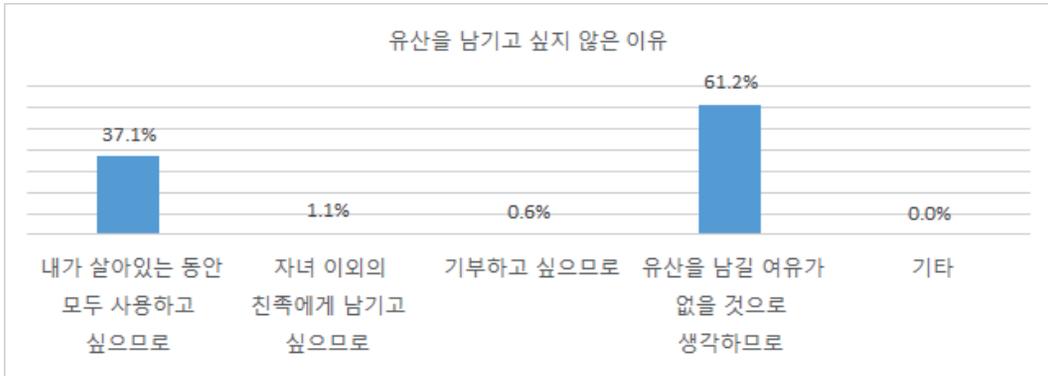
주 : 다중응답 항목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4)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않은 이유는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 생전 모두 소진인 그 이유로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로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61.2%,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 싶으므로 37.1%, 자녀 외에 친족에 남기고 싶으므로 1.1% 등의 순으로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그림 2-11]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않은 이유는 성별, 연령별로도 모두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 생전 모두 소진이 그 이유로 나타남

<표 2-21>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 싶으므로	자녀 이외의 친족에게 남기고 싶으므로	기부하고 싶으므로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기타	계	
전체	3,050,770 (37.1)	91,255 (1.1)	47,592 (0.6)	5,039,080 (61.2)	2,559 (0.0)	8,231,256 (100.0)	
성	여성	1,751,554 (33.9)	44,601 (0.9)	25,731 (0.5)	3,350,057 (64.8)	0 (0.0)	5,171,943 (100.0)
	남성	1,299,216 (42.5)	46,654 (1.5)	21,861 (0.7)	1,689,023 (55.2)	2,559 (0.1)	3,059,313 (100.0)
연령	40대	57,734 (37.2)	0 (0.0)	0 (0.0)	97,435 (62.8)	0 (0.0)	155,169 (100.0)
	50대	1,123,027 (42.7)	32,032 (1.2)	10,741 (0.4)	1,462,440 (55.6)	0 (0.0)	2,628,240 (100.0)
	60대 이상	1,867,699 (34.4)	59,223 (1.1)	36,851 (0.7)	3,469,022 (63.8)	2,559 (0.0)	5,435,354 (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4. 소결

- 재산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말함

- 상속법에서 상속의 우선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순임. 상속재산의 분할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유언이 없을 경우 가족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음. 유언이 없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함. 현행 상속법에서 법정상속분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가산 받게 됨
- 상속은 유언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두 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공동상속인 중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음
- 제사용 재산의 승계 상속인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임(민법 제1008조의3).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제사 주재자를 결정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음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민법 제554조)
- 상속이든 증여이든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하지만,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남겨주신 재산인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분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을 의미함. 또한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승계 가능하지만 증여는 친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하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제주지역의 재산 상속은 생전처분에 의한 분재,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재산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재, 법정상속의 세 가지가 있음. 또한 최근 상속과 증여의 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공개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년도 자료를 통해서 상속·증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여성이 더 높았으며,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이 주된 형태로 나타났음.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배우자인 반면 남성은 부모가 주를 이룸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재산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5억원 이상 재

- 산 금액은 여성과 6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남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18.5%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60대 이상이 공동상속 또는 공동수증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유형은 자녀 51.3%, 형제·자매 41.1%, 친척 7.6% 순으로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성별로는 여성의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수증자는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주로 배우자이기 때문임
 -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재산 분배 방식은 남녀 모두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균등분배 경험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는 100.0% 균등분배인 반면 60대 이상은 절반 정도만 균등분배 방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음. 다만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주로 자신의 부모님인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는 남녀 모두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음. 다만 거주용 부동산은 남성이 특히 남성의 기대가 더 높고, 상대적으로 현금에 대한 기대는 여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래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은 주로 살아있는 동안 전부 활용할 계획인 경우가 가장 많음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30.3%이며, 특히 여성의 기대가 더 높음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종류로는 대부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남성은 현금이 거주용 부동산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은 친족에게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5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할 계획인 경우가 46.0%로 많음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에 대해 여성은 친족에게 남길 계획이 가장 많고, 남성은 근소한 차이로 내 생애 전부 활용 계획이 조금 더 많음
 - 증여를 한 경험은 0.9%로 적은 편이며, 성별로는 여성 0.8%, 남성 1.1%로 남성의 경험이 0.3%p 더 높음

-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여성과 60대 이상은 부동산, 남성과 50대는 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을 증여한 대상은 대부분 첫째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의 첫째 자녀 비율이 73.7%로 특히 더 높음. 증여한 당시 재산의 금액은 여성은 5천만원 미만이 39.2%로 가장 많고, 남성은 1억~2억 미만이 29.6%로 가장 많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비율은 전체 40.3%로 나타났다으며, 여성 35.1%, 남성 47.4%로 남성의 상속 또는 증여 의사가 12.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 원하는 경우, 재산의 분배는 자녀 수대로 균등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자산이 주류를 이룸. 여성과 남성, 50대와 60대 이상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고, 40대는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않은 이유는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기 생전 모두 소진이 그 이유로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실태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상속 또는 증여 경험
3.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실태
4.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5. 재산 상속 분쟁 관행
6.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7. 소결 및 시사점

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분석대상자는 여성 263명, 남성 257명으로 총 520명이며, 여성이 50.6%를 차지함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거주자가 68.8%로 가장 많으며, 성별로도 여성과 남성과 모두 제주시 거주자가 각각 70.7%, 66.9%로 가장 많음
 - 여성의 거주지는 제주시 70.7%, 서귀포시 29.3%로 제주시 거주자가 41.4%p 더 많음. 남성의 거주지는 제주시 66.9%, 서귀포시 33.1%로 남성 역시 제주시 거주자가 33.8%p 더 많음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0.8%로 가장 많으며,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 이상이 각각 43.3%, 38.1%로 가장 많음
 - 여성은 40대 28.5%, 50대 28.1%, 60대 이상으로 43.3%이며, 남성은 40대 30.7%, 50대 31.1%, 60대 이상 38.1%로 남녀 모두 60대 이상이 가장 많음
- 거주기간별로는 60년 이상 36.9%, 50년 미만 35.8%, 50년~60년 미만 27.3% 순으로 60년 이상이 가장 많음. 여성의 거주기간은 60년 이상이 40.7%, 남성은 50년 미만이 38.9%로 가장 많음
 - 여성은 거주기간은 50년 미만 32.7%, 50~60년 미만 26.6%, 60년 이상 40.7%로 60년 이상이 가장 많음. 남성은 50년 미만 38.9%, 50~60년 미만 28.0%, 60년 이상 33.1%로 50년 미만이 38.9%로 가장 많음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이 79.6%로 가장 많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각각 74.5%, 84.8%로 가장 많음
 - 여성은 배우자 있음 74.5%, 미혼/기타 25.5%이며, 남성은 배우자 있음 84.8%, 미혼/기타 15.2%로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하 62.5%로 가장 많음. 여성과 남성 모두 고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69.2%, 55.6%로 가장 높고, 여성의 고졸 이하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여성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69.2%, 전문대졸 이상 30.8%로 고졸 이하가 38.4%p 더 많고, 남성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55.6%, 전문대졸 이상 44.4%로 고졸이하가 11.2%p 더 많아 여성의 고졸 이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인 경우는 74.4%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가 각각 71.4%, 77.1%로 가장 많음

- 여성의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71.4%, 맞벌이 아님 28.6%로 맞벌이가 42.8%p 더 많고, 남성은 맞벌이 77.1%, 맞벌이 아님 22.9%로 맞벌이가 54.2%p 더 많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44.4%로 가장 많음. 성별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 500만원 이상이 각각 41.8%, 47.1%로 가장 많음
- 여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31.9%, 300만원~500만원 26.2%, 500만원 이상 41.8%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고, 남성은 300만원 미만은 18.3%, 300만원~500만원 미만 34.6%, 500만원 이상 47.1%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음
-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이 2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가 24.2%로 많음. 여성의 직업은 서비스직 35.0%, 남성의 직업은 기능/조립/단순노무직이 29.6%로 가장 많음
- 여성의 직업은 관리직/전문직 10.6%, 사무직/판매직 15.2%, 서비스직 35.0%, 농림어업직 20.2%,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9.0%로 서비스직이 가장 많으며, 남성은 관리직/전문직 15.6%, 사무직/판매직 13.6%, 서비스직 23.7%, 농림어업직 17.5%,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29.6%로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가 가장 많음
- 건강상태별로는 좋음이 63.8%로 가장 많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이 좋다는 비율이 각각 58.2%, 69.6%로 가장 높고 특히 남성이 더 높음
- 여성의 건강상태는 좋음 58.2%, 보통 25.5%, 좋지 않음 16.3% 순이며, 남성은 좋음 69.6%, 보통 23.0%, 좋지 않음 7.4% 순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이 좋다는 비율이 가장 많고 남성의 좋음 비율이 11.4%p 더 높음
- 계층의식은 중간층이 86.9%로 가장 많음. 여성과 남성 모두 중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음
- 여성의 계층의식은 상층 5.3%, 중간층 84.4%, 하층 10.3%로 중간층이 가장 많고, 남성은 상층 5.4%, 중간층 89.5%, 하층 5.1%로 중간층이 가장 많음. 또한 하층이라는 인식은 여성이 남성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여성	남성	전체
전체		263 (50.6)	257 (49.4)	520 (100.0)
거주지	제주시	186 (70.7)	172 (66.9)	358 (68.8)
	서귀포시	77 (29.3)	85 (33.1)	162 (31.2)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연령	40대	75 (28.5)	79 (30.7)	154 (29.6)
	50대	74 (28.1)	80 (31.1)	154 (29.6)
	60대 이상	114 (43.3)	98 (38.1)	212 (40.8)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거주기간	50년 미만	86 (32.7)	100 (38.9)	186 (35.8)
	50-60년 미만	70 (26.6)	72 (28.0)	142 (27.3)
	60년 이상	107 (40.7)	85 (33.1)	192 (36.9)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196 (74.5)	218 (84.8)	414 (79.6)
	미혼/기타	67 (25.5)	39 (15.2)	106 (20.4)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2 (69.2)	143 (55.6)	325 (62.5)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이상	81 (30.8)	114 (44.4)	195 (37.5)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맞벌이 여부	예	140 (71.4)	168 (77.1)	308 (74.4)
	아니오	56 (28.6)	50 (22.9)	106 (25.6)
	계	196 (100.0)	218 (100.0)	41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4 (31.9)	47 (18.3)	131 (25.2)
	300만원-500만원 미만	69 (26.2)	89 (34.6)	158 (30.4)
	500만원 이상	110 (41.8)	121 (47.1)	231 (44.4)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28 (10.6)	40 (15.6)	68 (13.1)
	사무직/판매직	40 (15.2)	35 (13.6)	75 (14.4)
	서비스직	92 (35.0)	61 (23.7)	153 (29.4)
	농림어업직	53 (20.2)	45 (17.5)	98 (18.8)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50 (19.0)	76 (29.6)	126 (24.2)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건강상태	좋음	153 (58.2)	179 (69.6)	332 (63.8)
	보통	67 (25.5)	59 (23.0)	126 (24.2)
	좋지 않음	43 (16.3)	19 (7.4)	62 (11.9)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계층의식	상층	14 (5.3)	14 (5.4)	28 (5.4)
	중간층	222 (84.4)	230 (89.5)	452 (86.9)
	하층	27 (10.3)	13 (5.1)	40 (7.7)
	계	263 (100.0)	257 (100.0)	520 (100.0)

2. 상속증여 경험

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1)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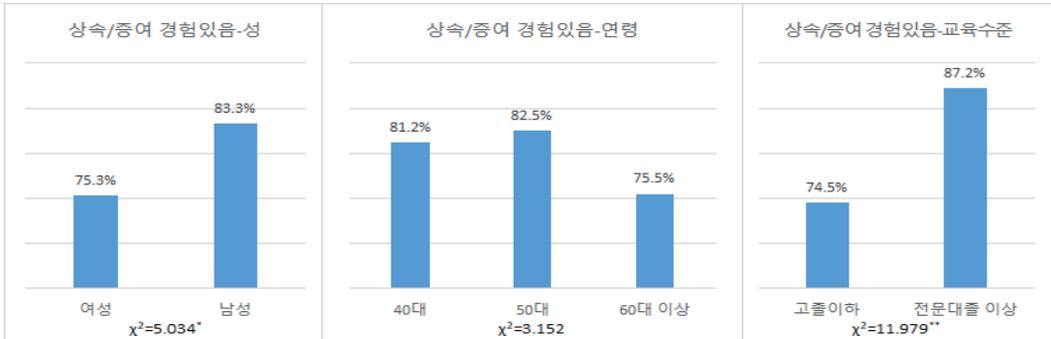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있음 79.2%, 없음 20.8%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8.4%p 더 높아 대부분 상속 또는 증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의 경험이 더 많음. 연령별로는 50대의 경험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으나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여성 75.3%, 남성 83.3%로 남성이 8.0%p 더 높아 남성의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 82.5%, 40대 81.2%, 60대 이상 75.5% 순으로 50대가 가장 높음. 다만 이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 87.2%, 고졸이하 74.5%로 전문대졸 이상이 12.7%p 더 높아 전문대졸 이상의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있음 - 성, 연령,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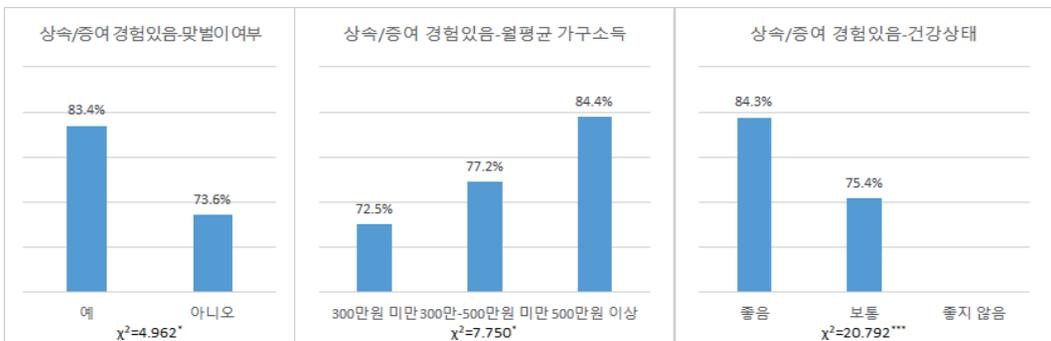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음 응답만 표시함

- 또한 맞벌이인 경우가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이 더 많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별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은 맞벌이인 경우가 83.4%, 그렇지 않은 경우가 73.6%로 맞벌이인 경우의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이 9.8%p 더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500만원 이상 84.4%, 300만원~500만원 미만 77.2%, 300만원 미만 72.5%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비율이 증가함
- 건강상태별로는 좋음 84.3%, 보통 75.4%, 좋지 않음 0.0%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 비율이 증가함

[그림 3-3]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 있음 -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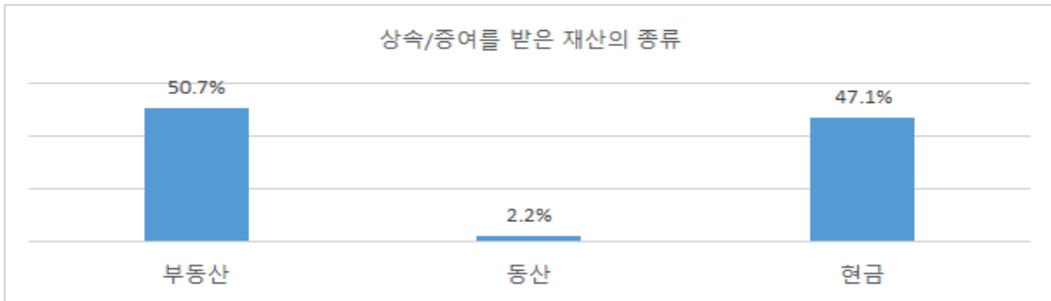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음 응답만 표시함

2)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는 주로 부동산과 현금이 대부분임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 50.7%, 현금 47.1%, 동산 2.2%로 주로 부동산과 현금이며, 그 중 부동산이 3.6%p 더 높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는 여성은 현금, 남성은 부동산이 가장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비율이 증가하고 낮을수록 현금 비율이 증가함.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종류는 현금 57.5%, 부동산 40.6%, 동산 1.8%로 현금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은 부동산 60.3%, 현금 37.1%, 동산 2.6% 순으로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 종류는 현금 58.0%, 부동산 38.9%, 동산 3.1% 순으로 현금이 가장 많고, 50대는 부동산 52.1%, 현금 45.8%, 동산 2.1% 순이며, 60대 이상은 부동산 58.4%, 현금 39.9%, 동산 1.7% 순으로 50대와 60대는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동산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금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표 3-2〉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종류 - 성,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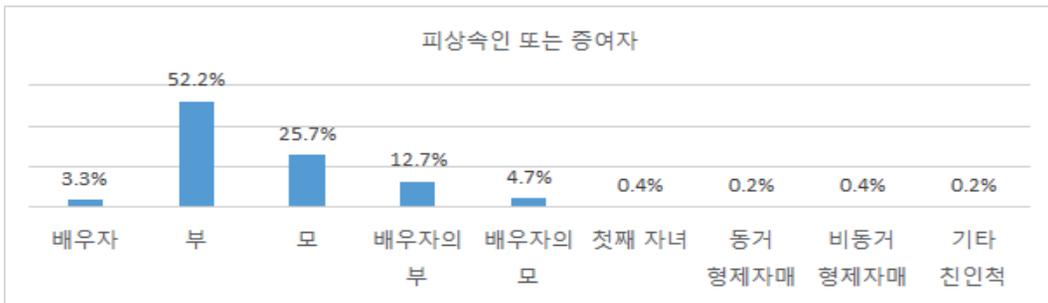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부동산	동산	현금	계
성	여성	89(40.6)	4(1.8)	126(57.5)	219
	남성	138(60.3)	6(2.6)	85(37.1)	229
	계	227 -	10 -	211 -	448
연령	40대	51(38.9)	4(3.1)	76(58.0)	131
	50대	75(52.1)	3(2.1)	66(45.8)	144
	60대 이상	101(58.4)	3(1.7)	69(39.9)	173
	계	227 -	10 -	211 -	44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3)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 상속 또는 증여를 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부모이며, 그중 아버지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상속 또는 증여를 준 사람은 부 52.2%, 모 25.7%, 배우자의 부 12.7%, 배우자의 모 4.7%, 배우자 3.3% 등의 순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여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부모가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남성은 아버지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별로는 모두 아버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여성은 부 32.4%, 모 32.0%, 배우자의 부모 21.0%, 배우자의 모 7.3%, 배우자 5.5% 등의

순이며, 남성은 부 71.2%, 모 19.7%, 배우자의 부 4.8%, 배우자의 모 2.2%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은 부모 및 배우자의 부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남성은 아버지로부터의 받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 모,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배우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그중 아버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 성,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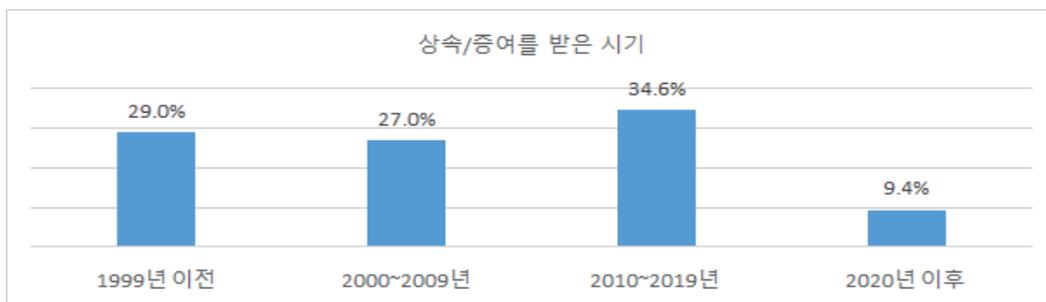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첫째 자녀	동거 형제자매	비동거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계
성	여성	12(5.5)	71(32.4)	70(32.0)	46(21.0)	16(7.3)	2(0.9)	0(0.0)	1(0.5)	219
	남성	3(1.3)	163(71.2)	45(19.7)	11(4.8)	5(2.2)	0(0.0)	1(0.4)	1(0.4)	229
	계	15 -	234 -	115 -	57 -	21 -	2 -	1 -	2 -	448
연령	40대	2(1.5)	68(51.9)	37(28.2)	16(12.2)	7(5.3)	1(0.8)	0(0.0)	0(0.0)	131
	50대	5(3.5)	75(52.1)	37(25.7)	14(9.7)	11(7.6)	0(0.0)	1(0.7)	1(0.7)	144
	60대 이상	8(4.6)	91(52.6)	41(23.7)	27(15.6)	3(1.7)	1(0.6)	0(0.0)	1(0.6)	173
	계	15 -	234 -	115 -	57 -	21 -	2 -	1 -	2 -	448

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음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2010~2019년 사이가 3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99년 이전 29.0%, 2000~2009년 27.0%, 2020년 이후 9.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60대 미만은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1999년 이전이 가장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여성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는 2010~2019년 32.9%, 1999년 이전 30.1%, 2000~2009년 26.9%, 2020년 이후 10.0% 순이며, 남성은 2010~2019년 36.2%, 1999년 이전 27.9%, 2000~2009년 27.1%, 2020년 이후 8.7% 순으로 남녀 모두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는 2010~2019년 46.6%, 2000~2009년 35.1%, 2020년 이후 12.2%, 1999년 이전 6.1% 순이며, 50대는 2010~2019년 40.3%, 2000~2009년 30.6%, 1999년 이전 18.1%, 2020년 이후 11.1% 순으로 40대와 50대는 2010~2019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은 1999년 이전 55.5%, 2010~2019년 20.8%, 2000~2009년 17.9%, 2020년 이후 5.8% 순으로 1999년 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시기 - 성, 연령

단위 : 명, %

구분	1999년 이전	2000~2009년	2010~2019년	2020년 이후	계	
성	여성	66 (30.1)	59 (26.9)	72 (32.9)	22 (10.0)	219
	남성	64 (27.9)	62 (27.1)	83 (36.2)	20 (8.7)	229
	계	130	121	155	42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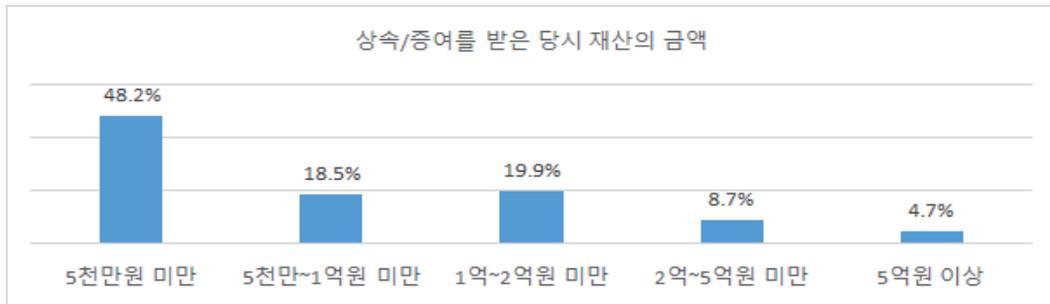
연령	40대	8 (6.1)	46 (35.1)	61 (46.6)	16 (12.2)	131
	50대	26 (18.1)	44 (30.6)	58 (40.3)	16 (11.1)	144
	60대 이상	96 (55.5)	31 (17.9)	36 (20.8)	10 (5.8)	173
	계	130 -	121 -	155 -	42 -	44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5)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은 5천만원 미만 48.2%, 1억~2억원 미만 19.9%, 5천만원~1억원 미만 18.5%, 2억~5억원 미만 8.7%, 5억원 이상 4.7% 순으로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 5억원 이상은 4.7%에 그침

[그림 3-7]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의 금액은 남녀 모두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지만 여성이 특히 더 많음.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더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여성은 5천만원 미만 59.8%, 5천만원~1억원 미만 15.5%, 1억~2억원 미만 6.4%, 5억원 이상 4.1% 순이며, 남성은 5천만원 미만 37.1%, 5천만원~1억원 미만 21.4%, 1억~2억원 미만 25.3%, 2억~5억원 미만 10.9%, 5억원 이상 5.2% 순으로 남녀 모두 5천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지만 특히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5천만원 미만 43.5%, 1억~2억원 미만 23.7%, 5천만원~1억

원 미만 17.6% 등의 순이며, 50대는 40대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 미만 41.0%, 1억~2억 원 미만 22.9%, 5천만원~1억원 미만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은 5천만원 미만 57.8%, 5천만원~1억원 미만 17.3%, 1억~2억원 미만 14.5% 등의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특히 6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남. 또한 5억원 이상은 40대가 6.9%로 2.8%인 50대와 4.6%인 60대 이상에 비해 다소 높음

〈표 3-5〉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재산 금액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계	
성	여성	131 (59.8)	34 (15.5)	31 (14.2)	14 (6.4)	9 (4.1)	219
	남성	85 (37.1)	49 (21.4)	58 (25.3)	25 (10.9)	12 (5.2)	229
	계	216 -	83 -	89 -	39 -	21 -	448
연령	40대	57 (43.5)	23 (17.6)	31 (23.7)	11 (8.4)	9 (6.9)	131
	50대	59 (41.0)	30 (20.8)	33 (22.9)	18 (12.5)	4 (2.8)	144
	60대 이상	100 (57.8)	30 (17.3)	25 (14.5)	10 (5.8)	8 (4.6)	173
	계	216 -	83 -	89 -	39 -	21 -	44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6) 공동 상속인

- 함께 유산을 상속 받은 공동상속인의 여부는 있음 48.1%, 없음 51.9%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3.8%p 더 낮지만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이들이 공동상속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공동상속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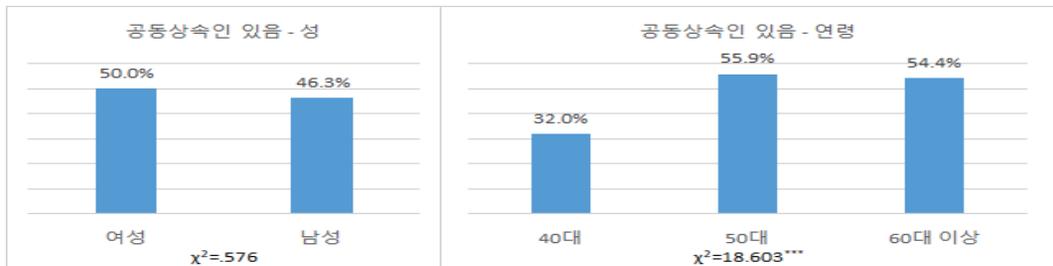


- 공동상속인 있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지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가 공동상속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공동상속인 있는 경우는 여성 50.0%, 남성 46.3%로 여성이 3.7%p 더 높음
- 연령별로는 50대 55.9%, 60대 54.4%, 40대 32.0%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음. 다만 50대 이상은 절반이상이 공동상속인 있지만 40대는 32.0%에 그침
- 거주지별로는 서귀포시 거주자들은 공동상속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44.1%, 서귀포시 57.3%로 서귀포시 거주자가 13.2%p 더 높음

[그림 3-9] 공동상속인 있음 - 성,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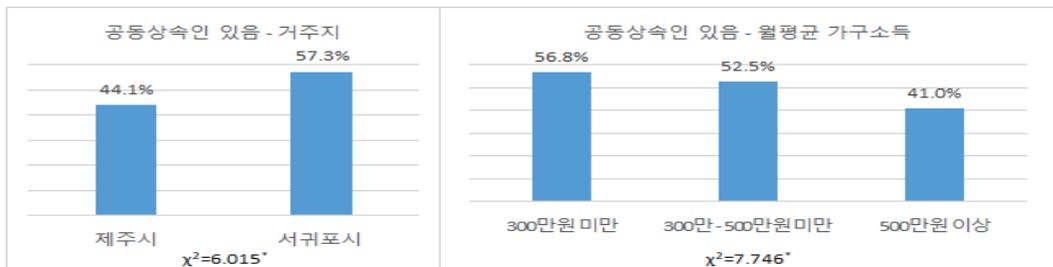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음 응답만 표시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공동상속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56.8%, 300만원~500만원 미만 52.5%, 500만원 이상 41.0%로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0] 공동상속인 있음 -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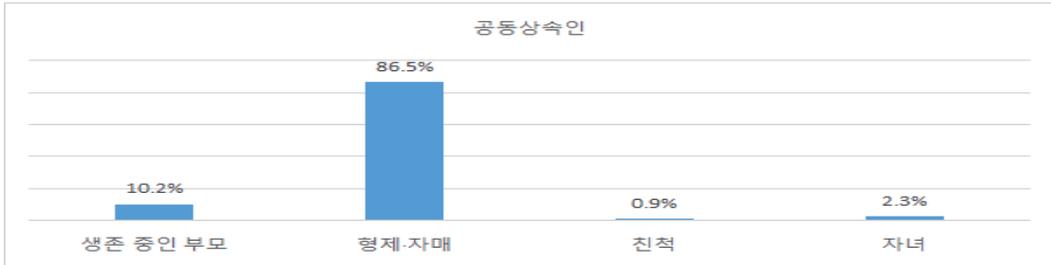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함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음 응답만 표시함

- 공동상속인은 형제·자매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함
 - 공동상속인은 형제·자매가 86.5%로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존 중인 부모 10.2%, 자녀 2.3%, 친척 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1] 공동상속인 유형



- 공동상속인 유형은 성별로도, 연령별로도 형제·자매가 대부분을 차지함. 다만 이는 다중 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여성의 공동상속인 유형은 형제·자매 86.2%, 생존중인 부모 9.25, 자녀 2.8%, 친척 1.8% 순이며, 남성은 형제·자매 86.8%, 생존중인 부모 11.3%, 자녀 1.9% 순으로 남녀 모두 형제·자매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함
 -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형제·자매 82.2%, 생존 중인 부모 11.1%, 자녀 4.4%, 친척 2.2% 순이며, 50대는 형제·자매 85.9%, 생존 중인 부모 14.15, 60대 이상은 형제·자매 89.1%, 생존 중인 부모 6.5%, 자녀 3.3%, 친척 1.1%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형제·자매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함

<표 3-6> 공동상속인 및 공동수증자 유형 - 성, 연령별

구 분		생존 중인 부모	형제·자매	친척	자녀	계
성별	여성	10 (9.2)	94 (86.2)	2 (1.8)	3 (2.8)	109
	남성	12 (11.3)	92 (86.8)	0 (0.0)	2 (1.9)	106
	계	22 -	186 -	2 -	5 -	215
연령	40대	5 (11.1)	37 (82.2)	1 (2.2)	2 (4.4)	45
	50대	11 (14.1)	67 (85.9)	0 (0.0)	0 (0.0)	78
	60대 이상	6 (6.5)	82 (89.1)	1 (1.1)	3 (3.3)	92
	계	22 -	186 -	2 -	5 -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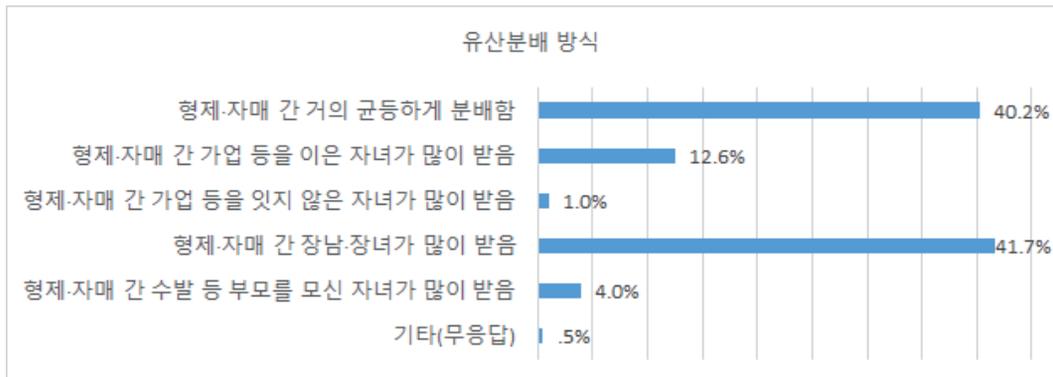
주 : 다중응답 항목임

단위 : 명, %

7) 유산 분배 방식

-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유산의 분배 방식은 장남장녀가 가장 많이 받거나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봉양 우대는 4.0%에 그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유산의 분배 방식은 형제·자매 간 장남·장녀가 가장 많이 받음 41.7%,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40.25, 형제·자매 간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은 12.6%, 형제·자매 간 수발 등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이 받음 4.0%, 형제·자매 간 가업 등을 잇지 않은 자녀가 많이 받은 1.0%, 기타 0.5% 순으로 형제·자매 간 장남 또는 장녀가 많이 받거나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유산 분배 방식



- 유산의 분배 방식은 여성은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고 남성은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하여 여성은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43.4%,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38.4%,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11.1% 등의 순으로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45.0%,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37.0%,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14.0% 등의 순으로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분배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은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분배 방식이 가장 많은 반면 50

- 대는 균등 배분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는 장남장녀 많이 받음 50.0%,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배분함 42.5%, 가업 등을 잇지 않은 자녀가 많이 받음 5.0%,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2.5% 순으로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분배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50대는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43.1%,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37.5%,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12.5%,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이 받음 6.9% 순으로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은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41.4%,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36.8%,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17.2%,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이 받음 3.4% 등의 순으로 40대와 마찬가지로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분배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7〉 유산 분배 방식

단위 : 명, %

구분	형제·자매 간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형제·자매 간 가업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형제·자매 간 가업 등을 잇지 않은 자녀가 많이 받음	형제·자매 간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형제·자매 간 수발 등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이 받음	기타	계	χ^2
성	여성	43(43.4)	11(11.1)	1(1.0)	38(38.4)	5(5.1)	1(1.0)	2.895
	남성	37(37.0)	14(14.0)	1(1.0)	45(45.0)	3(3.0)	0(0.0)	
	계	80(40.2)	25(12.6)	2(1.0)	83(41.7)	8(4.0)	1(0.5)	
연령	40대	17(42.5)	1(2.5)	2(5.0)	20(50.0)	0(0.0)	0(0.0)	18.607*
	50대	31(43.1)	9(12.5)	0(0.0)	27(37.5)	5(6.9)	0(0.0)	
	60대 이상	32(36.8)	15(17.2)	0(0.0)	36(41.4)	3(3.4)	1(1.1)	
	계	80(40.2)	25(12.6)	2(1.0)	83(41.7)	8(4.0)	1(0.5)	

* p < .05, ** p < .01, *** p < .001

- 유산분배 방식은 계층 간 차이를 보임. 상층은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 방식이 100%인 반면 중간층은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방식이 가장 많고, 하층은 형제·자매 간 균등분배 방식과 장남장녀가 더 많이 받는 방식이 동률로 나타남
- 자신의 계층이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 빈도는 적지만 100.0% 형제·자매 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중간층은 형제·자매 간 장남 장녀가 많이 받음 43.0%, 형제·자매 간 균등하게 분배함 38.0%,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13.4%, 수발 등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이

받음 4.5% 순으로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방식이 가장 많고 균등분배 방식보다 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층은 형제·자매 간 균등하게 분배함 42.9%, 장남장녀가 많이 받음 42.9%,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7.1%, 기타 7.1%로 균등분배와 장남장녀가 많이 받는 방식이 동률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 유산분배 방식

단위 : 명, %

구분	형제·자매 간					기타	계	χ^2
	거의 균등하게 분배함	가업 등을 이은 자녀가 많이 받음	가업 등을 잇지 않은 자녀가 많이 받음	장남·장녀 가 많이 받음	수발 등 부모를 모신 자녀가 많이 받음			
상층	6(100.0)	0(0.0)	0(0.0)	0(0.0)	0(0.0)	0(0.0)	6(100.0)	23.674**
계층의식 중간층	68(38.0)	24(13.4)	2(1.1)	77(43.0)	8(4.5)	0(0.0)	179(100.0)	
하층	6(42.9)	1(7.1)	0(0.0)	6(42.9)	0(0.0)	1(7.1)	14(100.0)	
계	80(40.2)	25(12.6)	2(1.0)	83(41.7)	8(4.0)	1(0.5)	19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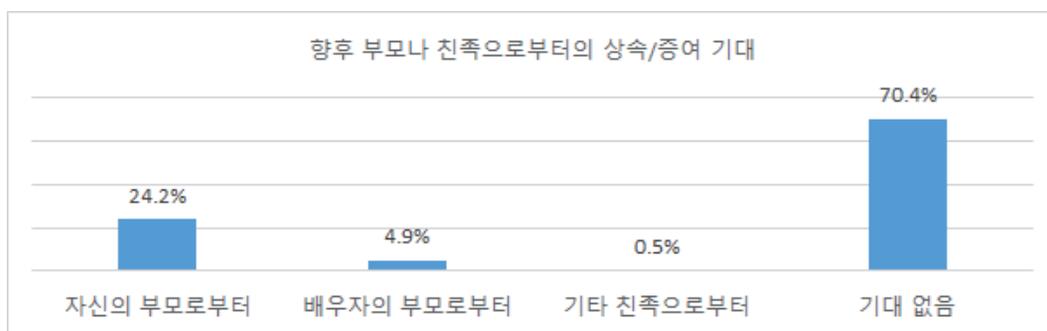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1)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기대는 기대 없음이 70.4%로 가장 높고,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음
-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기대 없음이 70.4%로 대부분 상속 또는 증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다만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 24.2%, 배우자의 부모 4.9%, 기타 친족 0.5% 순으로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3]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도 모두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음. 다만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남성과 전문대졸 이상 더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녀 모두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없음이 가장 많고, 기대하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음
 -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없음이 여성 70.5%, 남성 70.3%로 남녀 모두 기대 없음 비율이 가장 높음
 - 다만,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님 21.2%, 배우자의 부모 8.3%로 나타났고, 남성은 자신의 부모 27.3%, 배우자의 부모 1.4%, 기타 친족 1.0% 순으로 남녀 모두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특히 이러한 기대는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없음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님인 경우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연령대별로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없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대 없음 비율을 비교해 보면, 40대 51.1%, 50대 72.7%, 60대 이상 85.5%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40대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님 44.6%,

배우자의 부모 4.3%, 50대는 자신의 부모님 19.5%, 배우자의 부모 7.0%, 기타 친족 0.8%, 60대는 자신의 부모 10.1%, 배우자의 부모 3.8%, 기타 친족 0.6%로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의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9〉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 성, 연령

단위 : 명, %

구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기타 친족으로부터	없음	계	χ^2
성	여성	46(21.2)	18(8.3)	0(0.0)	153(70.5)	13.864**
	남성	57(27.3)	3(1.4)	2(1.0)	147(70.3)	
	계	103(24.2)	21(4.9)	2(0.5)	300(70.4)	
연령	40대	62(44.6)	6(4.3)	0(0.0)	71(51.1)	53.551***
	50대	25(19.5)	9(7.0)	1(0.8)	93(72.7)	
	60대 이상	16(10.1)	6(3.8)	1(0.6)	136(85.5)	
	계	103(24.2)	21(4.9)	2(0.5)	300(70.4)	

* p < .05, ** p < .01, *** p < .001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의 기대 없음 비율이 더 높고,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음
 - 고졸 이하는 기대 없음 79.0%, 자신의 부모 16.5%, 배우자의 부모 4.0%, 기타 친족 0.4% 순이며, 전문대졸 이상은 기대 없음 58.4%, 자신의 부모 34.8%, 배우자의 부모 6.2%, 기타 친족 0.6% 순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도 모두 기대 없음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 고졸 이하의 기대 없음 비율이 전문대졸 이상 보다 20.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높았는데, 향후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2배가량 더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대 없음 비율이 낮아졌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대 없음 비율이 가장 높음. 기대 없음 비율을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300만원 이하 86.1%, 300만원~500만원 미만 76.0%, 500만원 이상 59.0%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기대 없음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향후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300만원 미만에서는 10.9%, 300만원~500만원 미만 21.6%, 500만원 이상 32.8%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대 없음 비율이 낮아졌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모든 건강상태에서 기대 없음 비율이 가장 높음. 기대 없음 비율을 건강상태별로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음 84.3%, 보통 75.9%, 좋음 65.4%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기대 없음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향후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모든 건강상태에서 자신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건강상태가 좋음은 27.0%, 보통 22.3%, 좋지 않음 13.7%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향후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3-10〉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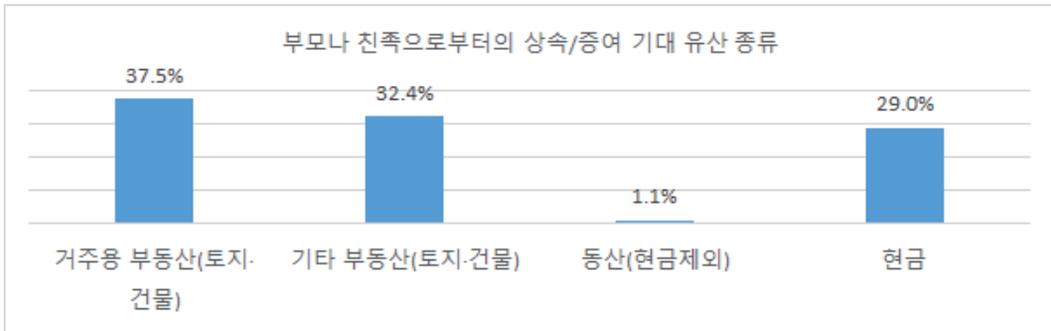
구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기타 친족으로부터	없음	계	χ^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1(16.5)	10(4.0)	1(0.4)	196(79.0)	248(100.0)	21.624***
	전문대졸 이상	62(34.8)	11(6.2)	1(0.6)	104(58.4)	178(100.0)	
	계	103(24.2)	21(4.9)	2(0.5)	300(70.4)	426(10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10.9)	3(3.0)	0(0.0)	87(86.1)	101(100.0)	29.439***
	300만원-500만원 미만	27(21.6)	2(1.6)	1(0.8)	95(76.0)	125(100.0)	
	500만원 이상	65(32.5)	16(8.0)	1(0.5)	118(59.0)	200(100.0)	
	계	103(24.2)	21(4.9)	2(0.5)	300(70.4)	426(100.0)	
건강 상태	좋음	71(27.0)	19(7.2)	1(0.4)	172(65.4)	263(100.0)	14.279*
	보통	25(22.3)	1(0.9)	1(0.9)	85(75.9)	112(100.0)	
	좋지 않음	7(13.7)	1(2.0)	0(0.0)	43(84.3)	51(100.0)	
	계	103(24.2)	21(4.9)	2(0.5)	300(70.4)	426(100.0)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종류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 37.5%, 기타 부동산 32.4%, 현금 29.0%, 현금 제외 동산 1.1%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여성의 기대 유산 종류는 기타 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음. 연령별로 40대와 60대 이상은 거주용 부동산, 50대는 기타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산의 종류로 여성은 기타 부동산 39.5%, 거주용 부동산 30.9%, 현금 29.6% 순으로 기타 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거주용 부동산 43.2%, 현금 28.4%, 기타 부동산 26.3%, 동산 2.1%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40대는 거주용 부동산 43.2%, 현금 30.5%, 기타 부동산 25.3%, 동산 1.1%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고, 50대는 기타 부동산 43.8%, 현금 29.2%, 거주용 부동산 2.0%, 동산 2.1% 순으로 기타 부동산이 가장 많음. 60대 이상은 거주용 부동산 39.4%, 기타 부동산 36.4%, 현금 24.2% 순으로 나타나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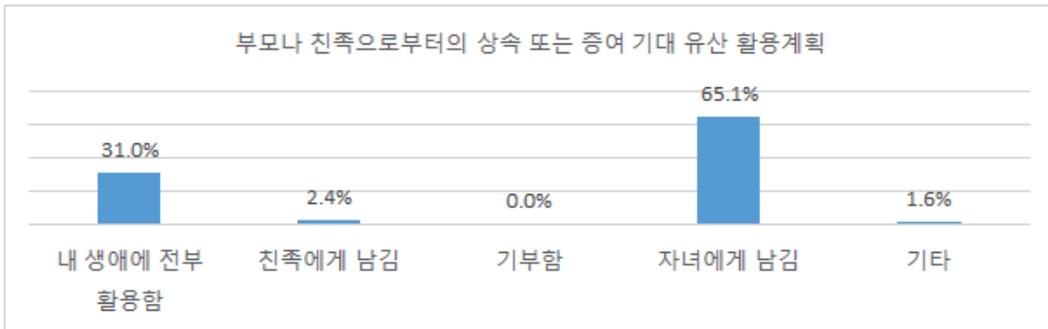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거주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	동산(현금제외)	현금	계	
성별	여성	25(30.9)	32(39.5)	0(0.0)	24(29.6)	81
	남성	41(43.2)	25(26.3)	2(2.1)	27(28.4)	95
	계	66 -	57 -	2 -	51 -	176
연령	40대	41(43.2)	24(25.3)	1(1.1)	29(30.5)	95
	50대	12(25.0)	21(43.8)	1(2.1)	14(29.2)	48
	60대 이상	13(39.4)	12(36.4)	0(0.0)	8(24.2)	33
	계	66 -	57 -	2 -	51 -	176

주 : 다중응답 항목임

3)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산의 활용 계획은 자녀에게 남김이 6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내 생애 전부 활용 31.0%, 친족에게 남김 2.4%, 기타 1.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5]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기대 유산 활용 계획은 성별, 연령별로도 모두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다만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여성은 자녀에게 남김 64.1%, 내 생애 전부 활용함 32.8%, 친족에게 남김 1.6%, 기타 1.6% 순이며, 남성은 자녀에게 남김 66.1%, 내 생애 전부 활용함 29.1%, 친족에게 남김 3.2%, 기타 1.6% 순으로 남녀 모두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두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40대는 61.8%, 50대는 60.0%, 60대 이상은 82.6%로 자녀 상속 의견은 60대 이상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남

<표 3-12> 부모님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친족에게 남김	기부함	자녀에게 남김	기타	계	χ^2
성별	여성	21(32.8)	1(1.6)	0(0.0)	41(64.1)	1(1.6)	.532
	남성	18(29.0)	2(3.2)	0(0.0)	41(66.1)	1(1.6)	
	계	39(31.0)	3(2.4)	0(0.0)	82(65.1)	2(1.6)	
연령	40대	22(32.4)	2(2.9)	0(0.0)	42(61.8)	2(2.9)	5.559
	50대	13(37.1)	1(2.9)	0(0.0)	21(60.0)	0(0.0)	
	60대 이상	4(17.4)	0(0.0)	0(0.0)	19(82.6)	0(0.0)	
	계	39(31.0)	3(2.4)	0(0.0)	82(65.1)	2(1.6)	

* p < .05, ** p < .01, *** p < .001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미혼/기타는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있는 경우는 자녀에게 남김 71.3%,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66.7%, 친족에게 남김 2.8%, 기타 0.9% 순으로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미혼/기타는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66.7%, 자녀에게 남김 27.8%, 기타 5.6% 순으로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3> 부모님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혼인상태, 직업

단위 : 명, %

구 분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친족에게 남김	기부함	자녀에게 남김	기타	계	χ^2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7(25.0)	3(2.8)	0(0.0)	77(71.3)	1(0.9)	15.727**
	미혼/기타	12(66.7)	0(0.0)	0(0.0)	5(27.8)	1(5.6)	
	계	39(31.0)	3(2.4)	0(0.0)	82(65.1)	2(1.6)	
직업	관리직/전문직	3(14.3)	3(14.3)	0(0.0)	14(66.7)	1(4.8)	23.870*
	사무직/판매직	7(26.9)	0(0.0)	0(0.0)	18(69.2)	1(3.8)	
	서비스직	15(40.5)	0(0.0)	0(0.0)	22(59.5)	0(0.0)	
	농림어업직	3(20.0)	0(0.0)	0(0.0)	12(80.0)	0(0.0)	
	기타(조립/단순노무/기타)	11(40.7)	0(0.0)	0(0.0)	16(59.3)	0(0.0)	
계	39(31.0)	3(2.4)	0(0.0)	82(65.1)	2(1.6)	12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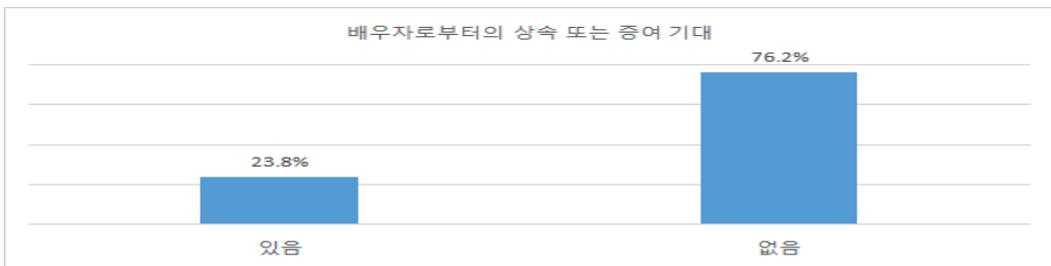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다.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1)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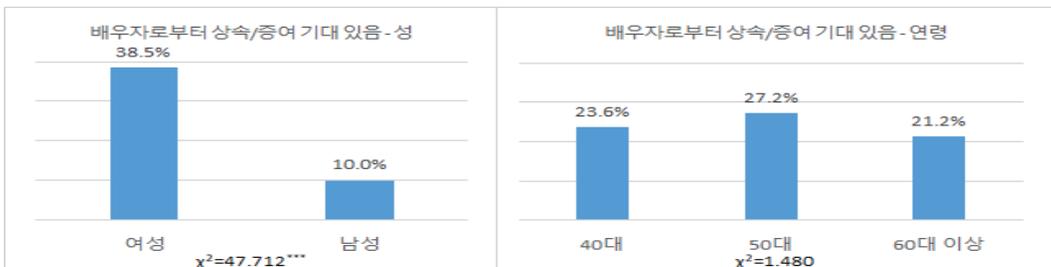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있음 23.8%, 없음 76.2%로 배우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52.4%p 더 낮음

[그림 3-16]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는 경우, 성별로는 여성의 기대가 더 높고, 연령별로는 50대의 기대가 가장 높음. 다만 연령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비율은 여성 38.5%, 남성 10.0%로 여성이 남성보다 28.5%p 더 높음
 - 연령별로는 40대 23.6%, 50대 27.2%, 60대 이상 21.2%로 나타나 50대의 기대 있음 비율이 가장 높음. 다만 이들 집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그림 3-17]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 성,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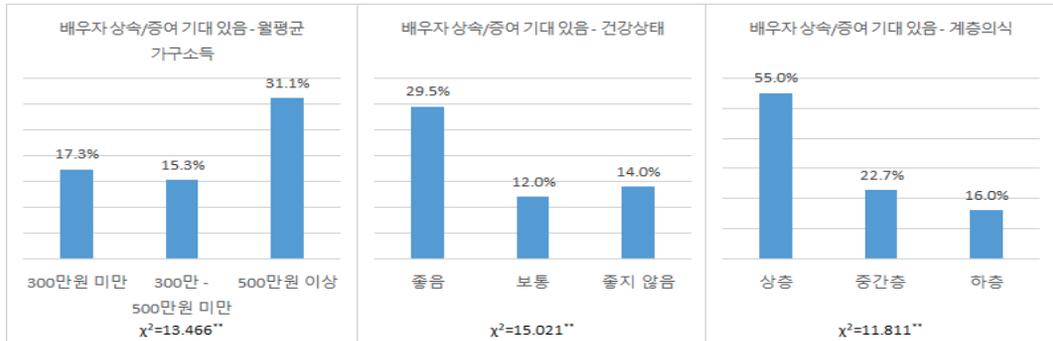


주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기대 있음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비율은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고, 건강상태별로는 좋음, 계층의식별로는 상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17.3%, 300만원~500만원 미만 15.3%, 500만원 이상 31.1%로 500만원 이상의 기대 있음 비율이 가장 높음
 - 건강상태별로는 좋음 29.5%, 보통 12.0%, 좋지 않음 14.0%로 건강상태 좋은의 기대 있음 비율이 가장 높음
 - 계층의식별로는 상층 55.0%, 중간층 22.7%, 하층 16.0% 순으로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기대 있음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그림 3-18]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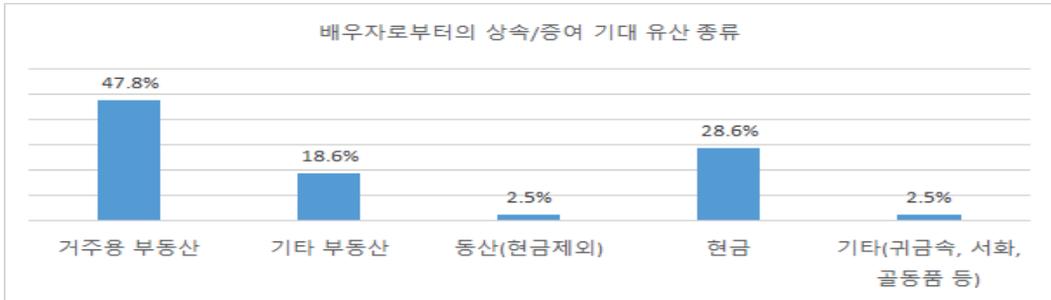
주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 기대 있음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2)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종류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금인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 47.8%, 현금 28.6%, 기타 부동산 18.6%, 현금 제외 동산과 기타가 각각 2.5%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현금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향후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산의 종류로 여성은 거주용 부동산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거주용 부동산, 현금, 기타 부동산이 고른 분포를 보임.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여성은 거주용 부동산 53.2%, 현금 28.2%, 기타 부동산 15.3% 등의 순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거주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 현금이 각각 29.7%로 동률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40대는 거주용 부동산 42.0%, 현금 32.0%, 기타 부동산 20.0% 등의 순이며, 50대는 거주용 부동산 44.6%, 현금 28.6%, 기타 부동산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은 거주용 부동산 56.4%, 현금 25.5%, 기타 부동산 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 기타 부동산 순으로 나타남

<표 3-14>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종류

단위 : 명, %

구분	거주용 부동산 (토지·건물)	기타 부동산 (토지·건물)	동산 (현금제외)	현금	기타(귀금속·서화·골동품 등)	계	
성	여성	66 (53.2)	19 (15.3)	1 (0.8)	35 (28.2)	3 (2.4)	124
	남성	11 (29.7)	11 (29.7)	3 (8.1)	11 (29.7)	1 (2.7)	37
	계	77	30	4	46	4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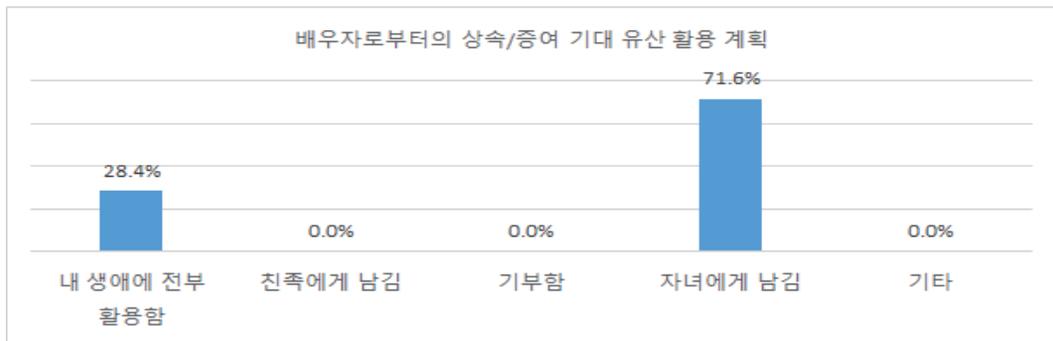
연령	40대	21 (42.0)	10 (20.0)	2 (4.0)	16 (32.0)	1 (2.0)	50
	50대	25 (44.6)	11 (19.6)	2 (3.6)	16 (28.6)	2 (3.6)	56
	60대 이상	31 (56.4)	9 (16.4)	0 (0.0)	14 (25.5)	1 (1.8)	55
	계	77	30	4	46	4	161

주 : 다중응답 항목임

3)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활용 계획은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은 자녀에게 남김 71.6%,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27.4%로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0]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향후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활용 계획은 남녀 모두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특히 남성의 자녀 상속 의견이 여성보다 13.0%p 더 높음.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여성은 자녀에게 남김 68.8%,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31.3%로 나타났고, 남성은 자녀에게 남김 81.8%,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18.2%로 남녀 모두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남성의 자녀 상속 의견이 특히 더 높음
- 연령별로도 모두 자녀에게 남기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 상속 의견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40대는 자녀에게 남김 76.7%,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23.3%, 50대는 자녀에게 남김 70.3%,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29.7%, 60대 이상은 자녀에게 남김 68.6%, 내 생애에 전

부 활용함 68.6%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 상속 의견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신이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3-15〉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친족에게 남김	기부함	자녀에게 남김	기타	계	χ^2	
성별	여성	25(31.3)	-	-	55(68.8)	-	80(100.0)	1.448
	남성	4(18.2)	-	-	18(81.8)	-	22(100.0)	
	계	29(28.4)	-	-	73(71.6)	-	102(100.0)	
연령	40대	7(23.3)	-	-	23(76.7)	-	30(100.0)	.568
	50대	11(29.7)	-	-	26(70.3)	-	37(100.0)	
	60대 이상	11(31.4)	-	-	24(68.6)	-	35(100.0)	
	계	29(28.4)	-	-	73(71.6)	-	102(100.0)	

* p < .05, ** p < .01, *** p < .001

- 향후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유산의 활용 계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자녀 상속 의견이 가장 많음.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자녀 상속 의견이 30.2%p 더 높게 나타남
- 제주시 거주자는 자녀에게 남김 61.2%,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38.8%, 서귀포시 거주자는 자녀에게 남김 91.4%,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8.6%로 두 지역 모두 자녀 상속 의견이 가장 많음.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자녀 상속의견이 30.2%p 더 높음

〈표 3-16〉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 기대 유산 활용 계획 - 거주지

단위 : 명, %

구 분	내 생애에 전부 활용함	친족에게 남김	기부함	자녀에게 남김	기타	계	χ^2
제주시	26(38.8)	-	-	41(61.2)	-	67(100.0)	10.328**
서귀포시	3(8.6)	-	-	32(91.4)	-	35(100.0)	
계	29(28.4)	-	-	73(71.6)	-	102(100.0)	

라. 재산 증여 경험

1) 재산 증여를 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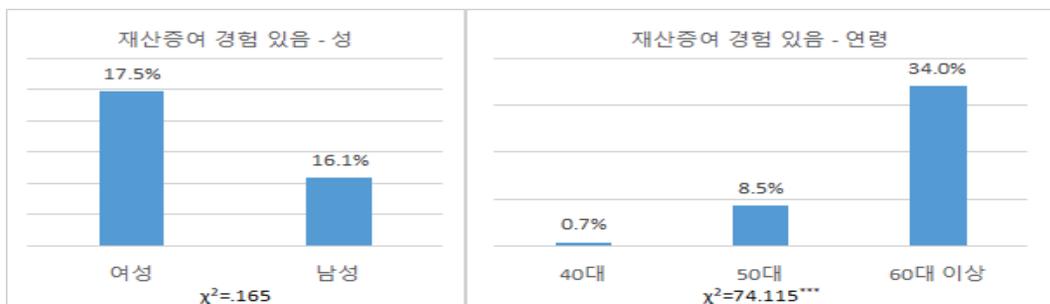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있음 16.8%, 없음 83.2%로 있음 비율이 66.4%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많지 않음

[그림 3-21] 재산 증여를 한 경험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1.4%p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산 증여를 한 경험이 높아짐
 - 재산 증여 경험은 있음 17.5%, 남성 16.1%로 여성의 재산 증여 경험이 남성보다 1.4%p 더 높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로는 40대 0.7%, 50대 8.5%, 60대 이상 34.0%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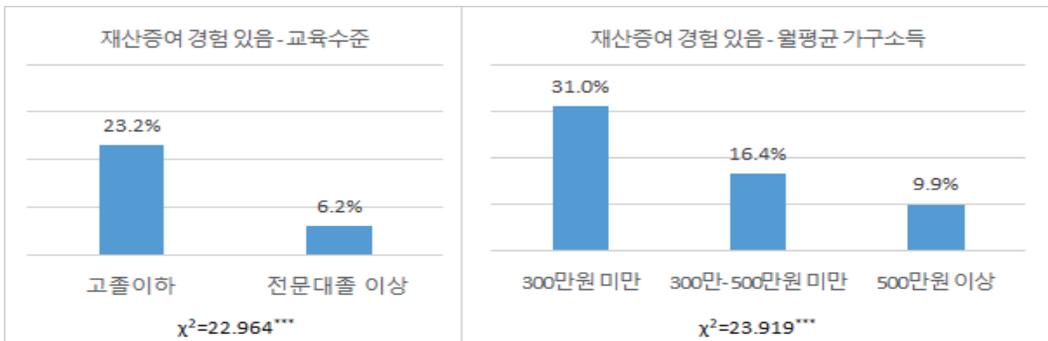
[그림 3-22]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 성, 연령



주 :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23.2%, 전문대졸 이상 6.2%로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 이상보다 17.0%p 더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31.0%, 300만원~500만원 미만 16.4%, 500만원 이상 9.9% 순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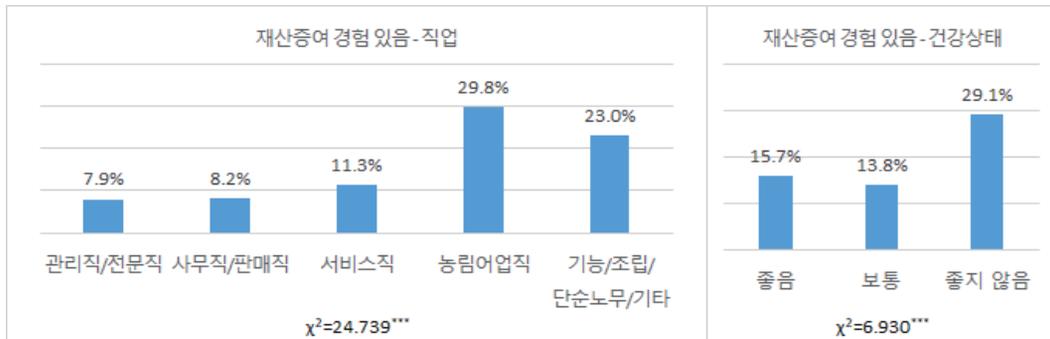
[그림 3-23]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주 :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 직업별로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음 비율은 농림어업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별로는 좋지 않음이 가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농림어업직 29.8%,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23.0%, 서비스직 11.3%, 사무직/판매직 8.2%, 관리직/전문직 7.9% 순으로 농림어업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가 높게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는 좋지 않음 29.1%, 좋음 15.7%, 보통 13.8% 순으로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4]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 직업, 건강상태



주 : 재산 증여를 한 경험 있음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2) 증여한 재산의 종류

○ 증여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현금이 가장 많음

-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현금 63.5%, 부동산 35.7%, 동산 0.8% 순으로 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5] 증여한 재산의 종류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의 종류는 남녀 모두 현금이 가장 많고, 연령별로도 현금이 가장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성별로 증여한 재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여성은 현금 65.7%, 부동산 32.8%, 동산 1.5% 순이며, 남성은 현금 61.0%, 부동산 39.0% 순으로 남녀 모두 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현금 비율이 가장 높음

〈표 3-17〉 증여한 재산의 종류 - 성,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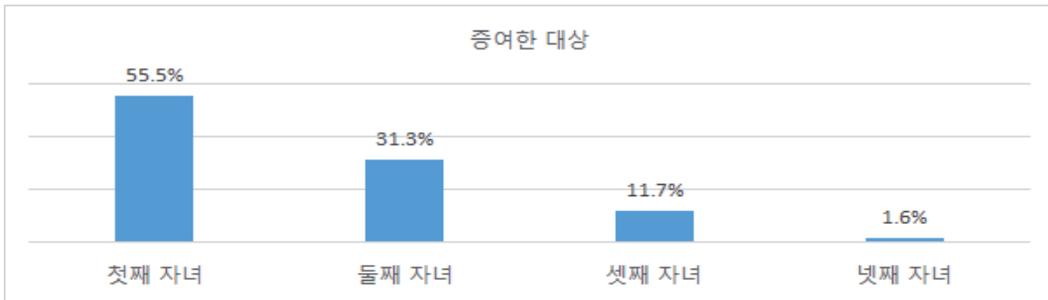
구 분	부동산	동산	현금	계	
성	여성	22(32.8)	1(1.5)	44(65.7)	67
	남성	23(39.0)	0(0.0)	36(61.0)	59
	계	45 -	1 -	80 -	126
연령	40대	0(0.0)	0(0.0)	2(100.0)	2
	50대	3(18.8)	0(0.0)	13(81.3)	16
	60대 이상	42(38.9)	1(0.9)	65(60.2)	108
	계	45 -	1 -	80 -	126

주 : 다중응답 항목임

3) 증여한 대상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증여한 대상은 첫째 자녀 55.5%, 둘째 자녀 31.3%, 셋째 자녀 11.7%, 넷째 자녀 1.6% 순으로 첫째 자녀가 증여의 수증자인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3-26] 증여한 대상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재산을 증여한 대상은 성별 및 연령별 모두 첫째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가 가장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재산을 증여한 대상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첫째 자녀 50.7%, 둘째 자녀 31.9%, 셋째 자녀 14.5%, 넷째 자녀 2.9%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첫째 자녀 61.0%, 둘째 자녀 30.5%, 셋째 자녀 8.5% 순으로 남녀 모두 첫째 자녀가 수증자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 남. 특히 남성은 첫째 자녀가 수증자인 비율인 여성보다 10.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두 첫째 자녀가 수증자인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3-18〉 증여한 대상 - 성,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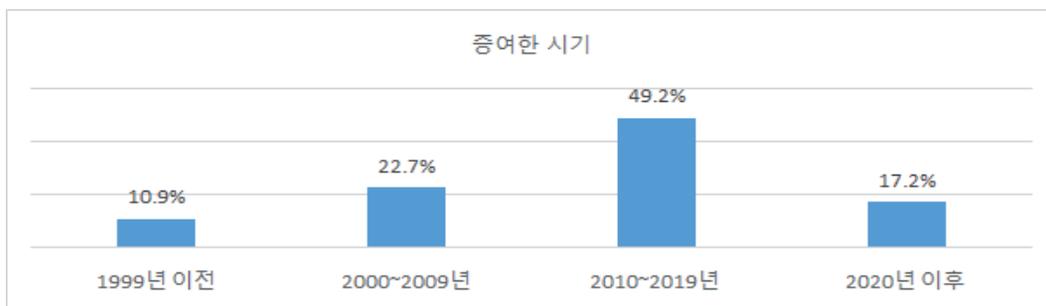
구 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계	
성	여성	35(50.7)	22(31.9)	10(14.5)	2(2.9)	69
	남성	36(61.0)	18(30.5)	5(8.5)	0(0.0)	59
	계	71	40	15	2	128
연령	40대	1(50.0)	1(50.0)	0(0.0)	0(0.0)	2
	50대	9(56.3)	5(31.3)	2(12.5)	0(0.0)	16
	60대 이상	61(55.5)	34(30.9)	13(11.8)	2(1.8)	110
	계	71	40	15	2	12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4) 증여한 시기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증여한 시기는 2010~2019년이 가장 많음
 - 재산을 증여한 시기는 2010~2019년 49.2%, 2000~2009년 22.7%, 2020년 이후 17.2%, 1999년 이전 10.9% 순으로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7] 증여한 시기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재산을 증여한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고, 연령별로도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10~2019년 49.3%, 2000~2009년 21.7%, 2020년 이후 18.8%, 1999년 이전 10.1% 순이며, 남성은 2010~2019년 49.2%, 2000~2009년 23.7%, 2020년 이후 15.3%, 1999년 이전 11.9% 순으로 남녀 모두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모두 2010~2019년 사이가 가장 많음

〈표 3-19〉 증여한 시기 - 성,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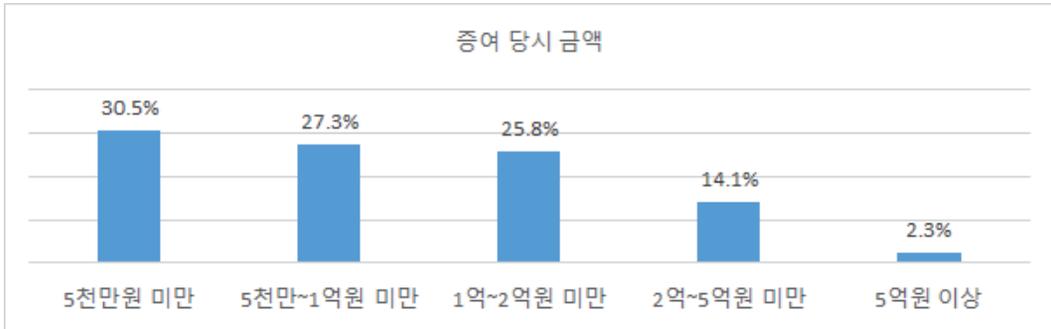
구 분	1999년 이전	2000~2009년	2010~2019년	2020년 이후	계	
성	여성	7(10.1)	15(21.7)	34(49.3)	13(18.8)	69
	남성	7(11.9)	14(23.7)	29(49.2)	9(15.3)	59
	계	14 -	29 -	63 -	22 -	128
연령	40대	0(0.0)	0(0.0)	2(100.0)	0(0.0)	2
	50대	1(6.3)	0(0.0)	8(50.0)	7(43.8)	16
	60대 이상	13(11.8)	29(26.4)	53(48.2)	15(13.6)	110
	계	14 -	29 -	63 -	22 -	12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5) 증여 당시 금액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 금액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1억 미만이 57.8%를 차지함
- 증여 당시 금액은 5천만원 미만 30.5%, 5천만원~1억원 미만 27.35, 1억~2억원 미만 28.5%, 2억~5억원 미만 14.1%, 5억원 이상 2.3% 순으로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전체적으로 1억원 미만이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5억원 이상 고액 증여는 2.3%에 그침

[그림 3-28] 증여 당시 금액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성별로 여성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가장 많음. 연령별로는 40대는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50대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이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은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으나 1억~2억원 미만도 근소한 차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는 다중응답 결과로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20> 증여 당시 금액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계	
성	여성	27(39.1)	11(15.9)	21(30.4)	9(13.0)	1(1.4)	69
	남성	12(20.3)	24(40.7)	12(20.3)	9(15.3)	2(3.4)	59
	계	39 -	35 -	33 -	18 -	3 -	128
연령	40대	2(100.0)	0(0.0)	0(0.0)	0(0.0)	0(0.0)	2
	50대	4(25.0)	9(56.3)	1(6.3)	2(12.5)	0(0.0)	16
	60대 이상	33(30.0)	26(23.6)	32(29.1)	16(14.5)	3(2.7)	110
	계	39 -	35 -	33 -	18 -	3 -	128

주 : 다중응답 항목임

마.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의사

1) 향후 상속 또는 증여 여부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예 74.9%, 아니오 25.1%로 향후 자녀에게 상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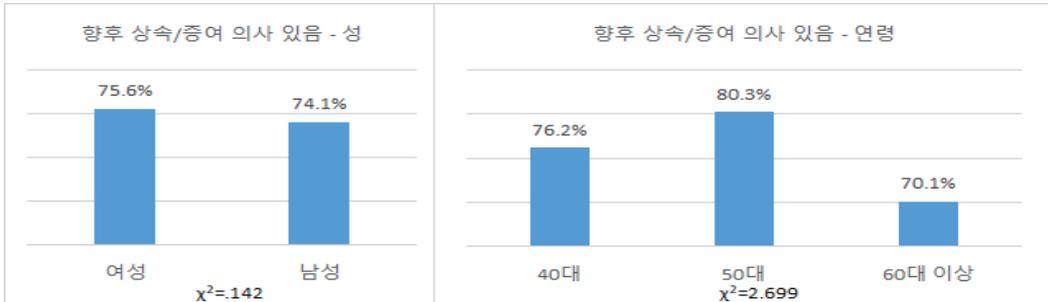
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49.8%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9] 향후 상속/증여 여부



- 앞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은 남성이 더 높았지만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 의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40대와 50대에서도 80% 이상으로 높는데 비해 증여를 한 경험은 60대 이상도 30%대에 머물렀고,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거 세대에 비해 상속 또는 증여를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과거에 비해 길어진 노년으로 인한 노후 자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 의사 있음은 여성이 조금 더 높고 연령별로는 50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과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 의사 있음은 여성 75.6%, 남성 74.1%로 여성이 1.5%p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76.2%, 50대 80.3%, 60대 이상 70.1%로 50대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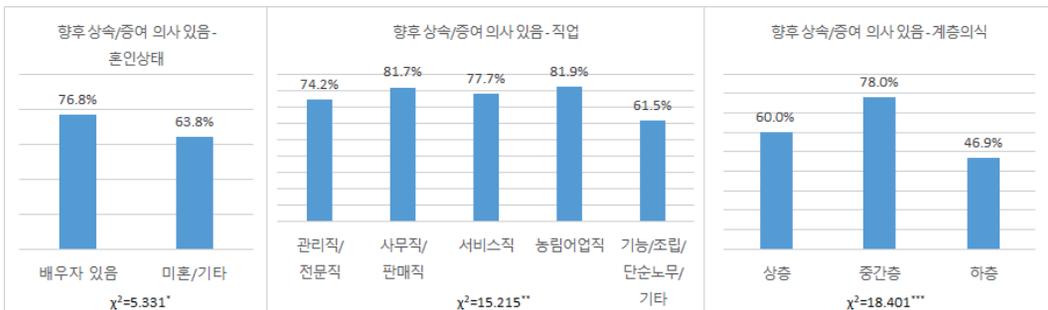
[그림 3-30] 향후 상속/증여 의사 있음 - 성, 연령



주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길 의사 있음(예)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 계층의식별로는 중간층이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 76.8%, 미혼/기타 63.8%로 배우자 있음이 1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 81.9%, 사무직/판매직 81.7%, 서비스직 77.7%, 관리직/전문직 74.2%,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61.5% 순으로 농림어업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는 중간층 78.0%, 상층 60.0%, 하층 46.9% 순으로 중간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1] 향후 상속/증여 의사 있음 - 혼인상태, 직업,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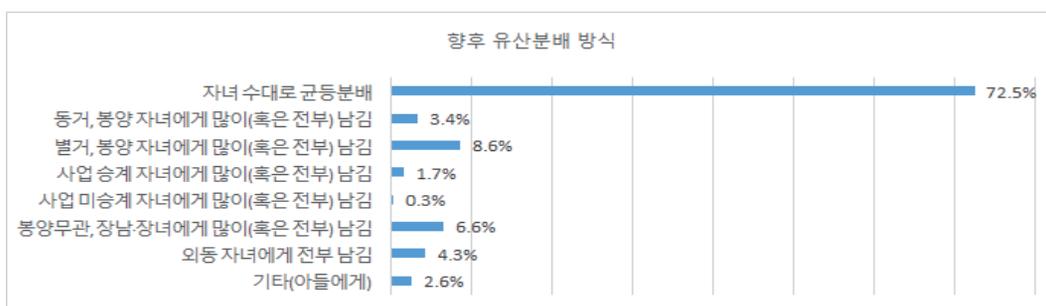


주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길 의사 있음(예) 응답만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2) 향후 유산 분배 방식

- 향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유산 분배 방식은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자녀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72.5%, 별거하더라도 봉양해준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8.6%,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6.6%,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김 4.3%, 동거하여 봉양해준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3.4% 등의 순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림 3-32] 향후 유산 분배 방식



- 향후 유산 분배 방식은 남녀 모두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여성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72.1%,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8.7%, 자신을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5.5% 등의 순이며, 남성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72.9%,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8.4%, 자신을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7.8% 등 순으로 남녀 모두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이 가장 높음
- 연령별로도 모두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한편으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유산 분배 방식에 있어서 자녀의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의 조건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대는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77.8%, 별거 봉양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8.1%,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김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50대는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80.7%,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김 5.3%, 동거 봉양 자녀에게,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사업 승계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은 모두 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61.8%, 별거하더라도 봉양해준 자녀에게,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이 각각 13.2%, 기타(아들에게) 4.4% 등의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은 50대가 특히 더 높았으며, 60대 이상보다 50대 이하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은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기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유산 분배 방식에 있어서 자녀의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의 조건을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한편으로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기는 방식이 높은 이유는 다자녀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표 3-21〉 향후 유산 분배 방식

구분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동거 봉양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별거 봉양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사업 승계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사업 미승계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봉양무관 장남·장 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외동 자녀에게 전부 남김	기타(아 들에게)	계	χ^2	
성	여성	132(72.1)	7(3.8)	16(8.7)	5(2.7)	1(0.5)	10(5.5)	8(4.4)	4(2.2)	183(100.0)	4.363
	남성	121(72.9)	5(3.0)	14(8.4)	1(0.6)	0(0.0)	13(7.8)	7(4.2)	5(3.0)	166(100.0)	
	계	253(72.5)	12(3.4)	30(8.6)	6(1.7)	1(0.3)	23(6.6)	15(4.3)	9(2.6)	349(100.0)	
연령	40대	77(77.8)	3(3.0)	8(8.1)	0(0.0)	0(0.0)	3(3.0)	6(6.1)	2(2.0)	99(100.0)	37.057**
	50대	92(80.7)	4(3.5)	4(3.5)	4(3.5)	1(0.9)	2(1.8)	6(5.3)	1(0.9)	114(100.0)	
	60대 이상	84(61.8)	5(3.7)	18(13.2)	2(1.5)	0(0.0)	18(13.2)	3(2.2)	6(4.4)	136(100.0)	
	계	253(72.5)	12(3.4)	30(8.6)	6(1.7)	1(0.3)	23(6.6)	15(4.3)	9(2.6)	349(100.0)	

* p < .05, ** p < .01, *** p < .001

○ 혼인상태별로도 모두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특히 더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혼/기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유산 분배 방식에 있어 자녀의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 조건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75.1%,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7.9%,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5.9%

등의 순이며, 미혼/기타는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54.5%,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13.6%, 외동자녀에게 전부 남김 13.6%,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혼인상태별로도 모두 균등분배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균등분배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은 소득구간별로 300만원 미만 54.5%, 300만원~500만원 미만 73.0%, 500만원 이상 80.2% 순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300만원 미만은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별거하더라도 봉양을 해준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15.6%,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13.0%로 나타나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자녀의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의 조건을 조금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좋을수록 자녀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모든 건강상태에서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높지만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의 부모 봉양과 장남장녀 조건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짐
 - 건강상태 좋음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79.6%,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4.9%,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4.9% 등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 보통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65.9%,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12.2%,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건강상태 나쁨은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47.6%,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21.4%,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건강상태에서 자녀수대로 균등분배 방식이 가장 높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별거하더라도 봉양하는 자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과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 혹은 전부 남김은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 향후 유산 분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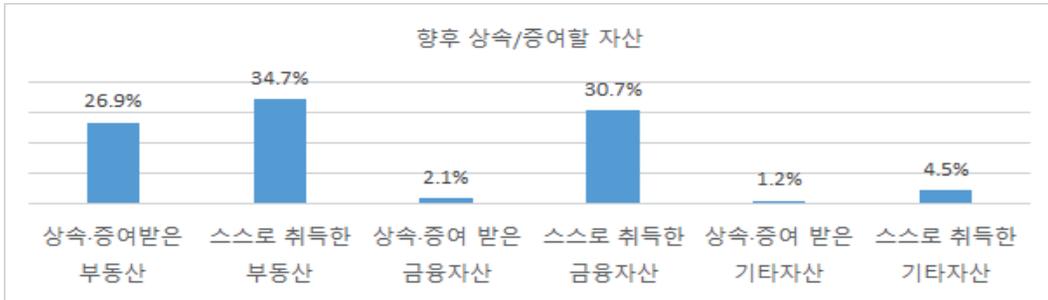
구분	자녀수 대로 균등분배	동거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봉양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별거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사업 승계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사업 미승계 자녀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봉양무관 장남·장녀 에게 많이(혹 은 전부) 남김	외동 자녀에 게 전부 남김	기타(아 들에게)	계	χ^2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229 (75.1)	10 (3.3)	24 (7.9)	6 (2.0)	1 (0.3)	18 (5.9)	9 (3.0)	8 (2.6)	305 (100.0)	16.889*
	미혼/기타	24 (54.5)	2 (4.5)	6 (13.6)	0 (0.0)	0 (0.0)	5 (11.4)	6 (13.6)	1 (2.3)	44 (100.0)	
	계	253 (72.5)	12 (3.4)	30 (8.6)	6 (1.7)	1 (0.3)	23 (6.6)	15 (4.3)	9 (2.6)	349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2 (54.5)	4 (5.2)	12 (15.6)	1 (1.3)	0 (0.0)	10 (13.0)	4 (5.2)	4 (5.2)	77 (100.0)	37.609**
	300만원-500만원 미만	73 (73.0)	1 (1.0)	6 (6.0)	1 (1.0)	0 (0.0)	9 (9.0)	9 (9.0)	1 (1.0)	100 (100.0)	
	500만원 이상	138 (80.2)	7 (4.1)	12 (7.0)	4 (2.3)	1 (0.6)	4 (2.3)	2 (1.2)	4 (2.3)	172 (100.0)	
	계	253 (72.5)	12 (3.4)	30 (8.6)	6 (1.7)	1 (0.3)	23 (6.6)	15 (4.3)	9 (2.6)	349 (100.0)	
건강 상태	좋음	179 (79.6)	7 (3.1)	11 (4.9)	4 (1.8)	1 (0.4)	11 (4.9)	7 (3.1)	5 (2.2)	225 (100.0)	29.927*
	보통	54 (65.9)	2 (2.4)	10 (12.2)	1 (1.2)	0 (0.0)	7 (8.5)	6 (7.3)	2 (2.4)	82 (100.0)	
	좋지 않음	20 (47.6)	3 (7.1)	9 (21.4)	1 (2.4)	0 (0.0)	5 (11.9)	2 (4.8)	2 (4.8)	42 (100.0)	
	계	253 (72.5)	12 (3.4)	30 (8.6)	6 (1.7)	1 (0.3)	23 (6.6)	15 (4.3)	9 (2.6)	349 (100.0)	

* p < .05, ** p < .01, *** p < .001

3)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할 자산 유형

-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의 유형은 상속증여 받은 자산보다는 스스로 취득한 자산이 더 많으며 그 중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음
- 향후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4.7%,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30.7%,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26.9%, 스스로 취득한 기타자산 4.5%, 상속증여 받은 금융자산 2.1%, 상속증여 받은 기타 자산 1.2% 순으로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자산은 총 69.9%로 나타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산보다는 스스로 취득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더 높음

[그림 3-33] 향후 상속/증여할 자산 유형



주 : 다중응답 항목임

- 여성이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는 다중응답 항목으로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여성은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33.7%,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3.1%,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25.7% 등의 순으로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고, 남성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6.3%,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28.5%,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27.6% 등의 순으로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의 유형은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음. 다만 이는 다중응답 항목으로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 40대는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33.7%,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30.7%,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26.1% 등의 순으로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음. 50대와 60대 이상은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각각 33.2%, 39.1%,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이 각각 30.4%, 28.7%,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이 각각 28.5%, 26.1% 등의 순으로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향후 상속/증여할 자산 유형 - 성,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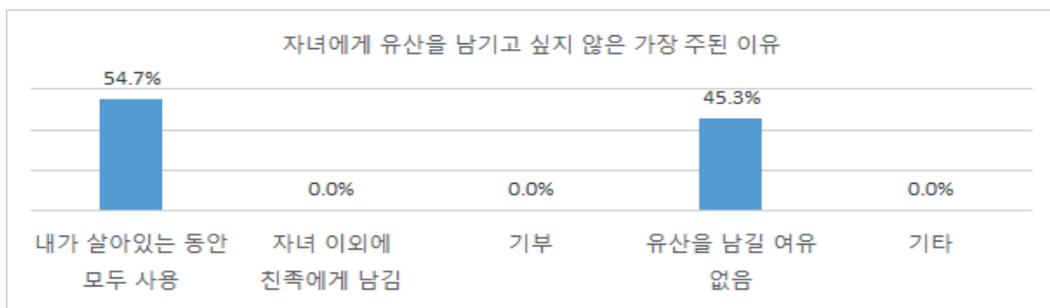
구 분		상속·증여받	스스로	상속·증여	스스로	상속·증여	스스로	계
		은 부동산	취득한 부동산	받은 금융자산	취득한 금융자산	받은 기타자산	취득한 기타자산	
성	여성	86(25.2)	113(33.1)	8(2.3)	115(33.7)	3(0.9)	16(4.7)	341
	남성	95(28.5)	121(36.3)	6(1.8)	92(27.6)	5(1.5)	14(4.2)	333
	계	181	234	14	207	8	30	674
연령	40대	52(26.1)	61(30.7)	7(3.5)	67(33.7)	3(1.5)	9(4.5)	199
	50대	61(28.5)	71(33.2)	2(0.9)	65(30.4)	3(1.4)	12(5.6)	214
	60대 이상	68(26.1)	102(39.1)	5(1.9)	75(28.7)	2(0.8)	9(3.4)	261
	계	181	234	14	207	8	30	674

주 : 다중응답 항목임

4)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

-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의사가 없는 경우,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 싶기 때문으로 나타남
-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 54.7%,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 45.3%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생전 자기 소진의지는 유산을 남길 여유 없기 때문보다 9.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남녀 모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 싶다는 생전 자기 소진의지가 가장 높음 연령별로도 모두 생전 자기 소진이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여성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 50.8%,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 49.2%, 남성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 58.6%,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 41.4%로 남녀 모두 생전 자기 소진의지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이 각각 67.7%, 53.6%,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이 각각 32.3%, 46.4% 순인 반면 60대 이상은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 51.7%,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 48.3% 순으로 40대와 50대는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이 가장 높고, 60대는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전 자기 소진의지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 성, 연령

단위 : 명, %

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	자녀 이외에 친족에게 남김	기부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	기타	계	χ^2	
성	여성	30(50.8)	-	-	29(49.2)	-	59(100.0)	.713
	남성	34(58.6)	-	-	24(41.4)	-	58(100.0)	
	계	64(54.7)	-	-	53(45.3)	-	117(100.0)	
연령	40대	21(67.7)	-	-	10(32.3)	-	31(100.0)	3.108
	50대	15(53.6)	-	-	13(46.4)	-	28(100.0)	
	60대 이상	28(48.3)	-	-	30(51.7)	-	58(100.0)	
	계	64(54.7)	-	-	53(45.3)	-	117(100.0)	

* p < .05, ** p < .01, *** p < .001

-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로 제주시 거주자는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이 가장 많고, 서귀포시 거주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이 가장 많음. 특히 생전 자기 소진 의지는 서귀포시 거주자가 38.5%p 더 높아 제주시 거주자보다 2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 이상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이 가장 많음. 생전 자기 소진의지는 전문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25.3%p 더 높음
- 계층의식별로는 상층과 중간층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이 가장 많고 하층은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이 가장 많음. 생전 자기 소진의지는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 거주지, 교육수준,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 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	자녀 이외에 친족에게 남김	기부	유산을 남길 여유 없음	기타	계	χ^2
거주지	제주시	39(44.8)	-	-	48(55.2)	-	87(100.0)
	서귀포시	25(83.3)	-	-	5(16.7)	-	30(100.0)
	계	64(54.7)	-	-	53(45.3)	-	117(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8(46.9)	-	-	43(53.1)	-	81(100.0)
	전문대졸 이상	26(72.2)	-	-	10(27.8)	-	36(100.0)
	계	64(54.7)	-	-	53(45.3)	-	117(100.0)
계층 의식	상층	8(80.0)	-	-	2(20.0)	-	10(100.0)
	중간층	51(56.7)	-	-	39(43.3)	-	90(100.0)
	하층	5(29.4)	-	-	12(70.6)	-	17(100.0)
계	64(54.7)	-	-	53(45.3)	-	117(100.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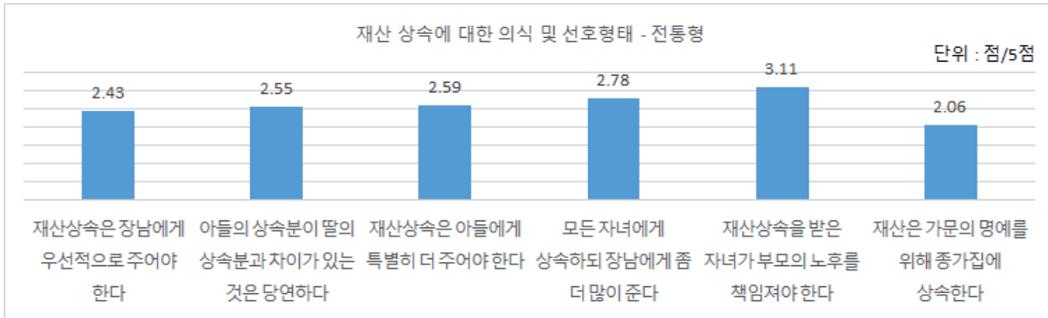
3.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실태

가.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

1) 전통형

- 전통적인 가족가치관 및 상속제도의 변화와 함께 남녀 구분상속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확대되고 상속과 부양의 연결고리 또한 약화되었지만 다른 전통형 상속 인식에 비해 재산 상속을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 상속 인식은 5점 만점 중 재산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3.11점, 모든 자녀에게 상속하되 장남에게 좀 더 많이 준다 2.78점,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야 한다 2.59점, 아들의 상속분이 딸의 상속분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55점, 재산 상속은 장남에게 우선으로 주어야 한다 2.43점, 재산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종갓집에 상속한다 2.06점 순으로 재산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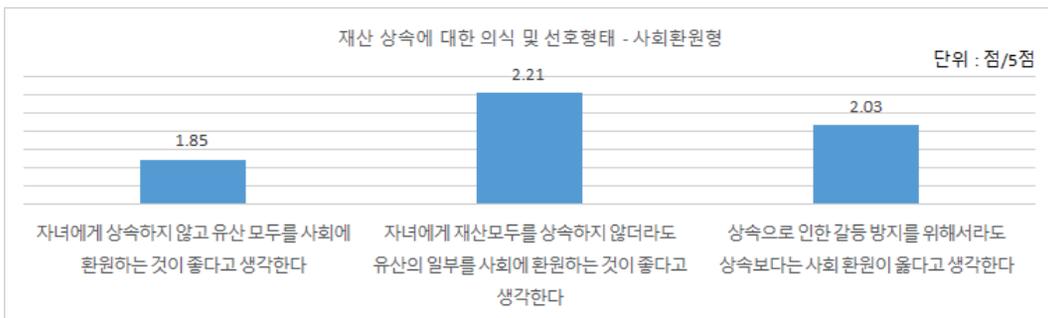
[그림 3-35]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전통형



2) 사회환원형

- 사회환원형 상속 인식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유형으로 그 중 유산의 일부 사회환원이 비교적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를 가진 이들이 많아 사회환원 동기를 약화하고 있기 때문임
- 사회환원형 상속 인식은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21점, 상속 갈등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속보다는 사회환원이 옳다고 생각한다 2.03점, 유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85점 순으로 모든 낮은 선호도를 보인 가운데 유산의 일부 환원은 조금 덜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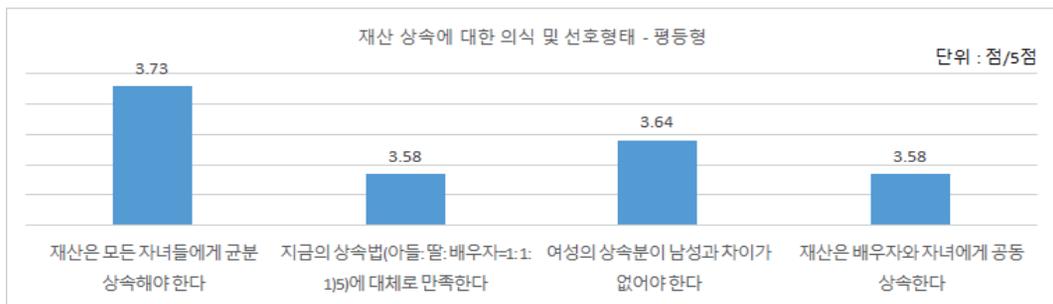
[그림 3-36]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사회환원형



3) 평등형

- 평등형 상속 인식은 모든 자녀 균분상속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성평등 인식 확산에 따른 상속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평등형 상속 인식은 항목별로 재산은 모든 자녀에게 균분 상속해야 한다 3.73점, 여성의 상속분이 남성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3.64점, 지금의 상속법(아들:딸:배우자=1:1:1.5)에 대체로 만족한다 3.58점,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 3.58점 순으로 모든 자녀 균분상속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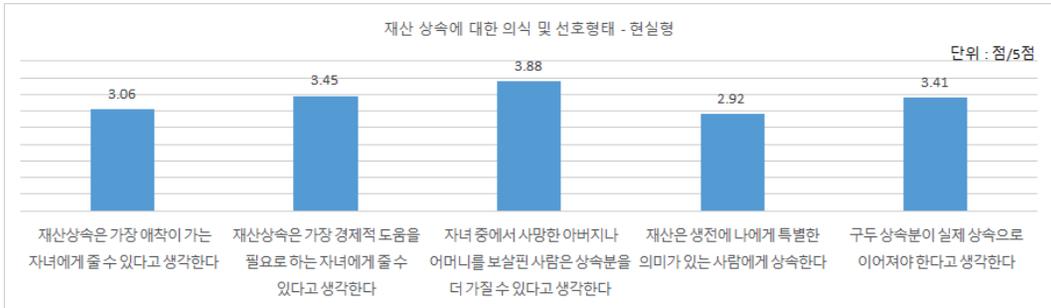
[그림 3-37]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평등형



4) 현실형

- 현실형 상속 인식은 부모를 봉양한 사람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 경제적 도움의 필요, 구두 상속, 애착 정도 등의 조건보다 부모의 봉양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 현실형 상속 인식은 항목별로 자녀 중에서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살핀 사람은 상속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88점, 재산 상속은 가장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5점, 구두 상속분이 실제 상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41점, 재산 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6점,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하다 2.92점 순으로 부모를 봉양한 사람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질 수 있다는 항목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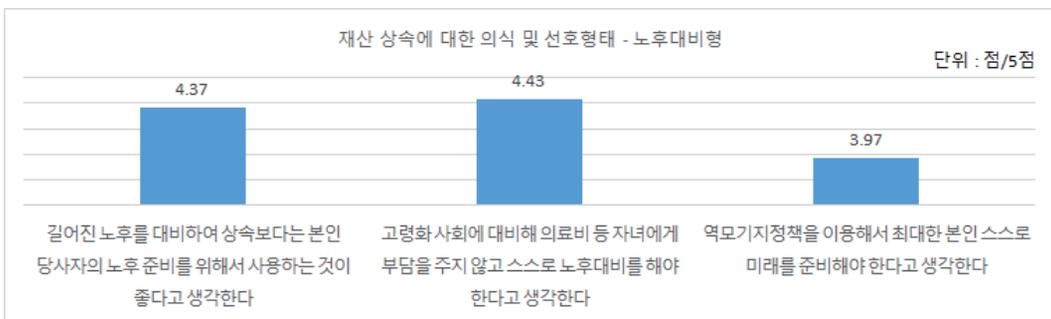
[그림 3-38]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현실형



5) 노후대비형

- 노후대비형은 5개 상속 인식 유형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음. 특히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과 상속보다는 노후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고령화 사회로의 변모와 길어진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고 있음
- 노후대비형은 항목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3점, 상속보다는 본인 당사자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37점, 역모기지정책을 이용해서 최대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97점 순으로 모든 항목의 선호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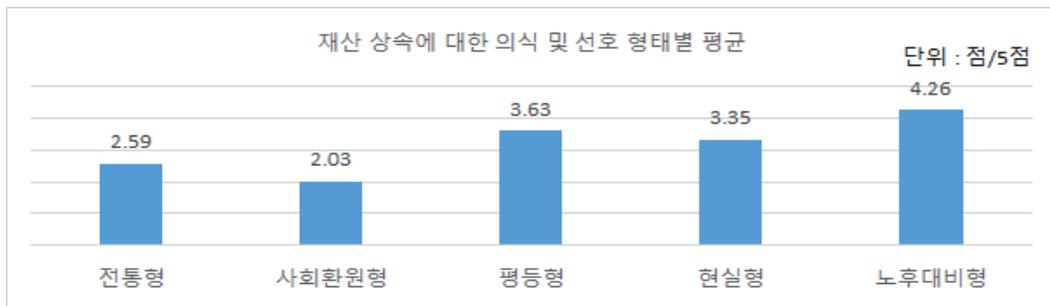
[그림 3-39]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노후대비형



나.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유형별 비교

- 재산 상속 인식은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사회환원형이 가장 낮음. 다른 유형에 비해 노후대비형과 평등형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길어진 노년으로 인한 노후대비의 필요성과 성평등 인식의 확산에 따른 균분상속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재산 상속 인식은 노후대비형 4.26점, 평등형 3.63점, 현실형 3.35점, 전통형 2.59점, 사회환원형 2.03점으로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사회환원형이 가장 낮음

[그림 3-40]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유형별 비교



1) 전통형

- 전통형 상속 인식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유형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60대 미만보다는 60대 이상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 상속 인식은 여성 2.46점, 남성 2.68점으로 남성이 0.18점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2.46점, 50대 2.34점, 60대 이상 2.86점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음

<표 3-26>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전통형 - 성, 연령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2.59	.833	-	
성	여성	263	2.50	.830	-2.354*
	남성	257	2.68	.829	
연령	40대	154	2.46	.771	21.422***
	50대	154	2.34	.762	
	60대 이상	212	2.86	.851	

* p < .05, ** p < .01, *** p < .001

- 전통형 상속 인식은 고졸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농림어업직, 건강상태 좋지 않음, 중간계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 2.88점, 300만원~500만원 미만 2.55점, 500만원 이상 2.45점 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음.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직 2.97점,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2.70점, 관리직/전문직 2.57점 등의 순으로 농림어업직이 가장 높음
 - 건강상태별로는 좋지 않음 2.88점, 좋음과 보통은 각각 2.55점으로 좋지 않음이 가장 높고, 계층의식별로는 중간층 2.67점, 하층 2.39점, 상층 1.61점 순으로 중간층이 가장 높음

〈표 3-27〉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전통형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2.59	.833	-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5	2.69	.843	3.507***
	전문대졸 이상	195	2.42	.792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31	2.88	.821	11.933***
	300만원-500만원 미만	158	2.55	.833	
	500만원 이상	231	2.45	.802	
직업	관리직/전문직	68	2.57	.794	10.604***
	사무직/판매직	75	2.32	.736	
	서비스직	153	2.39	.755	
	농림어업직	98	2.97	.841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26	2.70	.874	
건강상태	좋음	332	2.55	.835	4.500*
	보통	126	2.55	.829	
	좋지 않음	62	2.88	.783	
계층의식	상층	28	1.61	.690	24.269***
	중간층	452	2.67	.813	
	하층	40	2.39	.694	

* p < .05, ** p < .01, *** p < .001

2) 사회환원형

- 사회환원형 상속 인식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고, 연령별로는 50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사회환원형 상속 인식은 여성 2.03점, 남성 2.04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 연령별로는

50대 2.11점, 40대 2.05점, 60대 이상 1.95점 순으로 50대가 가장 높음

〈표 3-28〉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사회환원형 - 성, 연령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2.03	.823	-
성	여성	263	2.03	.813	-0.134
	남성	257	2.04	.834	
연령	40대	154	2.05	.801	1.860
	50대	154	2.11	.810	
	60대 이상	212	1.95	.844	

* p < .05, ** p < .01, *** p < .001

- 사회환원형 상속 인식은 제주도 거주자, 관리직/전문직, 사회계층 하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제주도 2.11점, 서귀포시 1.86점으로 제주도가 0.25점이 더 높음
 - 직업별로는 관리직/전문직 2.23점, 농림어업직 2.16점, 서비스직 2.04점,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93점, 사무직/판매직 1.83점 순으로 관리직/전문직이 가장 높고 사무직/판매직이 가장 낮음
 - 계층별로는 하층 2.25점, 중간층 2.05점, 상층 1.33점 순으로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져 하층이 가장 높음

〈표 3-29〉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사회환원형 - 거주지, 직업, 계층의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2.03	.823	-
거주지	제주도	358	2.11	.888	3.731***
	서귀포시	162	1.86	.623	
직업	관리직/전문직	68	2.23	.825	3.151*
	사무직/판매직	75	1.83	.826	
	서비스직	153	2.04	.844	
	농림어업직	98	2.16	.694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26	1.93	.856	
계층의식	상층	28	1.33	.642	12.163***
	중간층	452	2.05	.800	
	하층	40	2.25	.954	

* p < .05, ** p < .01, *** p < .001

3) 평등형

- 평등형 상속 인식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고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40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등형 상속 인식은 여성 3.66점, 남성 3.60점으로 여성이 0.06점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3.75점, 60대 이상 3.47점으로 60대 이상보다 50대 이하의 선호도가 더 높음

〈표 3-30〉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평등형 - 성, 연령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3.63	.750	-
성	여성	263	3.66	.743	.917
	남성	257	3.60	.758	
연령	40대	154	3.75	.699	9.097***
	50대	154	3.75	.692	
	60대 이상	212	3.47	.797	

* p < .05, ** p < .01, *** p < .001

- 평등형 상속 인식은 서귀포시 거주자,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 계층의식 상층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3.53점, 서귀포시 3.87점으로 서귀포시 거주자가 0.34점 더 높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500만원 미만 3.76점, 500만원 이상 3.67점, 300만원 미만 3.43점 순으로 300만원~5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계층의식별로는 상층 4.30점, 하층 3.68점, 중간층 3.59점 순으로 상층이 가장 높음

〈표 3-31〉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평등형 - 거주지, 월평균 가구소득, 계층의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3.63	.750	-
거주지	제주시	358	3.53	.678	-4.604***
	서귀포시	162	3.87	.844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31	3.43	.776	7.614**
	300만원-500만원 미만	158	3.76	.783	
	500만원 이상	231	3.67	.688	

	상층	28	4.30	.883	
계층의식	중간층	452	3.59	.723	12.544***
	하층	40	3.68	.747	

* p < .05, ** p < .01, *** p < .001

4) 현실형

- 현실형 상속 인식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고, 연령별로는 40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성별로 여성 3.33점, 남성 3.36점으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남성이 0.03점 더 높음. 연령별로는 40대 3.40점, 50대와 60대 이상은 3.32점으로 40대가 가장 높음

〈표 3-32〉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현실형 - 성, 연령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3.35	.589	-
성	여성	263	3.33	.562	-4.22
	남성	257	3.36	.616	
연령	40대	154	3.40	.637	.811
	50대	154	3.32	.562	
	60대 이상	212	3.32	.573	

* p < .05, ** p < .01, *** p < .001

- 현실형 상속 인식은 서귀포시 거주자, 미혼/기타, 고졸 이하, 계층의식 상층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3.27점, 서귀포시 3.51점으로 서귀포시가 0.24점 더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 있음 3.30점, 미혼/기타 3.51점으로 미혼/기타가 0.21점 더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3.39점, 전문대졸 이상 3.28점으로 고졸 이하가 0.11점 더 높고, 계층의식별로는 상층 3.79점, 하층 3.35점, 중간층 3.32점 순으로 상층이 가장 높음

〈표 3-33〉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현실형 - 거주지, 혼인상태, 교육수준, 계층의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3.35	.589	-
거주지	제주시	358	3.27	.554	-4.149***
	서귀포시	162	3.51	.631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414	3.30	.583	-3.319**
	미혼/기타	106	3.51	.587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5	3.39	.557	1.993*
	전문대졸 이상	195	3.28	.635	
계층의식	상층	28	3.79	.759	8.839***
	중간층	452	3.32	.570	
	하층	40	3.35	.560	

* p < .05, ** p < .01, *** p < .001

5) 노후대비형

- 노후대비형 상속 인식은 여성 4.26점, 남성 4.21점으로 여성이 더 선호하지만 이들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로는 40대 4.33점, 50대 4.31점, 60대 이상 4.16점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높음

〈표 3-34〉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노후대비형 - 성, 연령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4.26	.623	-
성	여성	263	4.30	.583	1.725
	남성	257	4.21	.660	
연령	40대	154	4.33	.599	4.215*
	50대	154	4.31	.622	
	60대 이상	212	4.16	.632	

* p < .05, ** p < .01, *** p < .001

- 노후대비형 상속 인식은 제주시 거주자, 전문대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건강상태 좋음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제주시 4.29점, 서귀포시 4.17점으로 제주시 거주자가 0.18점 더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이하 4.16점, 전문대졸 이상 4.42점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0.26점 더 높아 제주시 거주자와 전문대졸 이상이 노후대비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4.36점, 300만원~500만원 미만 4.21점, 300만원 미만 4.12점 순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고, 건강상태별로는 좋음 4.33점, 보통 4.17점, 좋지 않음 4.03점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음

〈표 3-35〉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노후대비형 - 거주지,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전체		520	4.26	.623	-
거주지	제주시	358	4.29	.636	2.143*
	서귀포시	162	4.17	.589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5	4.16	.625	-4.784***
	전문대졸 이상	195	4.42	.58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31	4.12	.623	6.710**
	300만원-500만원 미만	158	4.21	.597	
	500만원 이상	231	4.36	.626	
건강상태	좋음	332	4.33	.598	7.557**
	보통	126	4.17	.636	
	좋지 않음	62	4.03	.666	

* p < .05, ** p < .01, *** p < .001

다.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에 관한 요인 분석

- 재산 상속 선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3-36>과 같음
 - 표본적합도 측정치인 Kaiser-Meyer-Olkin(KMO)값이 .810으로 적합한 수준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000으로 .05보다 작아 자료의 상관이 5요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1요인은 21개 문항 가운데 6개의 측정변인들이 묶이는 것으로 전통형에 해당하고, 2요인은 3개의 변인들이 묶여 사회환원형에 해당하며, 3요인은 4개의 변인들이 묶여 평등형에, 4요인은 5개 변인들이 묶여 현실형에, 5요인은 나머지 3개 요인들이 묶여 노후대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적일치성을 확인한 결과 Cronbach의 α 계수는 전통형 .879, 사회환원형 .872, 평등형 .811, 현실형 .676, 노후대비형 .631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임
 - 따라서 재산 상속 선호 형태는 전통형, 사회환원형, 평등형, 현실형, 노후대비형의 각기 별개의 구성체로 구성되며 이 구성체들 간에는 판별·수렴 타당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36〉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유형별 요인분석결과

구 분		성분				
		1	2	3	4	5
전통형	재산 상속은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874	.029	-.137	-.004	-.072
	이들의 상속분이 딸의 상속분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897	.046	-.162	-.016	-.093
	재산 상속은 아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야 한다	.908	.062	-.163	-.020	-.129
	모든 자녀에게 상속하되 장남에게 좀 더 많이 준다	.861	.070	-.193	-.050	.018
	재산 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469	-.057	.057	.130	.033
	재산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증가집에 상속한다	.548	.176	-.044	.098	-.264
사회 환원형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유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002	.850	-.049	.052	-.081
	자녀에게 재산모두를 상속하지 않더라도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067	.863	.072	-.109	.045
	상속으로 인한 갈등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속보다는 사회환원이 옳다고 생각한다	.069	.876	.096	-.033	-.004
평등형	재산은 모든 자녀들에게 균분 상속해야 한다	-.461	.022	.640	-.007	.155
	지금의 상속법(아들: 딸: 배우자=1: 1: 1)에 대체로 만족한다	-.094	-.009	.835	.054	-.001
	여성의 상속분이 남성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474	.057	.640	.088	.201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한다	-.069	-.008	.755	.213	.111
현실형	재산 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05	-.008	.201	.796	-.107
	재산 상속은 가장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017	-.142	.083	.750	-.022
	자녀 중에서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살핀 사람은 상속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016	-.164	.063	.669	.087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	.053	.354	-.127	.546	.085
	구두 상속분이 실제 상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74	.234	.375	.444	.029
노후 대비형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여 상속보다는 본인 당사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36	-.097	.204	.080	.867
	노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료비 등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7	-.046	.223	.077	.858
	역모기지정책을 이용해서 최대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45	.448	-.236	-.198	.609
Cronbach의 알파		.879	.872	.811	.676	.631
고유치		5.347	2.813	2.666	1.726	1.332
설명변량		20.096	33.068	45.323	56.239	66.109
KMO 표본적합도=.810			Sig.=.000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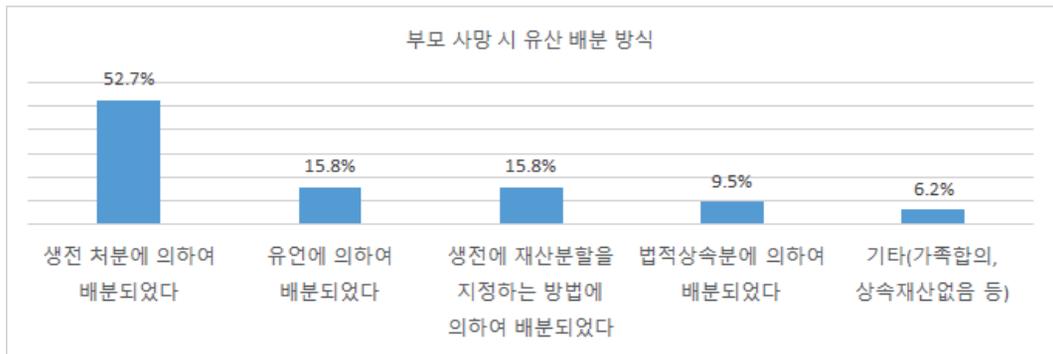
회전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4.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가.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방식

- 부모님 사망 당시 유산 배분 방식은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 사망 당시 유산 배분 방식은 생전 처분에 의하여 52.7%, 유언에 의하여 15.8%, 생전에 재산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15.8%, 법적 상속분에 의하여 9.5%, 기타 6.2% 순으로 생전 처분에 의한 방식이 가장 많음

[그림 3-41]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



-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은 성별, 연령별 모두 모두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 방식이 가장 많음. 다만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37>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분	生前 처분에 의하여 배분	유언에 의하여 배분	生前 재산분할 지정 방법에 의하여 배분	법적상속분에 의하여 배분	기타(가족합의, 상속재산없음 등)	계	χ^2
성	여성	68(48.6)	20(14.3)	24(17.1)	14(10.0)	140(100.0)	8.333
	남성	76(57.1)	23(17.3)	19(14.3)	12(9.0)	133(100.0)	
	계	144(52.7)	43(15.8)	43(15.8)	26(9.5)	273(100.0)	

연령	40대	28(53.8)	7(13.5)	9(17.3)	6(11.5)	2(3.8)	52(100.0)	6.259
	50대	47(50.5)	15(16.1)	15(16.1)	11(11.8)	5(5.4)	93(100.0)	
	60대 이상	69(53.9)	21(16.4)	19(14.8)	9(7.0)	10(7.8)	128(100.0)	
	계	144(52.7)	43(15.8)	43(15.8)	26(9.5)	17(6.2)	273(100.0)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은 교육수준별로도 모두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고, 법적 상속분에 의한 배분은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에서 더 많음
 - 학력수준별로 고졸 이하는 생전 처분 57.0%, 유언과 생전 지정 방법이 각각 15.6% 등의 순이며, 전문대졸 이상은 생전 처분 44.7%, 법적 상속분 17.0%, 유언과 생전 지정 방법이 각각 16.0%, 기타 6.4%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으며 법적 상속분에 의한 배분은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11.4%p 더 많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도 모든 소득구간에서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높고, 법적 상속분에 의한 배분은 500만원 미만보다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 더 많음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300만원 미만은 생전 처분 59.0%, 유언과 생전 지정 방법이 각각 12.0%, 법적 상속분 8.4% 등의 순이며, 300만원~500만원 미만은 생전 처분 44.7%, 유언 27.1%, 생전 지정 방법 14.1%, 법적 상속분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500만원 이상은 생전 처분 54.3%, 생전 지정 방법 20.0%, 법적 상속분 11.4%, 유언 9.5% 등의 순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0만원 미만에서 많음. 또한 법적 상속분에 의한 배분은 500만원 미만 보다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도 모든 직종에서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고, 그 중 사무직/판매직이 가장 많음
 - 직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 관리직/전문직이 66.7%로 가장 높고 서비스직이 44.0%로 가장 낮음. 또한 생전 지정 방법에 의한 배분은 관리직/전문직이 33.3%로 다른 직종에 비해 높고 법적 상속분에 의한 배분은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가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도 모두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고 그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56.3%로 가장 높음. 법적 상속분에 의한 배분은 건강상태 좋음이 가장 많음

〈표 3-38〉 부모 사망 시 유산 배분 방식 -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분	생전 처분에 의하여 배분	유언에 의하여 배분	생전 재산분할방법에 의하여 배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배분	기타(가족 합의, 상속재산 없음 등)	계	χ^2	
교육수준	고졸 이하	102(57.0)	28(15.6)	28(15.6)	10(5.6)	179(100.0)	10.243*	
	전문대졸 이상	42(44.7)	15(16.0)	15(16.0)	16(17.0)	94(100.0)		
	계	144(52.7)	43(15.8)	43(15.8)	26(9.5)	17(6.2)		273(100.0)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9(59.0)	10(12.0)	10(12.0)	7(8.4)	83(100.0)	15.668*	
	300만원-500만원 미만	38(44.7)	23(27.1)	12(14.1)	7(8.2)	85(100.0)		
	500만원 이상	57(54.3)	10(9.5)	21(20.0)	12(11.4)	5(4.8)		105(100.0)
	계	144(52.7)	43(15.8)	43(15.8)	26(9.5)	17(6.2)		273(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12(44.4)	4(14.8)	9(33.3)	1(3.7)	1(3.7)	27(100.0)	29.382*
	사무직/판매직	22(66.7)	4(12.1)	2(6.1)	3(9.1)	2(6.1)	33(100.0)	
	서비스직	37(44.0)	14(16.7)	16(19.0)	11(13.1)	6(7.1)	84(100.0)	
	농림어업직	33(55.9)	10(16.9)	13(22.0)	3(5.1)	0(0.0)	59(100.0)	
	기타(조립단순노무/기타)	40(57.1)	11(15.7)	3(4.3)	8(11.4)	8(11.4)	70(100.0)	
계	144 (52.7)	43(15.8)	43(15.8)	26(9.5)	17(6.2)	273(100.0)		
건강상태	좋음	94 (55.3)	21(12.4)	25(14.7)	22(12.9)	8(4.7)	170(100.0)	19.371*
	보통	32 (45.1)	16(22.5)	16(22.5)	3(4.2)	4(5.6)	71(100.0)	
	좋지 않음	18 (56.3)	6(18.8)	2(6.3)	1(3.1)	5(15.6)	32(100.0)	
	계	144 (52.7)	43(15.8)	43(15.8)	26(9.5)	17(6.2)	273(100.0)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1)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배분 방식은 공평하게 배분됨 26.7%, 차별이 있었음 73.3%로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차별 배분을 경험한 비율이 46.6%p 더 높음

[그림 3-42]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차별 배분 경험은 성별, 연령별 모두 70% 전후로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40대가 50대 이상보다 차별 배분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 연령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39〉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공평하게 배분됨	차별이 있었음	계	χ^2	
성	여성	41(29.3)	99(70.7)	140(100.0)	.951
	남성	32(24.1)	101(75.9)	133(100.0)	
	계	73(26.7)	200(73.3)	273(100.0)	
연령	40대	16(30.8)	36(69.2)	52(100.0)	.532
	50대	24(25.8)	69(74.2)	93(100.0)	
	60대 이상	33(25.8)	95(74.2)	128(100.0)	
	계	73(26.7)	200(73.3)	273(100.0)	

* p < .05, ** p < .01, *** p < .001

-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배분이 차별이 있었다는 비율은 제주시가 더 높고,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차별이 있었다는 비율이 증가함
 -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공평하게 배분 20.5% 차별이 있었음 79.5%, 서귀포시는 공평하게 배분 42.3%, 차별이 있었음 57.7%로 모두 차별이 있었다는 비율이 더 높음. 특히 제주시 거주자는 서귀포시 거주자보다 차별이 있었다는 비율이 21.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층의식별로 상층은 공평하게 배분됨 63.6%, 차별이 있었음 36.4%, 중간층은 공평하게 배분됨 25.3%, 차별이 있었다 74.7%, 하층은 공평하게 배분됨 23.8%, 차별이 있었음 76.2%로 중간층 이하는 차별이 있었다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상층은 공평하게 배분되었다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평한 배분 방식은 계층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차별 배분은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높아짐

〈표 3-40〉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방식 - 거주지, 계층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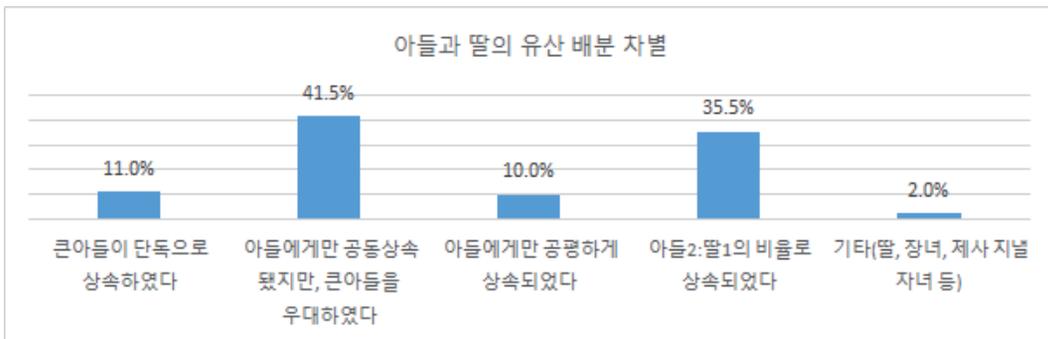
구 분	공평하게 배분됨	차별이 있었음	계	단위 : 명, %	
					χ^2
제주시	40(20.5)	155(79.5)	195(100.0)	13.510***	
거주지 서귀포시	33(42.3)	45(57.7)	78(100.0)		
계	73(26.7)	200(73.3)	273(100.0)		
상층	7(63.6)	4(36.4)	11(100.0)	7.987*	
계층 중간층	61(25.3)	180(74.7)	241(100.0)		
의식 하층	5(23.8)	16(76.2)	21(100.0)		
계	73(26.7)	200(73.3)	273(100.0)		

* p < .05, ** p < .01, *** p < .001

2)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의 유형은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들과 딸의 2:1 비율 상속 형태로 많이 이루어짐
- 차별 유형은 아들에게만 공동상속 했지만 큰아들을 우대하였다 41.5%, 아들2:딸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35.5%, 큰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11.0%,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10.0%, 기타 2.0% 순으로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큰아들을 우대하는 형태의 차별이 가장 많이 이뤄졌고 다음으로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아들2:딸1)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유형으로 여성은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아들2:딸1)이 가장 많고 남성은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형태가 가장 많음

- 여성은 아들2:딸1 비율로 상속 50.%, 아들에게만 공동상속 됐지만 큰아들을 우대하였다 32.3%, 큰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9.1% 등의 순으로 아들2:딸1 비율의 차등 상속 유형이 가장 많고, 남성은 아들에게만 공동상속 됐지만 큰아들을 우대하였다 50.5%, 아들2:딸1 비율로 상속되었다 20.8%,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상속되었다 13.9%, 큰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12.9% 등의 순으로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는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아들2:딸1)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아들2:딸1) 유형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증가하고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장자를 우대하는 유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41〉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큰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아들에게만 공동상속 됐지만, 큰아들을 우대하였다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상속되었다	아들2:딸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기타(딸, 장녀, 제사 지낼 자녀 등)	계	χ^2
성							
여성	9(9.1)	32(32.3)	6(6.1)	50(50.5)	2(2.0)	99(100.0)	21.104***
남성	13(12.9)	51(50.5)	14(13.9)	21(20.8)	2(2.0)	101(100.0)	
계	22(11.0)	83(41.5)	20(10.0)	71(35.5)	4(2.0)	200(100.0)	
연령							
40대	7(19.4)	10(27.8)	2(5.6)	16(44.4)	1(2.8)	36(100.0)	11.978
50대	7(10.1)	26(37.7)	8(11.6)	28(40.6)	0(0.0)	69(100.0)	
60대 이상	8(8.4)	47(49.5)	10(10.5)	27(28.4)	3(3.2)	95(100.0)	
계	22(11.0)	83(41.5)	20(10.0)	71(35.5)	4(2.0)	200(100.0)	

* p < .05, ** p < .01, *** p < .001

- 직업별로는 관리직/전문직, 농림어업직,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는 아들에게만 공동상속하고 큰 아들을 우대하는 유형이 가장 많고, 특히 농림어업직이 많음. 또한 사무직/판매직, 서비스직은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아들2:딸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2〉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 직업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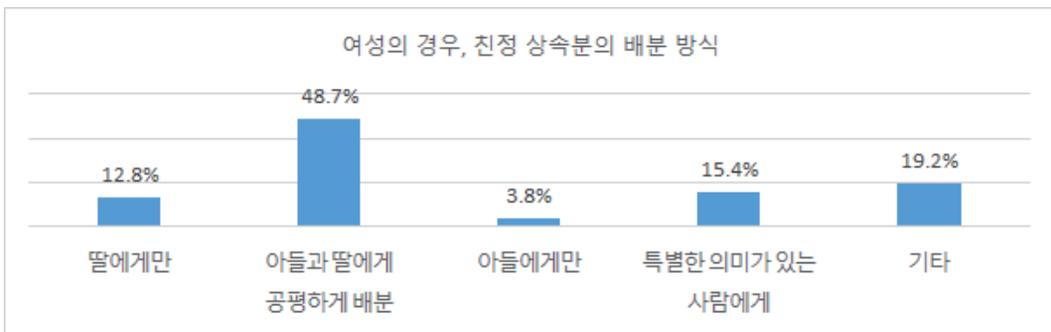
구분	큰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아들에게만 공동상속됐지만, 큰아들을 우대하였다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상속되었다	아들:딸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기타(딸, 장녀, 제사 지낼 자녀 등)	계	χ^2
관리직/전문직	2(8.7)	12(52.2)	1(4.3)	8(34.8)	0(0.0)	23(100.0)	34.958**
사무직/판매직	2(9.1)	5(22.7)	5(22.7)	10(45.5)	0(0.0)	22(100.0)	
서비스직	6(10.5)	14(24.6)	7(12.3)	29(50.9)	1(1.8)	57(100.0)	
농림어업직	3(6.7)	28(62.2)	1(2.2)	13(28.9)	0(0.0)	45(100.0)	
기타(조립/단순노무/기타)	9(17.0)	24(45.3)	6(11.3)	11(20.8)	3(5.7)	53(100.0)	
계	22(11.0)	83(41.5)	20(10.0)	71(35.5)	4(2.0)	200(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 여성의 경우, 친정의 상속분을 배분할 방식은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은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 48.7%, 기타(본인사용/상속분 없음) 19.2%,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15.4%, 딸에게만 12.8%, 아들에게만 3.8% 순으로 공평하게 배분 방식이 가장 많음

[그림 3-44]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



- 연령별로도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방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

가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43〉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 - 연령

단위 : 명, %

구 분	딸에게만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	아들에게 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기타(본인 사용/상속 분 없음)	계	χ^2
연령							
40대	0(0.0)	27(58.7)	2(4.3)	10(21.7)	7(15.2)	46(100.0)	14.656
50대	7(14.6)	23(47.9)	1(2.1)	8(16.7)	9(18.8)	48(100.0)	
60대 이상	13(21.0)	26(41.9)	3(4.8)	6(9.7)	14(22.6)	62(100.0)	
계	20(12.8)	76(48.7)	6(3.8)	24(15.4)	30(19.2)	156(100.0)	

* p < .05, ** p < .01, *** p < .001

- 여성의 경우, 친정 상속분의 배분 방식은 계층의식이 상층인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방식이 가장 많고, 중간층과 하층은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4〉 (여성의 경우) 친정 유산의 배분 방식 -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 분	딸에게만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	아들에게 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기타(본인 사용/상속 분 없음)	계	χ^2
계층 의식							
상층	2(22.2)	1(11.1)	0(0.0)	5(55.6)	1(11.1)	9(100.0)	15.749*
중간층	16(12.0)	69(51.9)	5(3.8)	16(12.0)	27(20.3)	133(100.0)	
하층	2(14.3)	6(42.9)	1(7.1)	3(21.4)	2(14.3)	14(100.0)	
계	20(12.8)	76(48.7)	6(3.8)	24(15.4)	30(19.2)	15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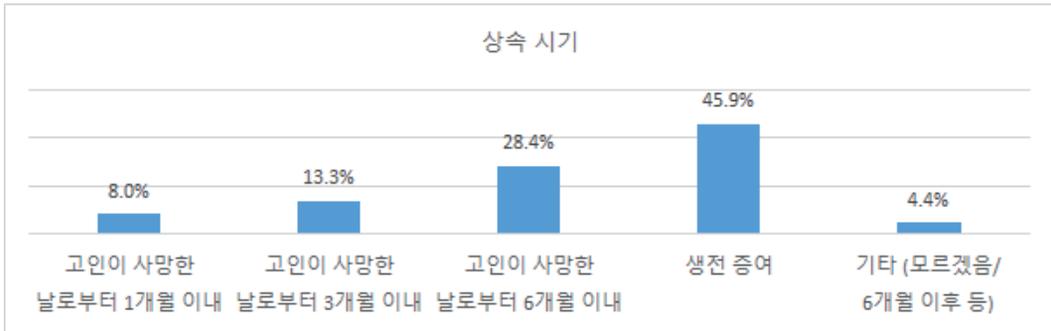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다. 상속 시기

- 재산의 상속 시기는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의 상속 시기는 생전 증여 45.9%,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3.3%,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8.0%, 기타 4.4%

순으로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이 가장 많음. 이는 앞서 부모님 사망 당시 유산 배분 방식으로 생전 처분에 의한 배분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 일치함. 또한 생전 증여 외에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재산 상속 시기는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음

[그림 3-45] 재산의 상속 시기



- 생전 증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별로 정리해보면, 4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더 많이 이뤄졌으며, 전문대졸이상, 맞벌이 부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 사무직/판매직과 관리직/전문직인 경우에 생전 증여가 더 많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남. 계층의식별로는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더 많이 행해졌으며 특히 상층에서 더 많이 행해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산의 상속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재산 상속 시기는 연령별로 40대와 60대 이상은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50대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40대는 생전 증여 64.8%,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7.6%,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8.8% 등의 순이며, 60대 이상은 생전 증여 38.1%,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8.8%,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8.1% 등의 순으로 40대와 60대 이상은 생전 증여가 가장 높음. 50대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8.6%, 생전 증여 37.0%,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6% 등의 순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가장 높음

〈표 3-45〉 재산의 상속 시기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생전 증여	기타	계	χ^2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성	여성	15(7.6)	31(15.7)	54(27.3)	84(42.4)	14(7.1)	9.137
	남성	18(8.4)	24(11.2)	63(29.4)	105(49.1)	4(1.9)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연령	40대	11(8.8)	10(8.0)	22(17.6)	81(64.8)	1(0.8)	36.717***
	50대	10(7.9)	16(12.6)	49(38.6)	47(37.0)	5(3.9)	
	60대 이상	12(7.5)	29(18.1)	46(28.8)	61(38.1)	12(7.5)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 p < .05, ** p < .01, *** p < .001

- 교육수준별로도 모두 생전 증여가 고졸 이하 41.3%, 전문대졸 이상 52.4%로 가장 높음
-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는 생전 증여가 52.5%로 가장 높아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특히 사무직/판매직이 6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태별로는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계층의식 별로는 상층과 중간층은 생전 증여가 가장 많고, 하층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생전 증여는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6〉 재산의 상속 시기 -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 분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생전 증여	기타	계	χ^2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7(7.0)	42(17.4)	68(28.1)	100(41.3)	15(6.2)	14.920**
	전문대졸 이상	16(9.4)	13(7.6)	49(28.8)	89(52.4)	3(1.8)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맞벌이 여부	예	24(9.3)	25(9.7)	70(27.2)	135(52.5)	3(1.2)	32.828***
	아니오	3(3.8)	15(19.2)	27(34.6)	24(30.8)	9(11.5)	
	계	27(8.1)	40(11.9)	97(29.0)	159(47.5)	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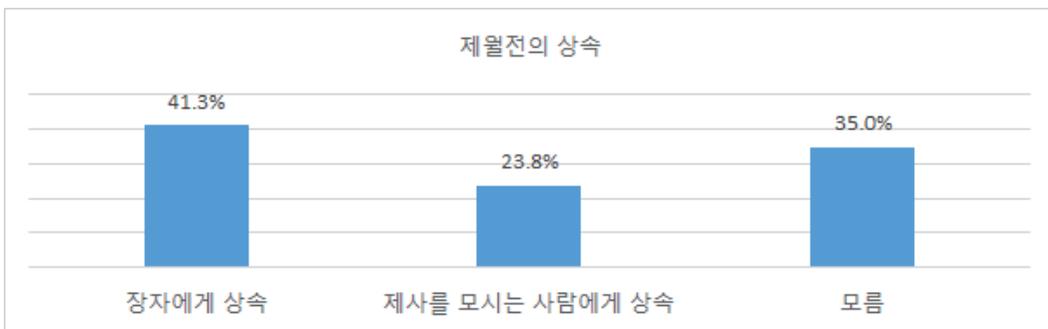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7.4)	15(15.8)	27(28.4)	38(40.0)	8(8.4)	95(100.0)	23.848**
	300만원-500만원 미만	8(6.6)	26(21.3)	32(26.2)	49(40.2)	7(5.7)	122(100.0)	
	500만원 이상	18(9.2)	14(7.2)	58(29.7)	102(52.3)	3(1.5)	195(100.0)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412(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4(7.1)	4(7.1)	13(23.2)	32(57.1)	3(5.4)	56(100.0)	31.403*
	사무직/판매직	4(6.7)	4(6.7)	16(26.7)	36(60.0)	0(0.0)	60(100.0)	
	서비스직	11(9.1)	16(13.2)	38(31.4)	52(43.0)	4(3.3)	121(100.0)	
	농림어업직	8(10.5)	6(7.9)	27(35.5)	31(40.8)	4(5.3)	76(100.0)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6(6.1)	25(25.3)	23(23.2)	38(38.4)	7(7.1)	99(100.0)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412(100.0)		
건강 상태	좋음	22(7.9)	45(16.1)	79(28.2)	131(46.8)	3(1.1)	280(100.0)	31.093***
	보통	8(8.4)	9(9.5)	29(30.5)	40(42.1)	9(9.5)	95(100.0)	
	좋지 않음	3(8.1)	1(2.7)	9(24.3)	18(48.6)	6(16.2)	37(100.0)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412(100.0)	
계층 의식	상층	1(4.3)	7(30.4)	1(4.3)	12(52.2)	2(8.7)	23(100.0)	17.950*
	중간층	31(8.5)	45(12.4)	103(28.4)	169(46.6)	15(4.1)	363(100.0)	
	하층	1(3.8)	3(11.5)	13(50.0)	8(30.8)	1(3.8)	26(100.0)	
	계	33(8.0)	55(13.3)	117(28.4)	189(45.9)	18(4.4)	412(100.0)	

* p < .05, ** p < .01, *** p < .001

라. 제월전(祭越田) 상속

- 조상 제사를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했던 받을 의미하는 제월전은 주로 장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나타남.
 - 제월전의 상속은 장자에게 상속 41.3%,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상속 23.8%로 장자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6] 제월전 상속



- 제월전의 상속은 남녀 모두 장자에게 상속이 가장 많음.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제월전의 상속은 모름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장자 상속이 가장 많이 행해졌으며, 제월전의 장자 상속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제월전의 상속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관련 내용이 관습적 의미와 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47〉 제월전 상속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장자에게 상속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상속	모름	계	χ^2	
성	여성	81(40.9)	56(28.3)	61(30.8)	198(100.0)	5.124
	남성	89(41.6)	42(19.6)	83(38.8)	214(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연령	40대	27(21.6)	25(20.0)	73(58.4)	125(100.0)	50.297***
	50대	55(43.3)	37(29.1)	35(27.6)	127(100.0)	
	60대 이상	88(55.0)	36(22.5)	36(22.5)	160(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 p < .05, ** p < .01, *** p < .001

- 혼인상태별로도 모두 장자상속이 가장 많고, 교육수준별로도 모름을 제외하고 모두 장자 상속이 가장 많지만 전문대졸 이상은 모름 응답이 가장 많음.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장자 상속이 증가하여 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모름 응답은 5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음
- 직업별로는 모름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군에서 장자 상속이 가장 많음. 특히 농림어업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름 응답은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판매직에서 높게 나타남.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상속한 경우는 서비스직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건강상태별로는 모름을 제외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장자 상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모름 응답이 증가함.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상속한 경우는 하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표 3-48〉 제월전 상속 - 혼인상태,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단위 : 명, %

구 분	장자에게 상속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상속	모름	계	χ^2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41(42.1)	70(20.9)	124(37.0)	335(100.0)	8.779*
	미혼/기타	29(37.7)	28(36.4)	20(26.0)	77(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08(44.6)	69(28.5)	65(26.9)	242(100.0)	18.105***
	전문대졸 이상	62(36.5)	29(17.1)	79(46.5)	170(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맞벌이 여부	예	99(38.5)	49(19.1)	109(42.4)	257(100.0)	13.794**
	아니오	42(53.8)	21(26.9)	15(19.2)	78(100.0)	
	계	141(42.1)	70(20.9)	124(37.0)	335(10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9(62.1)	21(22.1)	15(15.8)	95(100.0)	34.138***
	300만원-500만원 미만	51(41.8)	33(27.0)	38(31.1)	122(100.0)	
	500만원 이상	60(30.8)	44(22.6)	91(46.7)	195(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22(39.3)	5(8.9)	29(51.8)	56(100.0)	28.761***
	사무직/판매직	17(28.3)	15(25.0)	28(46.7)	60(100.0)	
	서비스직	44(36.4)	39(32.2)	38(31.4)	121(100.0)	
	농림어업직	44(57.9)	15(19.7)	17(22.4)	76(100.0)	
	가정조립/단순노무기타	43(43.4)	24(24.2)	32(32.3)	99(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건강 상태	좋음	103(36.8)	65(23.2)	112(40.0)	280(100.0)	11.379*
	보통	47(49.5)	23(24.2)	25(26.3)	95(100.0)	
	좋지 않음	20(54.1)	10(27.0)	7(18.9)	37(100.0)	
	계	170(41.3)	98(23.8)	144(35.0)	41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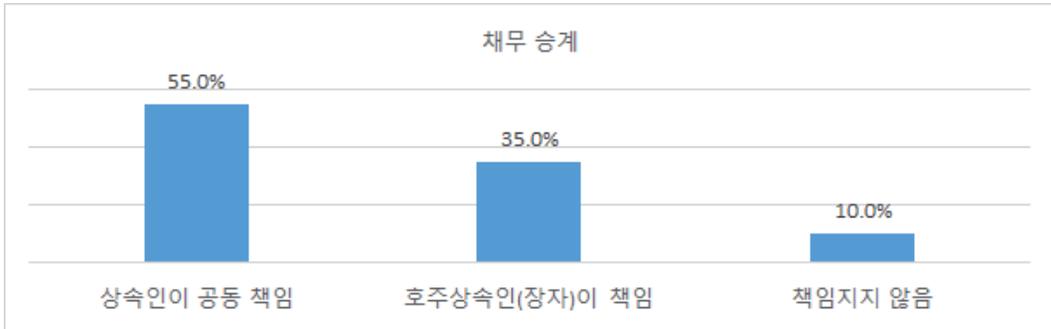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마. 채무 승계

○ 채무 승계 방식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진 경우가 가장 많음

- 채무 승계는 상속인이 공동 책임 55.0%, 호주상속인(장자)이 책임 35.0% 책임지지 않음 10.0% 순으로 상속인이 공동 책임이 가장 높음

[그림 3-47] 채무 승계 방식



- 채무 승계에 관하여 여성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진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호주상속인(장자)이 책임진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 81.8%, 호주상속인(장자)이 책임 18.2%, 남성은 호주상속인(장자)이 책임 55.6%, 상속인이 공동 책임 22.2%, 책임지지 않음 22.2%로 여성은 상속인이 공동 책임이 가장 높고 남성은 호주상속인(장자) 책임이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모두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인 경우가 가장 많고, 50대는 상속인 공동 책임, 호주상속인(장자) 책임이 동률로 높게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49> 채무 승계 방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분	상속인이 공동 책임	호주상속인(장자)이 책임	책임지지 않음	계	χ^2	
성	여성	9(81.8)	2(18.2)	0(0.0)	11(100.0)	7.616*
	남성	2(22.2)	5(55.6)	2(22.2)	9(100.0)	
	계	11(55.0)	7(35.0)	2(10.0)	20(100.0)	
연령	40대	5(62.5)	3(37.5)	0(0.0)	8(100.0)	3.961
	50대	3(37.5)	3(37.5)	2(25.0)	8(100.0)	
	60대 이상	3(75.0)	1(25.0)	0(0.0)	4(100.0)	
	계	11(55.0)	7(35.0)	2(10.0)	20(100.0)	

* p < .05, ** p < .01, *** p < .001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은 상속인이 공동으로 책임진 경우가 가장 많고, 300만원~500만원 미만 호주상속인(장자)이 책임을 진 경우가 가장 많음

〈표 3-50〉 채무 승계 -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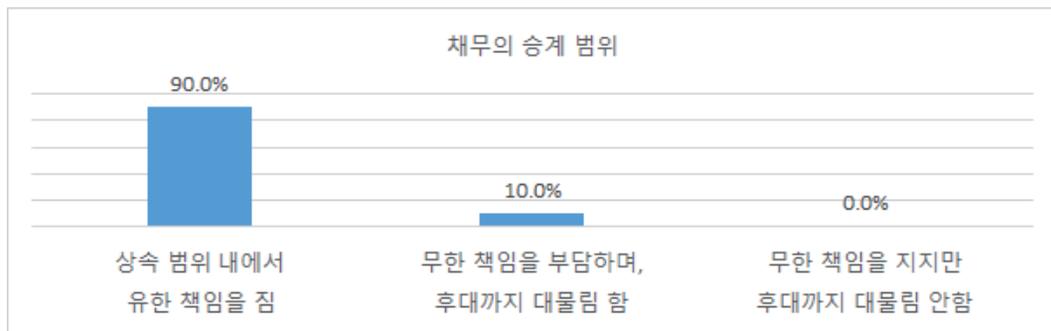
구 분	상속인이 공동 책임	호주상속인(장 자)이 책임	책임지지 않음	계	χ^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100.0)	0(0.0)	0(0.0)	5(100.0)	12.208*
	300만원-500만원 미만	3(33.3)	6(66.7)	0(0.0)	9(100.0)	
	500만원 이상	3(50.0)	1(16.7)	2(33.3)	6(100.0)	
계	11(55.0)	7(35.0)	2(10.0)	20(100.0)		

* p < .05, ** p < .01, *** p < .001

바. 채무 승계의 범위

- 채무 승계 범위는 상속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방식 90.0%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3-48] 채무 승계 범위



- 채무 승계 범위는 성별, 연령별 모두 상속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51〉 채무 승계 범위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상속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	무한 책임, 후대까지 대물림	무한 책임, 후대까지 대물림 안함	계	χ^2	
성	여성	10(90.9)	1(9.1)	0(0.0)	11(100.0)	.022
	남성	8(88.9)	1(11.1)	0(0.0)	9(100.0)	
계	18(90.0)	2(10.0)	0(0.0)	20(100.0)		

연령	40대	7(87.5)	1(12.5)	0(0.0)	8(100.0)	3556
	50대	7(87.5)	1(12.5)	0(0.0)	8(100.0)	
	60대 이상	4(100.0)	0(0.0)	0(0.0)	4(100.0)	
	계	18(90.0)	2(10.0)	0(0.0)	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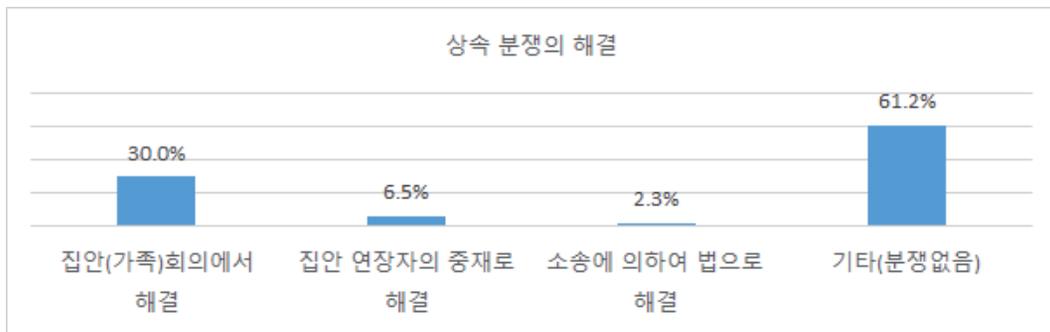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5. 재산 상속 분쟁 관행

가. 상속분쟁 해결 방식

-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한 경우가 가장 많고 소송을 통한 해결은 2.3%에 그쳐 가족회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장 많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 30.0%,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 6.5%, 소송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 2.3% 순으로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9] 상속 분쟁의 해결



- 분쟁없음을 포함한 기타를 제외하고,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남녀 모두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집안(가족)회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송에 의한 해결은 50대가 3.9%로 가장 높음

〈표 3-52〉 상속 분쟁의 해결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	소송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	기타 (분쟁없음)	계	χ^2
성	여성	73(27.8)	24(9.1)	6(2.3)	160(60.8)	6.350
	남성	83(32.3)	10(3.9)	6(2.3)	158(61.5)	
	계	156(30.0)	34(6.5)	12(2.3)	318(61.2)	
연령	40대	32(20.8)	7(4.5)	4(2.6)	111(72.1)	16.046*
	50대	55(35.7)	11(7.1)	6(3.9)	82(53.2)	
	60대 이상	69(32.5)	16(7.5)	2(0.9)	125(59.0)	
	계	156(30.0)	34(6.5)	12(2.3)	318(61.2)	

* p < .05, ** p < .01, *** p < .001

-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거주지별로도 모두 집안(가족)회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많고, 이는 제주시 26.5%, 서귀포시 37.7%로 서귀포시가 더 높게 나타남. 소송에 의한 해결은 제주시가 2.8%로 조금 더 높음. 교육수준별로도 마찬가지로이며, 고졸 이하 26.5%. 전문대졸 이상 35.9%로 전문대졸 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송에 의한 해결 방식은 제주시와 전문대졸 이상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건강상태별로는 모든 건강상태에서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많고 특히 건강상태 보통에서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가장 높고, 소송에 의한 해결은 건강상태 좋음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속 분쟁이 일어난 경우, 계층의식별로는 상층은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53.6%로 가장 높고, 중간층 역시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으나 30.1%로 상층보다는 낮음. 하층은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이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하는 방식보다 2.5%p 더 높음. 다만 소송에 의한 해결 방식은 하층이 5.0%로 가장 높음

〈표 3-53〉 상속 분쟁 해결 방식 - 거주지, 거주기간, 교육수준, 건강상태,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 분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	소송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	기타 (분쟁없음)	계	χ^2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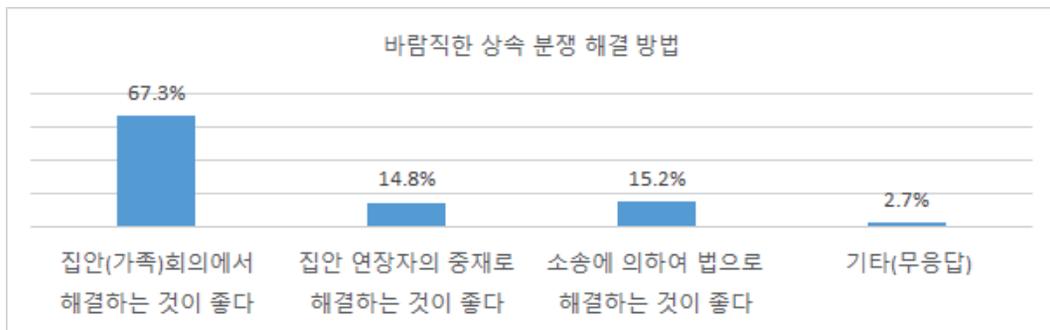
제주시	95(26.5)	28(7.8)	10(2.8)	225(62.8)	358(100.0)		
거주지 서귀포시	61(37.7)	6(3.7)	2(1.2)	93(57.4)	162(100.0)	9.202*	
계	156(30.0)	34(6.5)	12(2.3)	318(61.2)	520(100.0)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6(26.5)	26(8.0)	4(1.2)	209(64.3)	325(100.0)	
	전문대졸 이상	70(35.9)	8(4.1)	8(4.1)	109(55.9)	195(100.0)	12.214**
계	156(30.0)	34(6.5)	12(2.3)	318(61.2)	520(100.0)		
건강 상태	좋음	96(28.9)	15(4.5)	11(3.3)	210(63.3)	332(100.0)	
	보통	42(33.3)	7(5.6)	0(0.0)	77(61.1)	126(100.0)	24.443***
	좋지 않음	18(29.0)	12(19.4)	1(1.6)	31(50.0)	62(100.0)	
계	156(30.0)	34(6.5)	12(2.3)	318(61.2)	520(100.0)		
계층 의식	상층	15(53.6)	0(0.0)	0(0.0)	13(46.4)	28(100.0)	
	중간층	136(30.1)	28(6.2)	10(2.2)	278(61.5)	452(100.0)	18.748**
	하층	5(12.5)	6(15.0)	2(5.0)	27(67.5)	40(100.0)	
계	156(30.0)	34(6.5)	12(2.3)	318(61.2)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나. 상속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

-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은 15.0%로 나타남
-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 67.3%, 집안 연장자에 의한 중재로 해결 14.8%, 소송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 15.2%, 기타 2.7% 순으로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0]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



-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은 성별, 연령별 모두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별, 연령별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54〉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	소송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	기타	계	χ^2	
성	여성	167(63.5)	43(16.3)	46(17.5)	7(2.7)	263(100.0)	3.854
	남성	183(71.2)	34(13.2)	33(12.8)	7(2.7)	257(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연령	40대	105(68.2)	20(13.0)	24(15.6)	5(3.2)	154(100.0)	3.554
	50대	103(66.9)	21(13.6)	24(15.6)	6(3.9)	154(100.0)	
	60대 이상	142(67.0)	36(17.0)	31(14.6)	3(1.4)	212(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제주시 62.8%, 서귀포시 77.2%로 서귀포시가 14.4%p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집안 연장자에 의한 중재는 제주시가 12.5%p 더 높고, 소송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15% 수준으로 유사함
- 교육수준별로도 모두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안 연장자에 의한 중재는 고졸 이하가 9.8%p 더 높고, 소송은 고졸 이하가 5.4%p 더 높음
- 직업별로도 모두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리직/전문직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무직/판매직이 74.7%로 높음. 집안 연장자의 중재는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9.8%, 농림어업직 17.3% 순으로 높고, 소송은 서비스직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집안(가족)회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안 연장자의 중재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24.2%로 가장 높고, 소송은 건강상태 보통이 27.0%로 가장 높음
- 계층의식별로는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집안(가족)회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안 연장자의 중재는 하층이 32.5%로 가장 높고, 소송은 하층이 17.5%로 가장 높음

〈표 3-55〉 바람직한 상속 분쟁 해결 방법 - 거주지, 교육수준,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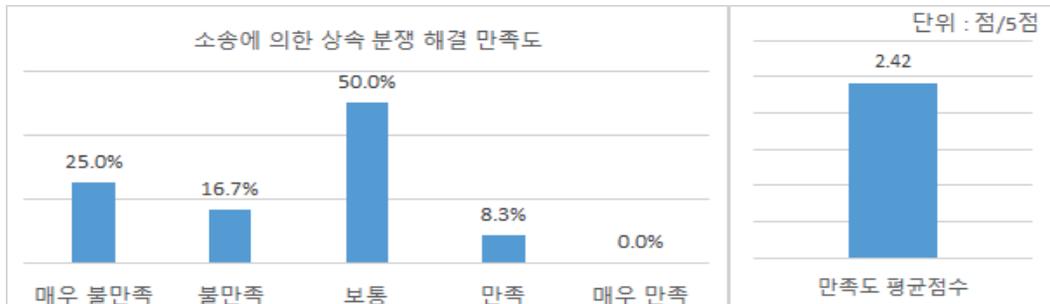
구 분	집안(가족)회의에서 해결	집안 연장자의 중재로 해결	소송에 의하여 법으로 해결	기타	계	χ^2
거주지	제주시 225(62.8)	67(18.7)	54(15.1)	12(3.4)	358(100.0)	17.108**
	서귀포시 125(77.2)	10(6.2)	25(15.4)	2(1.2)	162(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04(62.8)	60(18.5)	56(17.2)	5(1.5)	325(100.0)	17.122**
	전문대졸 이상 146(74.9)	17(8.7)	23(11.8)	9(4.6)	195(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55(80.9)	8(11.8)	4(5.9)	1(1.5)	68(100.0)	22.408*
	사무직/판매직 56(74.7)	7(9.3)	9(12.0)	3(4.0)	75(100.0)	
	서비스직 93(60.8)	20(13.1)	36(23.5)	4(2.6)	153(100.0)	
	농림어업직 63(64.3)	17(17.3)	16(16.3)	2(2.0)	98(100.0)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83(65.9)	25(19.8)	14(11.1)	4(3.2)	126(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건강상태	좋음 233(70.2)	50(15.1)	38(11.4)	11(3.3)	332(100.0)	24.666***
	보통 79(62.7)	12(9.5)	34(27.0)	1(0.8)	126(100.0)	
	좋지 않음 38(61.3)	15(24.2)	7(11.3)	2(3.2)	62(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계층의식	상층 28(100.0)	0(0.0)	0(0.0)	0(0.0)	28(100.0)	26.237***
	중간층 304(67.3)	64(14.2)	72(15.9)	12(2.7)	452(100.0)	
	하층 18(45.0)	13(32.5)	7(17.5)	2(5.0)	40(100.0)	
	계 350(67.3)	77(14.8)	79(15.2)	14(2.7)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다.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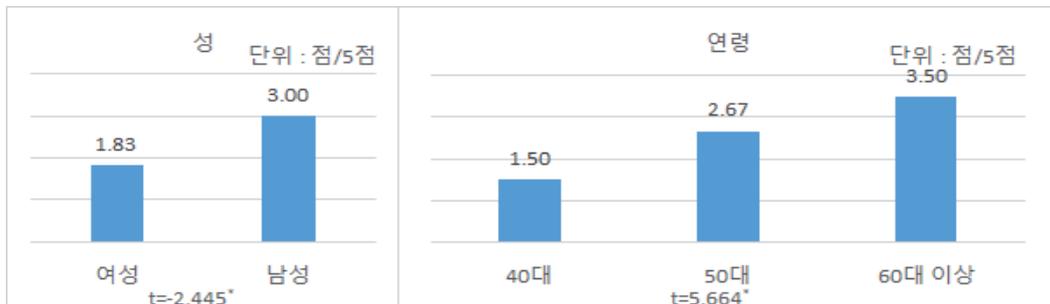
- 재산 상속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편임
-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25.0%, 불만족 16.7%, 보통 50.0%, 만족 8.3%, 매우 만족 0.0%로 보통이 가장 높지만 불만족한 비율이 41.7%, 만족한 비율이 8.3%로 불만족한 비율이 더 높음. 만족도 평균은 5점 중 2.42점으로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1]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만족도



-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 1.83점, 남성 3.00점으로 남성이 1.17점 더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1.50점, 50대 2.67점, 60대 이상 3.50점으로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2] 소송에 의한 상속 분쟁 해결 만족도 - 성, 연령



6.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가.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 재산 상속에 대한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하여 알고 있음 87.7%, 모름 12.3%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3]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여성 83.7%, 남성 91.8%로 남녀 모두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고 특히 남성의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알고 있음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남녀균분상속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증가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56>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χ^2	
성	여성	220(83.7)	43(16.3)	263(100.0)	8.056**
	남성	236(91.8)	21(8.2)	257(100.0)	
	계	456(87.7)	64(12.3)	520(100.0)	
연령	40대	140(90.9)	14(9.1)	154(100.0)	3.057
	50대	136(88.3)	18(11.7)	154(100.0)	
	60대 이상	180(84.9)	32(15.1)	212(100.0)	
	계	456(87.7)	64(12.3)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는 배우자가 있음,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500만원 미만, 사무직/판매직, 계층의식이 상층인 경우가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하여 혼인상태별로도 모두 알고 있음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9.6%로 미혼/기타보다 9.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알고 있음 비율이 300만원~500만원 미만 91.1%, 500만원 미만 90.5%, 300만원 미만 78.6%로 300만원 이상의 인지도가 높고 그 중 300만원~500만원

- 미만이 특히 더 높음
- 직업별로는 알고 있음 비율이 사무직/판매직 93.3%, 서비스직 91.5%, 관리직/전문직 89.7%, 농림어업직 84.7%,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81.0% 순으로 사무직/판매직이 가장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음
 - 계층의식별로는 계층이 높을수록 알고 있음 비율이 높고 계층이 낮을수록 모름 비율이 증가하여 상층의 알고 있음 비율이 96.4%로 가장 높고, 하층의 모름 비율이 27.5%로 가장 높음

〈표 3-57〉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 인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χ^2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371(89.6)	43(10.4)	414(100.0)	6.946**
	미혼/기타	85(80.2)	21(19.8)	106(100.0)	
	계	456(87.7)	64(12.3)	520(10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03(78.6)	28(21.4)	131(100.0)	13.375**
	300만원-500만원 미만	144(91.1)	14(8.9)	158(100.0)	
	500만원 이상	209(90.5)	22(9.5)	231(100.0)	
계	456(87.7)	64(12.3)	520(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61(89.7)	7(10.3)	68(100.0)	10.645*
	사무직/판매직	70(93.3)	5(6.7)	75(100.0)	
	서비스직	140(91.5)	13(8.5)	153(100.0)	
	농림어업직	83(84.7)	15(15.3)	98(100.0)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02(81.0)	24(19.0)	126(100.0)	
	계	456(87.7)	64(12.3)	520(100.0)	
계층 의식	상층	27(96.4)	1(3.6)	28(100.0)	10.804**
	중간층	400(88.5)	52(11.5)	452(100.0)	
	하층	29(72.5)	11(27.5)	40(100.0)	
	계	456(87.7)	64(12.3)	5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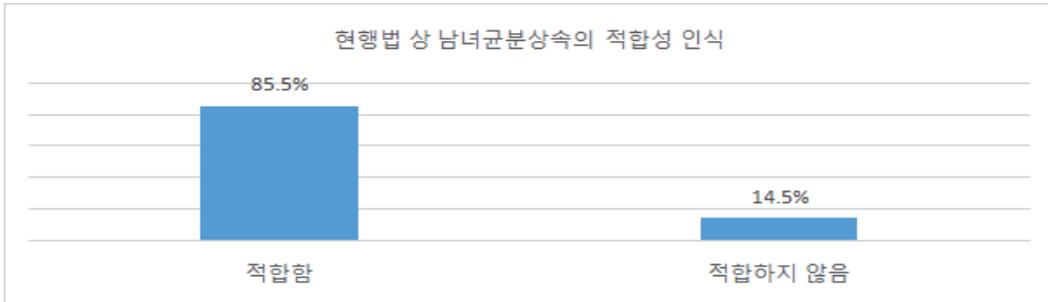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식

1)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여부는 적합함 85.5%, 적합하지 않음 14.5%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71.0%p 더 높아 대부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4]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인식



-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여부는 남녀 모두 적합하다는 인식이 85% 수준으로 높음.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여부는 모든 연령대에서 적합함 비율이 더 높았지만 50대가 91.2%로 가장 높고, 적합하지 않음은 60대 이상이 20.6%로 가장 높음

<표 3-58>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인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적합함	적합하지 않음	계	χ^2	
성	여성	188(85.5)	32(14.5)	220(100.0)	.002
	남성	202(85.6)	34(14.4)	236(100.0)	
	계	390(85.5)	66(14.5)	456(100.0)	
연령	40대	123(87.9)	17(12.1)	140(100.0)	9.500**
	50대	124(91.2)	12(8.8)	136(100.0)	
	60대 이상	143(79.4)	37(20.6)	180(100.0)	
	계	390(85.5)	66(14.5)	456(100.0)	

* p < .05, ** p < .01, *** p < .001

- 남녀균분상속에 대해 적합하다는 인식은 사무직/판매직이 특히 더 높고,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농림어업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적합하다는 인식은 사무직/판매직 90.0%,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89.2%, 서비스직 88.6%, 관리직/전문직 78.7%, 농림어업직 77.1% 순으로 사무직/판매직의 적합하다는 인식이 특히 더 높음. 반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농림어업직 22.9%, 관리직/전문직 21.3% 등의 순으로 농림어업직의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가장 높음
- 건강상태별 적합하다는 인식은 보통 89.7%, 좋음 87.9%, 좋지 않음 62.7% 순으로 건강상태 보통이 가장 높고,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좋지 않음 37.3%, 좋음 12.1%, 보통

10.3%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연령별 인식에서 60대 이상의 적합 인식이 가장 낮고 부적합 인식이 가장 높은 것과 같은 결과임

〈표 3-59〉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의 적합성 인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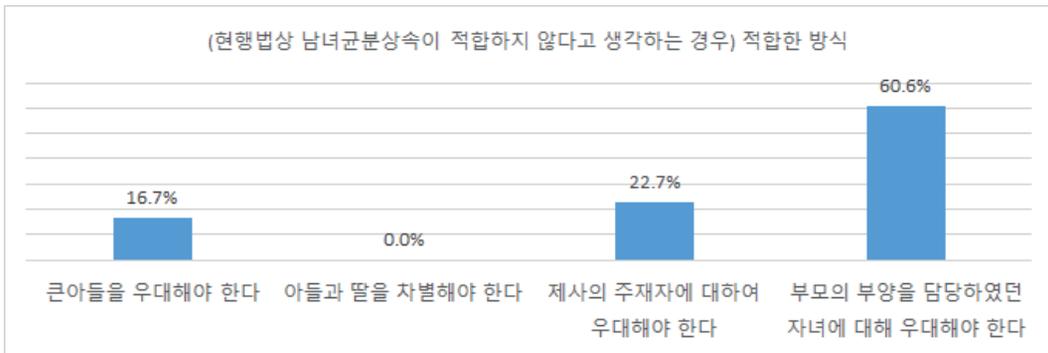
구 분	적합함	적합하지 않음	계	χ^2	
직업	관리직/전문직	48(78.7)	13(21.3)	61(100.0)	10.357*
	사무직/판매직	63(90.0)	7(10.0)	70(100.0)	
	서비스직	124(88.6)	16(11.4)	140(100.0)	
	농림어업직	64(77.1)	19(22.9)	83(100.0)	
	기타(조립단순노무기타)	91(89.2)	11(10.8)	102(100.0)	
	계	390(85.5)	66(14.5)	456(100.0)	
건강 상태	좋음	262(87.9)	36(12.1)	298(100.0)	24.280***
	보통	96(89.7)	11(10.3)	107(100.0)	
	좋지 않음	32(62.7)	19(37.3)	51(100.0)	
계	390(85.5)	66(14.5)	456(100.0)		

* p < .05, ** p < .01, *** p < .001

2)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방식

- 남녀균분상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 대한 우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음

[그림 3-55]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



- 남녀균분상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은 남녀 모두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 대한 우대가 가장 높고, 제사의 주재자에 대한 우대는 여성이 조금 더 높고,

장자 우대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구간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 대한 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자 우대와 제자의 주재자에 대한 우대가 조금 더 높음.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60> (현행법상 남녀균분상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합한 방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큰아들을 우대해야 한다	아들과 딸을 차별해야 한다	제사의 주재자에 대하여 우대해야 한다	부모의 부양을 담당 자녀에 대해 우대해야 한다	계	χ^2
성	여성	2(6.3)	0(0.0)	8(25.0)	22(68.8)	4.865
	남성	9(26.5)	0(0.0)	7(20.6)	18(52.9)	
	계	11(16.7)	0(0.0)	15(22.7)	40(60.6)	
연령	40대	4(23.5)	0(0.0)	5(29.4)	8(47.1)	2.473
	50대	1(8.3)	0(0.0)	2(16.7)	9(75.0)	
	60대 이상	6(16.2)	0(0.0)	8(21.6)	23(62.2)	
	계	11(16.7)	0(0.0)	15(22.7)	40(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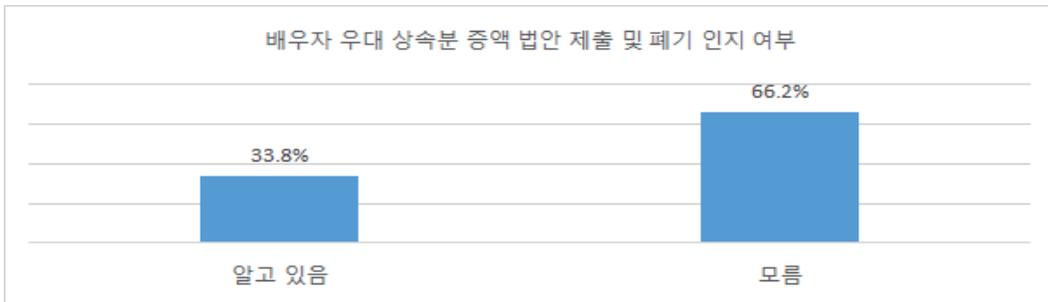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다.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에 대한 인식

1)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 인지 여부

- 현행법 상 자녀의 1.5배를 받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혼인 중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5할(상속 재산의 절반)로 해야 한다’는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민법개정안이 2006년 11월에 제출되었다가 2008년 5월에 폐기된 내용을 1/3가량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음 33.8%, 모름 66.2%로 1/3 가량만 해당 법안 제출 및 폐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6]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인지 여부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은 남녀 모두 모름 비율이 더 높고, 이에 대해 알고 있던 비율은 남성이 9.2%p 더 높아 남성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은 모든 연령대에서 모름 비율이 더 높고,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60대 이상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61>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 인지 여부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χ^2
성	여성	77(29.3)	186(70.7)	4.960*
	남성	99(38.5)	158(61.5)	
	계	176(33.8)	344(66.2)	
연령	40대	61(39.6)	93(60.4)	4.312
	50대	53(34.4)	101(65.6)	
	60대 이상	62(29.2)	150(70.8)	
	계	176(33.8)	344(66.2)	

* p < .05, ** p < .01, *** p < .001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은 거주별로도 모두 모름이 더 높고, 이에 대해 알고 있던 비율은 서귀포시가 45.1%로 제주시보다 16.3%p 더 높음. 또한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이 사실에 대해 12.2%p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별로도 모두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을 모름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알고 있음 비율은 300만원~500만원 미만 39.2%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소득구간으로 나타남. 직업별로도 모두 해당 법안의 제출 및 폐기 사실을 모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음은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45.2%, 관리직/전문직 42.6%로 두 직종의 인지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도 모두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을 모름 비율이 더 높음. 건강상태가 보통은 모름 비율이 81.7%로 특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알고 있음 비율은 건강상태 좋음이 41.6%로 건강상태 보통이거나 좋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층의식별로는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에 대한 인지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남. 해당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 비율은 상층에서 82.1%로 가장 높고 중간층과 하층은 모름 비율이 더 높아 해당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상층에서 분명하게 높게 나타남

〈표 3-62〉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폐기 인지 여부 - 거주지, 맞벌이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 분	알고 있음	모름	계	χ^2
제주시	103(28.8)	255(71.2)	358(100.0)	13.219***
거주지 서귀포시	73(45.1)	89(54.9)	162(100.0)	
계	176(33.8)	344(66.2)	520(100.0)	
맞벌이 여부 예	113(36.7)	195(63.3)	308(100.0)	5.229*
아니오	26(24.5)	80(75.5)	106(100.0)	
계	139(33.6)	275(66.4)	414(10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1(23.7)	100(76.3)	131(100.0)	8.567*
300만원-500만원 미만	62(39.2)	96(60.8)	158(100.0)	
500만원 이상	83(35.9)	148(64.1)	231(100.0)	
계	176(33.8)	344(66.2)	520(100.0)	
직업 관리직/전문직	29(42.6)	39(57.4)	68(100.0)	19.713**
사무직/판매직	22(29.3)	53(70.7)	75(100.0)	
서비스직	49(32.0)	104(68.0)	153(100.0)	
농림어업직	19(19.4)	79(80.6)	98(100.0)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57(45.2)	69(54.8)	126(100.0)	
계	176(33.8)	344(66.2)	5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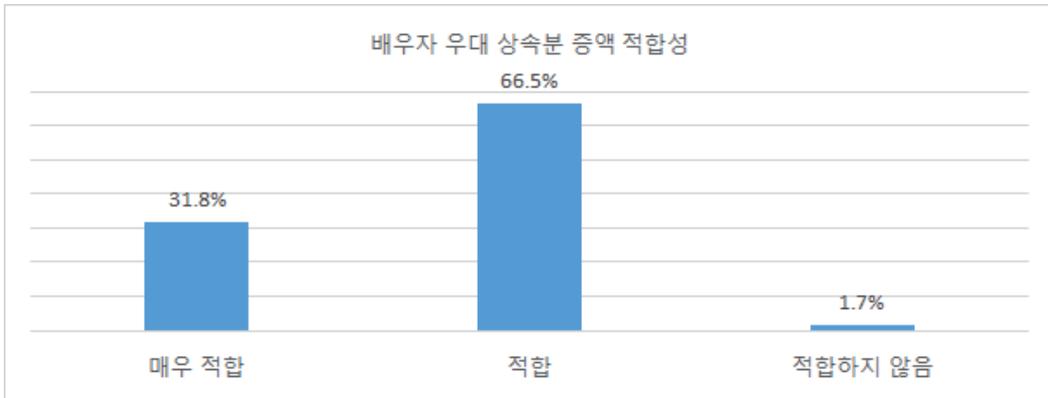
건강 상태	좋음	138(41.6)	194(58.4)	332(100.0)	25098***
	보통	23(18.3)	103(81.7)	126(100.0)	
	좋지 않음	15(24.2)	47(75.8)	62(100.0)	
	계	176(33.8)	344(66.2)	520(100.0)	
계층 인식	상층	23(82.1)	5(17.9)	28(100.0)	31.081***
	중간층	142(31.4)	310(68.6)	452(100.0)	
	하층	11(27.5)	29(72.5)	40(100.0)	
	계	176(33.8)	344(66.2)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2)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에 대하여 적합 66.5%, 매우 적합 31.8%, 적합하지 않음 1.7%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매우 적합 의견을 포함하면 98.3로 적합 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임

[그림 3-57]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여부는 성별, 연령별로도 모두 적합 인식이 가장 높고, 매우 적합도 30% 전후로 높게 나타남. 다만 성별, 연령별 모두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63〉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매우 적합	적합	적합하지 않음	계	χ^2	
성	여성	28(36.4)	49(63.6)	0(0.0)	77(100.0)	3.388
	남성	28(28.3)	68(68.7)	3(3.0)	99(100.0)	
	계	56(31.8)	117(66.5)	3(1.7)	176(100.0)	
연령	40대	22(36.1)	37(60.7)	2(3.3)	61(100.0)	2.915
	50대	15(28.3)	38(71.7)	0(0.0)	53(100.0)	
	60대 이상	19(30.6)	42(67.7)	1(1.6)	62(100.0)	
	계	56(31.8)	117(66.5)	3(1.7)	176(100.0)	

* p < .05, ** p < .01, *** p < .001

-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 법안 제출 및 폐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여부는 거주지별로도 모두 적합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우 적합이 높아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을 적합하다고 인식이 비율이 매우 높음. 다만 매우 적합은 서귀포시가 42.5%로 제주시보다 18.2%p 더 높게 나타남
- 계층의식별로는 상층은 매우 적합 78.3%, 적합 21.7%로 매우 적합하다는 인식이 다른 계층보다 뚜렷하게 높고, 중간층은 매우 적합 24.6%, 적합 73.2%, 적합하지 않음 2.1%, 하층은 매우 적합 27.3%, 적합 72.7%로 중간층과 하층은 적합 응답이 가장 높음

〈표 3-64〉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의 적합성 - 거주지, 계층의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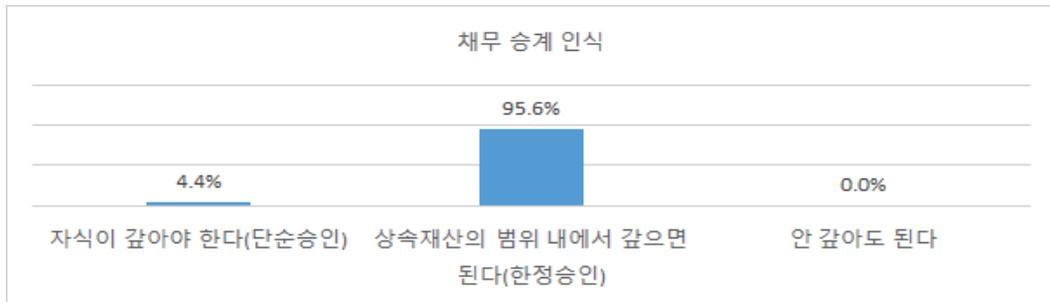
구 분	매우 적합	적합	적합하지 않음	계	χ^2	
거주지	제주시	25(24.3)	76(73.8)	2(1.9)	103(100.0)	6.522*
	서귀포시	31(42.5)	41(56.2)	1(1.4)	73(100.0)	
	계	56(31.8)	117(66.5)	3(1.7)	176(100.0)	
계층의식	상층	18(78.3)	5(21.7)	0(0.0)	23(100.0)	26.642***
	중간층	35(24.6)	104(73.2)	3(2.1)	142(100.0)	
	하층	3(27.3)	8(72.7)	0(0.0)	11(100.0)	
	계	56(31.8)	117(66.5)	3(1.7)	176(100.0)	

* p < .05, ** p < .01, *** p < .001

라. 채무 승계 인식

-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95.6%로 한정승인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고,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단순 승인은 4.4%에 그침

[그림 3-58] 채무 승계 인식



- 성별로도 남녀 모두 한정승인 인식이 가장 높음.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한정승인 지지가 가장 높고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96.8%, 96.2%로 높게 나타남. 다만 40대는 단순승인 지지가 6.5%로 다른 연령대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3-65> 채무 승계 인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자식이 갚아야 한다 (단순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된다 (한정승인)	안 갚아도 된다	계	χ^2
성	여성	11(4.2)	252(95.8)	0(0.0)	263(100.0)
	남성	12(4.7)	245(95.3)	0(0.0)	
	계	23(4.4)	497(95.6)	0(0.0)	
연령	40대	10(6.5)	144(93.5)	0(0.0)	154(100.0)
	50대	5(3.2)	149(96.8)	0(0.0)	154(100.0)
	60대 이상	8(3.8)	204(96.2)	0(0.0)	212(100.0)
	계	23(4.4)	497(95.6)	0(0.0)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 거주지와 맞벌이 여부별로도 한정승인 지지가 가장 높음. 한정승인 지지는 서귀포시 거주지가 98.8%로 더 높고, 단순승인 지지는 제주시가 5.9%로 서귀포시보다 4.7%p 더 높음. 또한 맞벌이 부부는 5.5%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보다 4.6%p 더 높음

〈표 3-66〉 채무 승계 인식 - 거주지, 맞벌이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자식이 값아야 한다 (단순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값으면 된다 (한정승인)	안 값아도 된다	계	χ^2
제주시	21(5.9)	337(94.1)	0(0.0)	358(100.0)	5.659*
거주지 서귀포시	2(1.2)	160(98.8)	0(0.0)	162(100.0)	
계	23(4.4)	497(95.6)	0(0.0)	520(100.0)	
예	17(5.5)	291(94.5)	0(0.0)	308(100.0)	3.971*
맞벌이 여부 아니오	1(0.9)	105(99.1)	0(0.0)	106(100.0)	
계	18(4.3)	396(95.7)	0(0.0)	414(100.0)	

* p < .05, ** p < .01, *** p < .001

마.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 인식

- 제사와 재산 상속에 대하여,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 82.5%,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17.5%로 나타나 제사 상속 여부가 재산 상속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9]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 인식



- 성별로도 남녀 모두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 남녀 모두 제사 상속이 재산 상속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의식 증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제사 상속이 재산 상속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3-67〉 제사상속과 재산 속의 관계 인식 - 성, 연령

단위 : 명, %

구 분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계	χ^2
성	여성	212(80.6)	51(19.4)	1.319
	남성	217(84.4)	40(15.6)	
	계	429(82.5)	91(17.5)	
연령	40대	106(68.8)	48(31.2)	28.379***
	50대	135(87.7)	19(12.3)	
	60대 이상	188(88.7)	24(11.3)	
	계	429(82.5)	91(17.5)	

* p < .05, ** p < .01, *** p < .001

-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제주시,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농림어업직, 건강상태 좋지 않음, 계층의식 하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도 모두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10.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300만원 미만에서 90.8%로 가장 높고 500만원 이상 81.0%, 300만원~500만원 미만 77.7% 순으로 300만원~500만원 가구소득자들이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 관계에 조금 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도 모두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는데 특히 농림어업직은 90.8%로 가장 높고 사무직/관리직이 68.0%로 나타나 농림어업직은 재산 상속분 결정에 제사 상속의 영향이 크고 상대적으로 사무직/관리직은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건강상태 나쁨이 93.5%로 가장 높음. 반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 관계에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계층의식별로는 중간층과 하층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층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제사를 모시

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각각 50.0%의 동물로 나타나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에 가장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8〉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의 관계 인식 - 거주지, 거주기간,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건강상태, 계층의식

단위 : 명, %

구 분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계	χ^2
제주시	307(85.8)	51(14.2)	358(100.0)	8.429**
거주지 서귀포시	122(75.3)	40(24.7)	162(100.0)	
계	429(82.5)	91(17.5)	520(100.0)	
월평균 가구 소득				9.062*
300만원 미만	119(90.8)	12(9.2)	131(100.0)	
300만원-500만원 미만	123(77.8)	35(22.2)	158(100.0)	
500만원 이상	187(81.0)	44(19.0)	231(100.0)	
계	429(82.5)	91(17.5)	520(100.0)	
직업				19.667**
관리직/전문직	57(83.8)	11(16.2)	68(100.0)	
사무직/판매직	51(68.0)	24(32.0)	75(100.0)	
서비스직	121(79.1)	32(20.9)	153(100.0)	
농림어업직	89(90.8)	9(9.2)	98(100.0)	
기능/조립/단순노무/기타	111(88.1)	15(11.9)	126(100.0)	
계	429(82.5)	91(17.5)	520(100.0)	
건강 상태				8.622*
좋음	263(79.2)	69(20.8)	332(100.0)	
보통	108(85.7)	18(14.3)	126(100.0)	
좋지 않음	58(93.5)	4(6.5)	62(100.0)	
계	429(82.5)	91(17.5)	520(100.0)	
계층 의식				21.950***
상층	14(50.0)	14(50.0)	28(100.0)	
중간층	380(84.1)	72(15.9)	452(100.0)	
하층	35(87.5)	5(12.5)	40(100.0)	
계	429(82.5)	91(17.5)	520(100.0)	

* p < .05, ** p < .01, *** p < .001

7. 소결 및 시사점

가. 요약 및 소결

1) 상속 또는 증여 경험

-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부동산의 상속이 남성에게 더 많이 이뤄지고, 부동산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아 부동산의 상속이 주로 아들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반면 딸은 현금 형태가 주를 이루며,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을 받은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장에서 다룬 노후복지패널 조사결과에 비해서는 제주지역이 형제·자매간 균등분배가 높지만 여전히 장남·장녀 우대 관습이 적지 않고 이러한 경향은 60대 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남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낮은 편임. 기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부모이며, 기대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지만 여성의 거주용 부동산 기대는 남성보다 낮음. 기대 유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내 생애 전부 활용하겠다는 생전 자기 소진 계획도 적지 않음
-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기대 유산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으며, 기대 유산의 활용 계획은 자녀에게 상속하려는 경우가 가장 많음. 여성은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에 비해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증여에 대한 기대가 높고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후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상속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16.8%에 그쳤고, 연령이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증여한 경험이 더 많고, 주로 현금을 증여한 경험이 주를 이룸. 앞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40대와 50대에도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재산의 상속 및 증여를 유예하고 있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여전히 높고, 기대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 역시 높지만 기대 유산의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적지 않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로 생전 자기 소진과 유산을 남길 여유 부족이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의 선호도 평균이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등형, 현실형, 전통형, 사회환원형 순으로 나타나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이 재산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대비형과 현실형, 평등형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산 상속 인식에 있어 남성보다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형 상속 인식 중에서도 부모 봉양 자녀에 대한 우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 부양 책임은 상속 인식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남

3) 재산 상속의 관습 실태 및 관행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경험이 73.3%로 높고, 아들과 장자 우대,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 형태의 차별이 행해짐. 제월전의 상속도 제사주재자보다 장자 상속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재산 상속 분쟁은 주로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하였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만족도는 2.42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4)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인식

- 재산 상속에 대한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와 적합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도 적합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남
- 제사 상속과 재산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사주재자 우대 인식이 높음

나. 시사점

- 제주사회의 재산 상속 인식은 탈전통적 과도기에 머물고 있음.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벗어나 평등적이고 현실적인 상속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못함. 탈전통적 상속 인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산의 형성은 부부 공동 노력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여성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배

-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재산의 분배는 전통적 관습에 의존하여 장자 또는 아들 우대 등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
- 성평등 인식 확산과 함께 성에 따른 차별적 재산 분배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고, 현행 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 및 적합성 인식도 높지만 제사주재자 우대와 60대 이상의 아들과 장남·장녀 우대 인식은 여전한
 - 관습적 상속 인식을 탈피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60대 이상을 위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 속의 남녀균분상속 사례를 활용하면 성평등 의식 고취와 함께 탈전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남녀균분상속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부모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어 이른 증여 요구가 있는 경우 자녀세대와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 세대 간 이해 촉진 노력이 필요함
- 50대와 60대는 이미 40대~50대에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들의 증여를 한 경험은 이에 비해 매우 적어 부모세대들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세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것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지가 높지만 노후불안 때문에 재산 분배 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여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지속적인 저성장 경제환경과 불평등 속에서 재산축적이 어려운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과 시기가 부모세대와 다를 수 있음
 - 최근에는 젠더 갈등 더불어 세대 갈등도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세대 갈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부모세대에는 은퇴 준비, 은퇴 후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자녀세대에는 금융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관계 교육이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음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심층면접

1. 조사개요
2. 증여자(부모세대)와 수증자의 인식 및 태도
3. 피상속인(부모세대)과 상속인의 인식 및 태도
4. 증여자의 노후보장과 수증자의 역할
5. 재산증여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6.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 제주사회에서는 적어도 2000년대 들어와서 증여와 상속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간에도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음. 즉 재산의 증여와 상속 방법, 시기,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었고, 그 해결 방법에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장에서는 피상속인/상속인 특성, 증여자/수증자 특성, 피상속인/상속인 기대치, 증여자/수증자 기대치, 자식이 상속인/수증자가 되어야 한 이유, 아들과 딸이라는 성별에 따른 증여와 상속의 불평등 등을 조사하고자 함

나.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시 재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직접 경험자, 간접 경험한 사실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경험자 등을 고려함
- 피상속인/상속인, 증여자/수증자 경험이 있는 4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16명을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함
 - 20대~30대 세대들은 심층면접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인식 변화 등을 확인함
 - 심층면접 대상자 이외에도 연구자가 수시로 조사 내용을 질문하여 분석 결과에 반영함
- 16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 도민 대상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면접 대상자는 소수라는 한계가 있음

2) 자료수집 및 분석

- 심층면접을 이행하기 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면접 대상자에게 예비조사 계획안을 설명함
 - 최종 선정된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전화로 조사 목적과 설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인터뷰 절차를 협의함
- 연구자는 면접 대상자와 사전에 면담 일정과 장소를 조정하여 계획대로 조사함

- 조사 장소는 면접 대상자의 이동거리, 인터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택이나 별도 장소로 정하였음
- 심층면접은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디지털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소요시간은 1시간 전후가 소요됨
- 자료녹음 및 내용 사용 동의서를 받고, 소정의 면접 사례비를 제공함
- 자료수집 후 분석 결과 도출 과정을 보면 녹음파일은 한글로 전사한 후 16명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 16명의 사례 분석 결과를 영역과 세부항목별로 재분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함
-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자료는 문장으로 재구조화하고, 일부는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술내용을 그대로 제시함

3) 조사 기간

- 2022년 6월 20일 ~ 7월 30일

다. 조사 내용 및 서술 방법

- 심층면접 설문지는 가이드에 해당하며, 인터뷰 시점에서 면접 대상자에 따라 부분 수정함
- 심층면접 조사 영역은 크게 재산 증여와 재산 상속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절차와 방법, 성차별 정도,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 미래 대안 등을 포함하였음
- 심층면접 분석 결과는 피면접자의 인권과 개인적 입장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구술내용을 제시할 때는 사례 번호(성별, 나이 제시)로 구분함
- 사례 번호는 면접 대상자의 성씨를 기준삼아 가나다순으로 부여하였고, 본문에서는 ‘사례 1, 사례 2’등으로 분류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표 4-1〉 심층면접 조사 내용

영역	세부 내용
증여자(부모세대)의 인식, 수증자의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자(부모세대)의 고정관념 · 재산증여 시 고려사항 · 증여자의 재산증여 참여권한 · 증여 시기, 방법, 규모 ·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대치 · 증여에 따른 성차별 정도 · 재산증여에 따른 형제간 갈등 구조
피상속인(부모세대)의 인식, 상속인의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부모세대)의 고정관념 · 재산 상속 시 고려사항 ·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참여권한 · 상속 시기, 방법, 규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대치 · 상속에 따른 성차별 정도 · 재산 상속에 따른 형제간 갈등 구조
재산 증여/재산 상속과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돌봄 · 유교식 제사의례 등 가문유지의 주도적 역할 담당 · 양자제도
재산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대별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가치관 변화 · 노후준비와 증여 문제 · 사회제도의 변화와 상속 문제

라.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4-2>와 같음
 -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10명, 남성 6명 등 16명임
 -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 1명, 50대 6명, 60대 8명, 70대 1명 등 16명임. 50~60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수증자/상속인의 지위에서 증여자/피상속인의 지위로 이동 중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데 유리함
- 심층면접 대상자의 본적과 주 거주지의 분포를 통해 가능하면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풍습과 인식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기혼 남성인 경우 처가 지역을 제시하였고, 기혼 여성인 경우 시가 지역을 제시하였음
- 형제 유형에서 기혼 여성인 경우 남편 형제 수를 제시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서열도 제시하였음. 일반적으로 수증자/상속인은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 와서야 딸들에게도 증여/상속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음
 - 아들은 장남과 차남 등 서열에 따라 증여/상속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딸은 친정에서 수증자/상속인이 되므로 형제 유형을 제시하였음
- 결혼 유무에 따라 증여 시기와 규모에 영향을 미침.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증여/상속 방법, 증여자/수증자의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 심층면접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번호	출생연도/성별	본적/주거주지	형제 유형(서열)	결혼(자녀)
1	1953년생(69세, 여)	제주시 동지역/좌동	6남 4녀(6번)	미혼
2	1965년생(58세, 남)	제주시 동지역(처가: 안덕면)	4남(3번)	1남 1녀
3	1960년생(63세, 남)	제주시 동지역 (처가: 서귀포시 동지역)	2남 3녀(막내)	1남 1녀
4	1963년생(60세, 남)	조천읍/제주시 동지역	3남 3녀(막내)	2남
5	1961년생(62세, 여)	서귀포시 동지역/제주시 동지역 (시가: 성산읍)	남편: 3남 3녀(2번) 본인: 1남 5녀(1번)	1남 1녀
6	1947년생(76세, 여)	한림읍/제주시 동지역 (시가: 한림읍)	남편: 1남 본인: 2녀(1번)	2남 2녀
7	1964년생(59세, 여)	한림읍/제주시 동지역 (시가: 제주시 동지역)	남편: 2남 1녀(2번) 본인: 1남 6녀(4번)	2남
8	1972년생(51세, 남)	대정읍/안덕면 (처가: 제주시 동지역)	3남(막내)	1남 1녀
9	1983년생(40세, 남)	안덕면/제주시 동지역	1남 2녀(1번)	미혼
10	1968년생(55세, 여)	성산읍/제주시 동지역	3남 2녀(3번)	미혼
11	1960년생(63세, 남)	서귀포시 동지역/좌동 (처가: 서귀포시 동지역)	5남(1번)	1남
12	1959년생(64세, 여)	한림읍/제주시 동지역 (시가: 안덕면)	남편: 5남 1녀(1번) 본인: 4남 1녀(막내)	1남 2녀
13	1957년생(66세, 여)	대정읍/제주시 동지역	1남 6녀(1번)	미혼
14	1965년생(58세, 여)	제주시 동지역/제주시 동지역 (시가: 제주시 동지역)	남편: 1남 2녀(1번) 본인: 4남 2녀(막내)	2남 1녀
15	1972년생(52세, 여)	표선면/제주시 동지역	2남 3녀(2번)	미혼
16	1958년생(65세, 여)	표선면/서귀포시 동지역 (시가: 서귀포시 동지역)	남편: 8남 1녀(5번) 본인: 2남 3녀(장녀)	2남

2. 증여자(부모세대)와 수증자의 인식 및 태도

가. 증여자(부모세대)의 재산증여에 대한 고정관념

1) 재산증여에 대한 증여자의 태도

- 일반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증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
 - 우리나라 부모들은 절약정신을 발휘하여 일생을 살다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80대 부모세대는 재산이 있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해 주고 싶어 하고 장남 위주의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음
 - 반면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증여 지분에 따라 갈등과 대립의 길로 접어드는 사례를 볼 수 있음
- 40대의 한 면담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재산증여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함
- 자식세대들이 30대로 접어들고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이 달라짐. 실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나 적극적으로 도움이 청하지는 않음
- 부모의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대 자식세대 입장에서는 향후 부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노후까지 편안히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고 증여해 준다면 별문제는 없으나 부모도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음
 - 30대~40대 젊은이 중에는 결혼비용 등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음
- 60대 면담자는 부모의 재산증여는 부모의 권리이므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나 마음속으로는 재산증여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다고 함

우리아 권한이 없주마씨. 부모들이 줘야 가지는 거고. 더구나 딸이어서 말 못하주. 주문 고마운 거고.

- 사례 12(여, 60대)

2) 재산증여 시 고려 사항

- 증여자의 입장에서 증여시기를 정할 때 자식의 성실성과 경제적 자립도를 고려함. 간혹 자신의 증여분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 부모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있음
- 자식 중에 미리 증여해 주기를 요청할 때 부모나 형제들이 반대하여 증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함. 이 경우 수증자는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증여하지 않는다고 여김
- 한 면담자는 부친(80대)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어 하는데, 딸들이 증여지분을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생각함
 - 재산 일부는 이미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다른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봉양이나 제사의례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음. 반면 증여할 생각이 없는 딸들에게는 친정 제사의례 준비와 참석을 요구하는 입장임

지금도 다 땅은 넘어 갔고 집은 이신디. 아버지가 집도 두 채는 다 아들 (주고).
- 사례 7(여, 50대)

- 50대 면담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식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형제간에 재산 분쟁이 없었다고 함. 즉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배했음
 - 장남과 차남도 차등 분배했고, 딸들에게도 아들보다 조금 적게 증여했음

아버지가 워낙에 깔끔하게 그런 정리 이런 거를 잘 하셨어. 평수가 좀 다르지. 근데 아버지 나름대로 살고 있는 집터랑 주변 밭은 큰아들에게 주고, 두 번째 아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차등은 하면서 했을 것 같아.
- 사례 14(여, 50대)

3) 증여자의 재산 분배 결정권

- 8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남편 명의로 재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증여 방법 결정권도 많은 편임
 - 집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남편의 결정에 아내는 동의하는 정도이고, 아내 입장에서 딸들에게도 증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편임

- 70대 부모세대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나 어머니의 증여 결정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은 편임. 60대로 내려오면 부부가 협의하여 재산 분배 기준을 세우는 추세임

경헌디예, 차라리 아무것도 엇인 집은예 재산 싸움 같은 거 할 게 없으니까 기대도 안하는디 어중간하게 이거 골고루 족족 나눠주지도 못헿 헿 때는 이제 싸움이 나는 거라. 계난 식계멍 질 하는 대신 그 재산은 다 나만 갖고정 허주. - 사례 12(여, 60대)

- 한 면담자 모친은 80대가 넘었으나 아직은 재산증여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았고 자식들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음. 다만 어머니의 성품을 볼 때 증여할 시점이 되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라 여김
- 자식에 따라 교육비를 많이 지원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는 증여할 시점에서는 이점도 고려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나. 증여자의 재산 증여 시기

1) 증여자의 증여 필요성 인정 시점

- 70대 면담자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가 좋다는 입장임. 다만 자신의 노후자금은 남겨두고 증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후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음
- 집안에 따라 부모 재산을 넘보면서 증여를 요구하는데, 이때 그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가족 간 분쟁이 지속됨
-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 명의로 있거나 증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식들은 자신의 증여지분을 요구하면서 어머니와 갈등을 빚기도 함
- 부모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는데 딸이 아들보다 지분이 적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증여해 달라며 투쟁하는 집안도 있음. 부모 입장에서 아들은 제사의례를 전담하는 몫으로 딸보다 증여지분이 많은데, 딸은 본인이 제사명절을 하겠다면서 아들과 균등한 증여지분을 요구하기도 함
- 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식에게 현금을 조금 증여할 때 다른 형제들이 모르게 주는 집안이 있음.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와 형제간에도 작은 불만이 쌓이게 됨

- 한 사례를 보면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 줄 때 미혼의 딸에게도 그에 합당한 집을 마련해 주었음. 이는 아들에게는 집을 사주고 딸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여겨서 부모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임
- 이때 집 가격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부모로서 나름대로 증여방법을 선택하는 것임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 딸이 시집을 가고 아들은 남아 있으면 재산증여를 지금 시작을 안 하잖아. 그런데 딸들이 와서 집 살 거니까 돈 보태주시오 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이미 그건 증여가 되는 거잖아. - 사례 11(남, 60대)

2) 남편 사망 직후 또는 증여자의 재산 정리 시점

- 한 면담자는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소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면서 자신의 동산도 같이 증여하였음. 현금은 아들과 딸에게 균등 증여하고 부동산은 차등으로 증여하였음
- 남편 사망 후 아내와 자식들의 지분을 배분하는데, 이때 상속과 증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
- 한 면담자는 남편 사망 후에 법률 상담을 하고 재산 목록을 확인한 다음 자식들에게 증여 사실을 공표하고 동의하도록 했음. 이 경우 자식들은 어머니의 증여 방법에 순응했고, 증여에 따른 갈등이 없음
-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언처럼 재산증여 내역을 아내와 의논하는 집안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내가 그 유언을 잘 이행하면서 상속 갈등은 발생하지 않음
- 아들이 제사명절 등 유교식 제사의례 담당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상전 등 재산 일부를 더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현금을 증여하는 집안이 있음
- 이 경우 어머니는 자식 간에 증여지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자식들이 소유권 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함
-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사망 후에 장자에게 상속한다고 공언했으며, 자식들도 동의한 상태에서 상속 분쟁은 없을 것이라 믿음

이제 아빠 살아계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내가 현찰로 너네 똑같이 주마. 이거에 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것이 없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장 인감 도장을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집은 내가 죽으면 오빠한테 줘 볼 거. - 사례 6(여, 70대)

- 한 사례를 보면 남편이 사망하자 재산은 아내 명의로 전부 이전하여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음. 본인이 나이가 들자 아들과 딸에게 차등으로 증여하였음
- 80대 중반의 어머니는 본인의 노후자금은 남겨두고, 자식들에게 증여하였으며, 오히려 자식들이 균등분배를 요구해서 증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음. 자식들은 60대 이하 세대이고, 손자들은 30대 이하부터 10대까지 해당하는데,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증여하였음

다. 재산증여에 따른 성별 인식 차이

1) 증여 대상자의 기대 심리

-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해 주겠다고 할 때 바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음. 또한 상속 시점에서는 부모의 바람대로 분배되지 않고 형제들이 법적인 상속지분을 요구하기도 함
- 한 사례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줌. 부모가 살던 집은 딸들에게 상속하기로 되어 있어서 아들들도 동의하였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남은 장손이 상속인이라고 하면서 반대했고, 차남 이하는 아버지 유언대로 딸들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여 상속 행위가 중단되었음
 - 장손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한 당사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 증여하였음
 - 따라서 본인이 상속인일 때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더 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에게 증여 할 때는 공평하게 처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음
- 40대 초반의 면담자는 결혼비용과 이후 삶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 지분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음. 결혼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발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 비용과 거주지 준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결혼을 망설이게 됨
 - 부모님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음

[결혼 초기에는 처가 덕을 보는 친구도 있거든요. 저희 주위에. 그러니까 집도 해주고 장사할 때 장사 비용도 주고. 그거는 집안마다 다르긴 한데. - 사례 2(남, 50대)]

- 반면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 이런 인식의 변화와 경제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비혼, 미혼) 증가하고 있음

2) 재산 증여와 재산 상속의 경계

-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재산증여와 상속이 동시에 이루어짐. 예를 들어 집안 재산 소유권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와 자식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됨
 - 이 경우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상속할 경우 어머니 사망 시 또다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를 한 번에 처리하는 집안이 많음
- 재산증여 과정에서 명의변경이 안 된 경우에는 자손대까지 재산 소유권이 내려가서 수증자가 바뀌게 됨. 혈연중심의 가족 간에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이 구두로 진행되고 공식적으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몇십 년 지난 현재에 와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음
- 한 사례를 보면 조부는 장남 또는 장손을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재산 이전을 계획했으나 재산증여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조부 자식들 간 균등분배 대상이 됨
 - 부모의 재산목록을 구두로 전달받고 증여가 완료된 줄 알고 지내다가 자식대에 재산 소유권을 확인해 보면 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됨

우리 할아버님이 사업 수완은 좋으셨는데 뭘 사면 등록을 안 해 놔예. 등기.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좀 똑똑한 형제들이 찾아서 다 가져가 버린 그런 부분인데.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삼촌 이름으로 돼 있었고. 막 이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 사례 2(남, 50대)

- 증여는 부모가 하는 것이므로 자식들이 수용할 수 있으나 상속은 부모 사망 후에 자식들이 주체가 되므로 서로 자신의 몫을 계산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이때 배우자(주로 어머니. 재산은 거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음)와 장자(장남, 장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
 - 가족들이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따라 가족공동체가 유지되느냐 해체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음
- 재산증여 시점이 오래되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짐. 현금증여 당시 분배 규모는 무시하고 현재 시점에서 부모의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딸들에게도 상속하는 집안이 있음

3) 재산증여 방법과 규모

-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부모 사후 상속문제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의 폭을 확대하는 집안이 늘어나고 있음
- 자식이 결혼하면 전세금이나 주택 매입 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며, 이 증여 방법은 이미 진행되고 있음
 - 간혹 장남이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사업자금 등을 지원해 줄 수 있음
 - 이때 부모 재산이 장남에게 많이 증여되면 차남의 상속지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가족 간에 불화가 나타남
- 부모 입장에서는 상속할 지분을 미리 현금화하여 증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갈등을 차단 하기도 함.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는 딸의 유학비용을 지원해 주고 싶었으나 다른 자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산증여 방법을 택했음
 - 장남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자금으로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부모와 형제간의 갈등 요인을 없앴음
- 딸에게 주는 증여 방식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토지를 증여할 경우 결혼한 딸의 집으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딸에게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향이 있음

자기네 집안이 남의 집안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돈으로는 주면 돈은 뭐 소유가 없
 짚아요. 그래서 땅을 안 주고. - 사례 10(여, 50대)

-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를 많이 지원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등 자식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이 경우 형제들도 누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됨
 - 교육비 등 부모로서 지원한 것은 그 당시 일이고 상속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 될 뿐이어서 상속지분 분쟁이 나타나기도 함
- 한 면담자는 자신의 몫을 손자들에게 직접 증여했다고 함. 이는 조부모의 피땀 어린 재산으로 그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를 부여했음
 - 수증자가 증여세도 부담하도록 하고, 이후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당부도

했음. 결국 재산 증여는 누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에 따라 자손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음

「 나도 이거 할머니가 물려준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가이도 세금 내고 그리고 저기 할머니가 저기 이거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정리하면서 할머니가 너희 뚝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 돈은 다른 돈이랑 의미가 다르니까 너희들 앞으로 저기 저 외사촌이지만 저기 잘 이렇게 울 타리 돼 줘야 될 거여. - 사례 16(여, 60대) 」

- 집안에 따라 부모가 증여하거나 상속하게 될 때 자식에게 상속했다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번거로우니까 처음부터 조부가 손자 명의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음

4) 수증자의 성별에 따른 재산증여 지분 차

-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딸들은 부모를 도와서 농사일하면서 재산 증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반면 아들은 우대받으면서 농사일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재산 수증자 1 순위가 됨
- 부모는 딸들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참작하고 증여지분을 고려해 준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함
- 재산증여 시점에서 딸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딸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게 작용함. 또한 자식에 따라서 자신의 증여지분을 요구할 경우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함

「 아들은 일 안해주게. 딸이 더 하영 허지 그래서 우리 언니네가 그 땅을 200평씩 가지켤 하는 이유가 그거라. 우리 어릴 때 계속 영허고 영허고 했던 건데. - 사례 7(여, 50대) 」

- 한 사례를 보면 70대 부모는 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고 현금으로 증여해 주고, 아들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음. 이때 아버지는 딸들에게 아들보다 적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딸들도 수용해서 원만하게 증여가 되었음
- 또 한 사례를 보면 60대 중반 부모인데 딸이 재산에 욕심이 많아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 맘대로 아들과 딸에게 차등으로 증여했다가는 집안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균등분배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음

-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지 않거나 늦어지고 있어서 제사명절과 벌초 등 가문유지 의식에 모두 참여가 가능함

어머들 걷는 말따나 딸들 욕심 세가지고 저거 안 된댄 행 우리도 n분의1 해야 된댄 하는 집도 있고.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아, 저 딸 때문에이.' 허멍 경 걱정하는 데도 있어.
- 사례 16(여, 60대)

- 60대 면담자는 외국에 있는 친정 오빠가 조상전을 상속받은 후에 고향에 있는 여동생에게 증여해 주었음
- 오빠 입장에서는 남자 형제도 있으나 여동생이 집안을 돌보고 고생했다고 여겨서 자신의 몫을 여동생에 증여했음. 이 경우는 아내와 자식이 동의해 주었음
- 제주사회에서는 적어도 2000년대 초부터는 딸들도 당연히 증여와 상속 대상자라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딸들을 제외할 경우, 또는 지분을 적게 줄 경우 분쟁이 일어남
- 현재 우리사회는 재산증여와 상속에 따른 윤리적 절차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가족 간의 합의가 파괴되어 법률에 기대어 처리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 증여자이든 수증자이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

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갈등 양상

1) 재산증여 후 수증자의 태도 변화

-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증여와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서 노인들 사이에 경계하는 말이 있음. 부모의 입장에서 재산이 있으면 노후자금으로 봐줘야 하고 자신들이 사망한 후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자식들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임
- 부모가 노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도 모른 채하는 비정한 자식들도 있음. 이에 노년층에서는 증여하고 난 다음 오래 살게 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되고 있음
- 부모세대들의 주요 관심 사항은 재산 상속과 증여 방법, 시기, 편안한 죽음 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자신들도 증여시기를 고민하는 추세임

- 부모세대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다가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을 잘 치르고 남아있는 자식들이 평화롭게 상속지분을 분배하기를 바람
- 70대 면담자는 자신의 주변에서는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음. 다만 재산을 증여하고 난 다음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없을 경우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되므로 증여보다는 상속도 좋다는 의견이 있음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증여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쓸 만큼 쓰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놔두지 뭐. 뭘 증여하느냐고. 만약에 증여 다 해주고 집 하나 있다고 하면은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감당해. -사례 1(여, 60대)]

- 부모가 적당한 시기에 증여할 때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재산을 받은 자식이 부모봉양을 소홀히 해도 할 말이 없음. 간혹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경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지 않은 딸이 담당하기도 함
- 형제간의 우애와 장남의 품성에 따라 수증자 간의 갈등 정도가 달라짐. 부모 간병비가 필요하게 되면 장남은 증여지분도 많으므로 그에 맞게 많이 부담하고, 그 외 형제들은 차등으로 분담하는 집안도 있음
- 집안에 따라서는 부모돌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증여지분과 장남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자식 간에 갈등이 발생함. 이는 재산을 증여한 다음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끝까지 돌봄에 참여할 자식이 드물다는 뜻임

2) 수증자 간 대립 양상

- 부모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식에 따라 자신의 몫을 더 요구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분쟁이 일어남
 - 50대~60대 자식세대들도 자신의 증여지분이 적다고 여기면 아들과 딸 구분 없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음
- 부모는 장남과 차남에게 차등으로 증여하기는 해도 섭섭하지 않게 증여했다고 생각하는 데, 차남 입장에서는 재산 대비 증여지분이 적다고 여겨서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에는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사례도 있음
-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되자 다른 지방에 살고 있던 장녀가 어

- 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왔음. 다른 형제들은 고맙다고 여겼는데 어머니 사망 후에 보니까 장녀는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였음
- 이후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갔으며 형제관계는 단절되었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증여할 경우 부모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함
 -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비(유학비용)와 결혼 후 생활비까지 전부 부담했고, 건물 한 채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았는데도 그 아들이 40대가 넘어서 부모에게 재산증여를 요구했음
 - 어머니가 증여해 주지 않자 아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낸 자금 금액과 지급일시 등 증여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승소하였음. 이후 이 집안의 혈연관계는 파괴되었음
 - 한 사례를 보면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과수원을 증여하게 되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싶어 했음. 이때 장녀가 형제들에게 일정부분 공평하게 증여지분 분배 방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이행되었음. 이 경우 증여 이후 가족 간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함
 - 증여 시점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좀 더 많은 지분을 주고 그 나머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배하였음
 - 증여 후에 자식들이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소홀히 할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해서 어머니에게 돌려드린다고 약속했음

3) 자식 위주의 재산 증여 관습

-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나이 들고 병이 나면 간병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노후를 위해서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 부모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자금을 남겨 둔다고 해도 그 기간을 예상하지 못함. 따라서 증여하고 난 다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식들은 부모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외면할 수도 있음
- 부모세대들도 증여보다는 상속이 낫다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음. 이는 부모 생전에 증여해 버리면 불효자를 만들게 된다는 뜻임

증여의 문제점이 그런 거라. 쓰다가에 목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다 준 자식한테 내놓으면 허민 싸움범벅밖에 더 되나. 경허난이 상속이 나올 거 다행. 쓰다 어시민 말고.
- 사례 5(여, 60대)

- 아들 중심으로 재산을 증여한 상태에서 그 아들에게는 필요한 일들을 요구하지 못하고, 만만한 딸에게는 돌봄을 요청함. 이때 딸에게는 증여를 해 주지 않거나 그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음
- 특히 아들에게 증여할 때 세금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은 아들이 보면서 부모돌봄은 딸에게 전가될 경우 그 딸들의 원망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음

자식이 행해야 될 봉양의 몫은 같이 동네에 사는 딸들이나 이 제주도에 사는 딸들한테 전담하면서 재산은 이제 아들에게 주는 이 모순.
- 사례 10(여, 50대)

- 결국에는 부모들이 불공정한 행동을 하고 자식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불평하게 되므로, 부모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자식을 비롯하여 가족 간의 평화공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최근 들어 제주사회에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갈등이 집안마다 이슈가 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증여와 상속 방법은 물론 그 대상자의 다양화 등에 변화가 있어야 함

3. 피상속인(부모세대)과 상속인의 인식 및 태도

가. 피상속인(부모세대)의 재산 상속에 대한 고정관념

1) 재산 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태도

- 현재 재산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가족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까지 간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음. 이는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식들의 상속지분 요구가 다르기 때문임

- 8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장남에게 일괄 상속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장남 위주의 재산 상속이 당연하다고 여김
 - 장남에게 상속할 경우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위 재산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음
- 7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상속인이거나 수증자인 경우가 드문 편임. 세대에 따라 집안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으나 대체로 자수성가한 세대에 해당되므로 본인들이 상속인이기보다는 피상속인인 경우가 많음
 - 이 세대 부모들은 재산 상속보다는 교육기회를 많이 주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적극적이었음
- 부모 입장에서는 고생하고 절약하여 재산을 축적하면 최종적으로 자식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 함. 60대 부모세대들도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 증여가 되었든 상속이 되었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강함

내가 다 벌어들인 말든 하여간 살다가 죽을 때 집 하나쯤은 줘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 하나씩은 주면 자기도 조금 여유롭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물론 자기도 벌어서 써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지.
 - 사례 11(남, 60대)

- 제주사회도 유교적인 관습에 따라 장남에게 재산 상속과 더불어 가족의례 전담 의무가 주어졌음. 이때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은 대대로 부유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자식은 대대로 궁핍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장남과 차차남 간에도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음

2) 상속 대상자의 기대 심리

- 제주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상속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음.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 규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증여와 상속 분쟁이란 말이 일상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열심히 생활하면서 절약하여 집 한 채 정도 장만하는데 어느 날 친구를 보니까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허무함과 박탈감 등 만감이 교차한다는 의견이 있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평생에서 집 하나 살까 말까 겨우 이렇게 샀는데 누구는 어느 날 갑자기 1만 평 받았다, 5천 평 받았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부모 잘 만나서 헛댄 굉장히 위화감 느끼고 분노를 하더라고
- 사례 13(여, 60대)

- 상속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 믿기 때문임.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이 유리하다고 보고 부모가 되면 자식들의 삶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려는 생각이 강함
-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좋다고 여김. 반면 사람들이 재산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상속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60대 부모세대에서 30대 이하 자녀세대를 보면 부모의 재산에 크게 관심이 없음.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모 재산은 부모의 것이고 자신들과 크게 관계없다고 여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녀들끼리는. 그러니까 제주도 부동산 바람이 불면서 그거로 인한 소송이,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소송을 걸거나 이러면 가장 큰 고통은 엄마, 부모님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좀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들은 엄마께서는 그건 뭐, 내가 내 마음이지라고 하셨다.
- 사례 10(여, 50대)

3)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분배 결정권

- 제주사회에서 80대 이상 부모세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장남 중심의 상속이 꼭 지켜진 것은 아님. 어머니의 주장이 강한 집안인 경우 조상전이어도 차남에게 많은 지분을 증여해 주고 장남에게는 일부만 증여함
 - 이 경우 가문유지에 필요한 각종 의례와 행사 담당은 장남에게 그대로 이동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존재함
 - 장남은 부모에게 순종형이어서 부모의 처분을 수용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속지분이 줄어들고 장손의 의무는 여전히 무거운 경우 자신보다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 부담이 전이될 것을 염려함
- 한 면담자의 모친은 4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고 5남매를 교육시키고 자립능력을 길러

주었음.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토지도 찾아내었음

- 재산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아들이름으로 상속해 주자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반대했음. 이 사례는 어머니가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아들과 딸에게 나뉘도록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입장을 보여줌
- 현재 아들이 미혼이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모르니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음

[사람 마음이라는 건 돈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마 이름으로 되는 건 자식이 다 n분의 1의 남동생 이름으로 되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나중에는 이게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하셨어요. - 사례 10(여, 50대)]

나. 재산 상속에 따른 성별 인식 차

1) 재산 상속 이행 시점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주로 어머니)도 증여하지 않고 놔두면 최종적으로는 상속으로 이어짐
- 한 사례를 보면 남편이 사망한 후 자식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음(3층 건물). 아들은 단독 상속을 주장하고 딸들은 분배를 요구했음
 -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봉양할 시점이 되자 아들은 봉양의무에 참여하지 않았고, 딸이 봉양의무를 전담하였음.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재산 상속에 분쟁이 발생했음
 - 아들은 자신의 책무는 이행하지 않고 상속지분만 요구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 진행되지 못했고, 형제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 한 면담자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큰아들이 찾아내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해 버려서 다른 가족들이 그대로 수용하였음
 - 관례상 장남 소유가 많고 차남은 집 한 채, 차차남은 거의 상속분이 없었음. 따라서 증여든 상속이든 재산문제가 대두되면 화목했던 집안에 갈등이 나타남

[돈 관계가 안 났으면 그렇게 화목했던 집안인데 재산만 나오면 평생 안 본다든지 우리만이 아니고 주위에. 상속은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상속이든 증여든, 그럴 재산도 없지만 가급적이

면 본인들이 해야죠. 저도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 사례 2(남, 50대)

- 재산 상속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처리하는 집안도 있음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와 자식들이 상의하여 재산을 분배한 사례가 있음
- 장녀가 중심이 되어 1명의 아들에게 토지 60%를 배정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5명의 딸들이 균등분배하였음
- 아버지는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양도하였고, 자식들은 부친 돌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첫째 조건이 아버지는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아버지 집 가서 자고, 세끼 밥을 한다는 걸 각서를 받았어.

- 사례 13(여, 60대)

2)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배우자)의 편견

- 증여는 부모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가진 사람(아버지 또는 어머니, 조부모 등)이 마음대로 결정함. 이때 가족들의 화목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증여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어느 한쪽에 몰아주면 갈등이 발생함
- 이에 비해 상속은 재산 소유주가 사망했을 때 진행되므로 가족들의 협의가 더욱더 중요함. 7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남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많은 편임. 이때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아내의 판단이 중요함
- 상속 시점에서 아버지의 유언이 불합리하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협의하여 각자의 몫을 상속받으면 됨. 그런데 간혹 어머니가 장남에게 치우쳐서 장남 몫을 과하게 책정하면 차남과 딸들도 자신들의 법정 상속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나타남
- 한 사례를 보면 아버지는 3형제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명의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음. 이때 장남이 어머니를 회유하여 혼자 상속해 버리고, 어머니 또한 3형제에게 감정으로 호소하여 전 재산을 장남에게 일괄 상속하였음
- 이 집안인 경우 어머니 돌봄과 장례 등은 모두 장남이 담당했고,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장남과 다른 형제간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외 형제들은 유대관계가 지속되었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큰메누리하고 큰아지방이 내려와 가지고 어머

니, 나가 어머니 죽을 때까지 책임지쿠다, 경행 이 과수원을 다 줘서. 그쪽 허멍하니까 우리는 다 우리 분배 값이 있는 줄 알아가지고 도장만 찍으레 갔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울멍불멍 큰아들이 잘 살아야 너네도 도와주고 다 할 거 아니냐 경해가지고 다 도장 찍어 줘거든.

- 사례 5(여, 60대)

- 한 면담자는 장남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풍습이라면 굳이 아들을 여러 명 낳을 필요가 있을까 회의가 든다고 했음. 따라서 재산증여든 상속이든 모든 자식에게 균등분배가 대안일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자식 간의 혈연관계망이 파괴되고, 그 자손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3) 관습에 따른 상속 방법

- 제주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장남과 차차남 등 아들 중심으로 상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가문유지 책무가 주어졌음. 즉 장남 위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제사명절 등 유교의례 이행과 가문유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임
- 80대 여성은 젊은 시절 물질과 농사일을 하면서 친정재산을 증식하는데 일조하였으나 그 재산은 아들에게만 상속되었음
- 제주도에 있는 땅 소유자가 사망하자 그 아내에게 자동 상속되었음. 이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딸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이 며느리가 상속하게 됨

재산 일구는 것도 어머니가 일궈는데 저기 그 땅은 다 아들들 몫인 거야. 어머니가 이제 아이고 저기 뼈 다 몽글멍 벌었는데 재산은 아들이 챙기고 이제 그 집 시집 온 며느리 몫인 거야.

- 사례 16(여, 60대)

- 제주도에서도 지역에 따라 장남 중심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이런 관습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음. 즉 아들들에게 재산 상속과 제사의례 분배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음
- 재산 상속의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데 이때 남아있는 배우자와 장자(장남, 장녀)의 역할이 중요함. 물론 차자들도 상속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자가 자신의 지분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

- 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 구두로 딸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형제간에 논란이 있었음. 아들이 누나와 여동생에게 상속에 필요한 동의를 요구했고, 딸들은 자신들의 지분이 있을 것이라 믿고 상속포기각서를 썼는데 결국에는 아들 혼자 상속해 버렸음
 -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해도 집안 망신이라며 참아서 일단락되었음
-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은 장남 중심으로 상속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모가 모은 재산은 차남과 딸에게 분배하는 사례가 많음. 즉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은 제사의례 담당자 몫으로 정해져 있고, 부모가 형성한 재산은 자신이 처분권을 갖고 있어서 장자에게 상속지분이 좀 더 많아짐
- 한 사례를 보면 60대 초반의 장남은 관습대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여겼는데 부친 사망 후에 형제(딸과 사위)들이 상속지분을 요구했음. 결국 상속지분을 주지 않으려는 자와 가져가려는 자 사이의 괴리감이 형제간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가족관계는 단절되었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과수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자기 거였거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딸이 셋 있는데 사위들이 와가지고 딱 내 놓으라 해가지고 갈라가 버리니까, 공동 분배해 버리니까. 그 재산 자기 건 줄 알았더니 다 분배해가지고 경했져. 하더라고. - 사례 11(남, 60대)

-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많으니까 아들은 상속으로 받으려는 입장임. 이와 같이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와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음
 - 이 경우 아들이 혼자이고, 딸들도 아들 상속지분과 자신들의 상속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 상속 갈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어머니 사망 후 아들이 딸들의 상속지분까지 가지겠다고 할 때는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딸들도 법정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음

4) 상속인으로서 딸들의 요구

- 제주사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재산 상속에 관심이 증폭되었음. 그 결과 부모가 아들에게만 증여한 경우, 상속이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딸들도 상속지분을 요구하는 추세임
 - 60대 이하에서는 딸도 친정 재산 상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아들만큼은 아니라도

일정부분 상속받기를 원하고 또 요구함

- 최근 들어 결혼한 딸들도 친정의 재산 상속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추세임. 처음부터 아들과 딸에게 일정부분 상속하는 집안은 문제가 없으나 딸을 제외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되고 있음
- 사람에 따라서 증여보다 상속이 좋다는 입장도 있음.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자식들이 분쟁을 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알아서 상속지분을 가져가면 되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음

상속이 낫지. 이젠. 있는 거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백세시대나 부모가 오래 살면은 형제간에 싸움 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아예 시설에다 딱 맡겨가지고. 요즘은 또 시설에다가 맡기면, 돈을 내야 되잖아. 돈 안 내면 이 시설에서 그 집에 그냥 모셔 가 붙어.

- 사례 1(여, 60대)

다. 여성(어머니) 상속재산 유지 방법

1) 딸들로 이어지는 상속 관습

- 제주도에서는 과거부터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은 가능하면 딸에게만 증여하는 풍속이 있음. 한편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이 반드시 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혹 아들로 상속되기도 하고, 집안 사정에 따라 그 지분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함
- 집안에 따라 어머니는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면서 그 외 재산 상속분은 없다고 말함.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종료하고, 남편집안의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상속한다는 입장임
 - 재산 처분권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소에 어머니는 친정에서 받은 것이라 딸에게 주겠다고 함
-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 처분권이 있으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음. 한 사례를 보면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 소유 재산과 합쳐서 부동산을 매매하여 재산 규모를 확대함. 이는 부부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할 때 딸의 지분을 고려할지 의문임

어쨌든 받는 순간 공동 이익 되다 보니 나가 받았이난 나 거여 해가지고 나가 잡앙 잇일 수는 없거든. - 사례 11(남, 60대)

- 한 사례를 보면 80대 초반의 어머니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재산 정리 시점이 되자 딸에게 증여해 주었음
 - 어머니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서 딸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남은 금액은 농지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했음
- 한 면담자는 친정에서 상속한 재산을 구분하여 딸에게 특별히 상속하지는 않았음. 친정 재산 상속지분을 자본금으로 하여 사업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아들과 딸에게 증여하였음
- 어머니의 입장에서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토지)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딸에게 상속하려는 의식이 있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함. 이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처가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자존심도 한몫함
 - 한 마을에서 어느 집이 친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증여(상속)했는지 공개되므로 남편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알고도 모른 척함
 - 재산 운영 및 처분권이 아내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풍속이 있으며, 이는 남성들의 체면문화가 처가재산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 결국 아들 중심의 상속제도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에게도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남겨 두었는데, 지금과 같이 남녀 균등상속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친정 상속분이 딸로 이어진다는 통념도 사라질 것임.

2) 친정재산 상속과 의무

- 소위 부모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결혼해도 친정부모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음. 한 사례를 보면 친정부모 별초는 4명의 딸이 공동으로 하고, 제사는 부모님이 살았던 집에서 지내는데, 서열에 따라 매년 의례주관자가 달라짐
 - 딸들이 나이 들에 따라 제사의례 담당자를 지정하였음. 즉 시가에서 제사를 맡지 않는 딸이 친정부모 제사를 담당하고, 친정부모 집터는 제사지내는 몫으로 외손자 명의로 상속되었음

- 한 사례를 보면 무남독녀 가정에서 친정의 가문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딸은 결혼했으나 친정 재산(밭)을 상속받고 부모의 제사의례도 담당하였음
 - 외손자까지는 제사지내는 관습이 있음
- 사람에 따라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 자신의 사후 제사명절 등 유교의례를 딸들에게 의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고, 생전에 종교에 귀의하기도 함
 - 결혼한 딸들은 친정부모의 제사명절을 지내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부모입장에서는 딸과 외손자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도 있음

라. 재산 상속에 따른 갈등 양상

1) 상속인 간 갈등과 분쟁

- 평소에는 가족 간의 유대가 좋다고 알려진 집안도 재산증여와 상속 앞에서는 달라지는 사례는 쉽게 볼 수 있음. 이 경우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갈등을 빚고 의절하기도 함
- 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아들들에게 상속지분을 공개했으며, 그 당시에는 토지 값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을 때라 별문제가 없었음. 이후 제주도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형들이 동생에게 현금으로 조금 나눠주라는 요청을 하는 집안도 있음
 - 상속할 당시에는 장남과 차남에게 토지 규모를 고려했는데, 시간이 흘러 지가 상승지역이 달라지면서 동생이 상속한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도 함
- 한 사례를 보면 딸이 10대부터(현재 60대 초반) 물질을 하여 생활비를 보태고 부친 봉양까지 담당하였으나 부친 사망 후 형제들이 상속지분을 요구하면서 가족관계가 단절됨
 - 부친 입장에서는 딸에게 항상 미안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아주 조그마한 땅을 증여했음. 형제들은 수증자를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정구소송 단계까지 가는 등 분쟁이 발생했음. 그 상황에서도 병약한 모친 봉양은 외면하였고 결국에는 딸이 그 의무를 다했음
-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집안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식이 정당하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형제들은 오로지 자신의 지분이 없어졌다며 분노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
- 딸들이 부모를 도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아들들은 전혀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재산분배 시기가 오면 부모는 아들에게 상속하는 관습이 있음. 이때 딸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이 무가치해졌다며 재산 상속을 요구함

분쟁이 많은 이유가 제주도의 부동산이 그냥 옛날에 동네에 있었던 밭대기가 지금 몇 십 억씩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이제 분쟁의 요소가 돼 버린 거죠.

- 사례 10(여, 50대)

-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면서 딸들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들 중심의 재산 상속 관념을 지니고 있음. 이럴 경우 딸들과 부모의 갈등이 발생함
-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재산문제를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함. 평소에 누구는 얼마를 썼고, 어떤 재산은 누구를 위해 팔았고 등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편하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기억한 자식들은 부모 재산을 많이 쓴 형제를 기억함
 - 예를 들면 아버지는 돈이 필요해서 받을 팔았는데 어머니와 다른 자식들에게는 어느 자식 결혼비용으로 썼다든지,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말을 하면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결국 상속 시점에서는 형제들이 그 형제의 상속지분을 제외하려고 하면서 사실이 밝혀지거나 상속 갈등으로 종결됨

2) 상속 방법과 대상에 따른 갈등

- 부모에 따라 생전에 자식에게 균등 상속지분을 구두로 지정해 두지만 부모 사후에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상속 분쟁이 발생함
- 또 하나는 부친이 자식들에게 증여해 주고자 하나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생존해 있고, 증여가 급한 일이 아니니까 미루어 둬. 이 경우는 부친 사망 시에 그 증여지분이 소멸될 경우 증여지분은 없어지고 상속지분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함
- 보편적으로 70대 이상 세대들은 재산을 취득할 때 남편의 이름으로 하고, 아내들은 자신의 기여도가 높으나 공동명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음. 이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지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
-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어머니와 자식 간에 상속이 진행되니까 어머니에게 일괄 증여하기도 함. 또는 상속 방법에 따라 어머니 몫을 배정하지 않고 자식들과 동일하게 균등분배하는 집도 있고, 어머니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자식들이 균등 상속하기도 함
- 또 하나는 어머니가 상속 분배권을 사용하여 장남 또는 아들 중심으로 상속하기도 함.

- 이때 딸들이 불평등한 지분에 반기를 들고 공평한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나타남
- 상속 대상자들은 상속과정에서 갈등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나 많이 갖고자 하는 형제와 손해 보지 않으려는 형제간에 간극이 발생함. 이 경우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그 전 단계에서 처리하지만 가족공동체의 유대관계는 파괴됨
 - 남편 사후 아내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재산분배에 신중해야 함. 자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머니에게 상속을 요구하더라도 자신의 노후생활을 고려하여 분배해야 함

자식들이 왕 이러면은 어머니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걸 악착같이 찌든 안헤. 그냥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지. - 사례 1(여, 60대)

- 40대 이하 세대들은 제사명절에 대한 의무감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재산 상속과 가족의례 의무는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제사명절과 같은 유교식 제사의례는 종교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선산관리 방법도 달라지고 있어서 아들 위주의 상속 의미는 퇴색하고 있음
- 30대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 규모를 알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것이라고 믿음. 그래도 이들 역시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모의 재산을 사용하길 바라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면 좋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 재산 상속 관련 사례를 보면 부모들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는 목표는 수정되어야 함.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제사명절과 재산 상속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시기가 되었음

3)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 요구 태도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식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들의 지분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투쟁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아들이 상속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돌봄에 그 아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반면 딸들만 부모봉양의 의무를 다한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집안도 있음
- 아들이 재산증여분에 비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들은 화가 나서 법정

지분을 요구하게 됨

- 60대 부모세대 중에도 결혼할 당시 주택마련 비용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았으며, 아들도 마찬가지로 증여받았음. 재산 상속 시점에서는 딸들이 과거 증여지분이 불공평했다며 문제를 제기함
- 증여지분이 아들에 비해 딸이 월등히 적을 때, 또는 딸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지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임. 결국 증여지분이 적은 경우 상속분을 많이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요즘 저기 주변에 정말 이렇게 좀 저기 재산이 좀 있져. 하는 집은 딸들 때문에. 저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땅값이 막 올라부난 딸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안행 딸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 감뎀 해여근에 아들이랑 딸이랑 저기 원수 되고 막 그러더라고.
 - 사례 16(여, 60대)

- 집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산 상속 문제가 대두될 때 형제간에도 평소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함
- 예를 들면 장남은 고등학교까지만 다녔고, 형제들은 대학을 졸업했다면 상속 시점이 되었을 때 교육비 부분을 고려하여 상속지분을 추가로 요구함. 따라서 교육기회와 상속지분을 결부시킬 경우 상속 갈등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함

큰형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둘째 형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대학을 나왔고 그 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 사례 4(남, 60대)

- 부모의 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상속분쟁의 골이 깊어짐. 한편 부모에 따라 자식의 상속지분을 미리 처분하여 교육비로 충당하기도 하므로, 부모의 재산 분배 판단이 중요함
- 한 사례를 보면 차남이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를 도와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 부친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어느 딸은 차남에게 주라는 말을 했으나 문서로 남기지 않아서 형제들은 부친의 말을 무시했음
- 이 경우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았음. 아버지세대는 구두유언도 효력을 발휘하였을 것이나 자식세대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고 있음
-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증여와 상속을 문서화 해 두어야 자식

- 들이 싸우지 않을 것임. 또한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증여와 상속은 자식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므로 목숨 걸고 투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주는 대로, 주는 만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중요함

4. 증여자의 노후보장과 수증자의 역할

가. 수증자로서 부모봉양 의무

1) 증여에 따른 부모봉양의 의무

-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상속만 받으려는 생각이 강할 경우 가족 분쟁이 발생함. 자식으로 서 딸이든 아들이든 상속에 따른 의무로 제사의례와 별초 등 조상숭배 행위가 수반되는데 이런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산 상속에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존재함

거난 그 책무랄까?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 재산권만 행사하려고 하니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런데 이 재산권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달라고 하지를 았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받았을 때 봉양이라는 의무도 해야 된다. - 사례 11(남, 60대)

- 한 사례를 보면 아들이 6명 있는데 모두 서울에 가서 살았고, 부모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면서 증여했음. 부친은 고향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이 없이 지내다가 돌아가셨음
- 한 사례를 보면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을 팔아버리고 남은 게 없는데 모친 돌봄이 문제가 되었음. 차남이 장기간 모친을 돌보는 상태에서 모친 소유의 집을 차남에게 양도하였음. 이 경우에는 형제들이 상속에 동의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
- 재산 증여와 상속이 없는 경우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어머니를 봉양한 사례가 있음. 이는 부모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자식들이 어떻게 협의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돌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받지 못한 딸은 부모라는 이유로 끝까지 돌보는 주체가 되기도 함. 부모에 따라서는 아들에게는 요구하지 못하면

서 딸에게만 돌봄을 요구함

[어머는 딸이 편허던 나 병원 데려가라, 뭐 해가라, 어떤 날은 식게도 출리라 허면 그 딸은 반
 아가지도 았애신디 부애나지 았으쿠가? 부애만 나주게. - 사례 6(여, 70대)]

- 집안에 따라 부모돌봄 비용을 장남이 많이 부담하고 그 외 형제들은 조금씩 부담하는 유형, 자식들이 경비를 공동 분배하여 돌보는 유형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함
- 이에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모의 재산으로 돌봄비용을 처리할 것인지, 재산이 없을 경우 자식들이 공동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증여와 관계없이 자식들이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돌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산증여분이 많이 자식이 돌봄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재산증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역할을 밀리면서 방관하는 경우 등 다양함
- 반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후를 대비하여 서로 돌봄에 참여하기도 함. 이 경우 부모가 사망 직전에 그 노력에 따라 증여하거나 상속지분을 유언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부모 사망 후에 바로 상속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음
- 2022년 현재 제주사회에서 재산 상속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임.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분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함

2) 증여 후 부모 봉양 참여 정도

- 재산증여 후에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식들의 반응도 다양함.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부모를 책임지고 돌보는 경우, 그렇지 않고 전혀 모른 채하면서 무관심한 경우가 있음
- 또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딸은 부모를 생각해서 끝까지 돌봄을 담당하거나 딸도 외면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재산증여 정도와 부모돌봄의 기여도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증여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가 깨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경허난 어머니하고 자꾸 트러블 생기는 게 왜 재산은 아들한테 다 주고 병수발은 딸들이 해야 되냐? 아들한테 허라. 그렇다고 자기 부모니까 내볼지도 못하고 어떤 땐 그냥 내버려둬]

[도 며칠 하면 또 안 가볼 수 없잖아. 경행 가 보고 - 사례 1(여, 60대)]

- 한 사례를 보면 어머니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살아생전에 임대료는 어머니생활비 몫이라고 약속했음.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사망하게 되니까 매년 며느리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됨
-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모의 노후와 사후 의례까지 전담한 경우 며느리가 부모돌봄을 거부하니까 아들 혼자 제주도에 와서 부모를 돌보는 사례가 있음
-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외면해 버렸음. 자식의 입장에서 딸은 증여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돌봄을 전담한 사례도 있음
- 현재는 부모돌봄보다는 재산 이동에 관심이 많은 세상이 되었음. 집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장남은 장자라는 이유만 내세우고 재산 독식 권리가 주어진 것 마냥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간에도 긴장감이 나타남

3) 부모 사후 수증자의 태도

- 요즘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하기보다는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방법을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음. 즉 장례식장에 모여서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논의하지만원만한 방법이 없으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짐
- 결국 부모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족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가족공동체를 유지하느냐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느냐가 결정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상속 받을 것도 없긴 했지만 그런 거랑 관계없이 큰아버지, 고모, 삼촌, 아버지 다 해서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마련했어요.. - 사례 9(남, 40대)]

- 집안에 따라 장남 상속지분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에 비해 제사명절은 차남들과 분배하는 경우 집안싸움이 남. 한 사례를 보면 남편 사후 아내는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제사명절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차남에게 도움을 요청했음
- 장남은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머니는 차남에게 제사명절 비용도 부담하게 하고 의례를 담당하게 함

- 따라서 재산 상속 목적에 따라 장남에게 제사명절과 부모돌봄 의무까지 주어야 하고, 다른 자식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자식에게도 상속해 주어야 함
- 사혼한 조상의 제사의례와 재산 상속도 이루어짐. 젊은 시절에 사망해서 사혼한 경우 당조카 중에 양자를 삼거나 그 몫으로 재산과 제사의례를 물려받음
 - 재산은 받이나 집터가 됨. 이 경우 제사는 본인 당대에는 하지만 자식대까지는 물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에는 재산 상속 지분이 추가되는 것임
-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단순히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소한 돌봄과 말벗 등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는 딸에게 지원 요청하는 사례가 있음
- 증여와 상속문제는 부모의 돌봄 의무까지 연계하여 고민해 봐야 함. 이에 더하여 부모의 재산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아들과 딸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모의 생활비와 돌봄비용을 부담할 경우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균등한 분배 방법을 택해야 함

나. 재산 상속과 유교식 제사의례 전담 의무

1) 제사의례 이행에 따른 상속지분 지정

- 장자 중심으로 재산 상속 관습이 지속된 것은 제사의례와 선산 돌봄 등 가문 유지에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임. 반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능했던 일들이 산업사회 이후 고향에 거주하는 자손들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소위 고향과 가문 지키기의 의무가 사라지고 있음
- 이에 재산 상속 대상과 목적에 대한 입장차가 일상화되고 있음. 즉 장남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던 상속지분이 차남 이하 자식들에게도 분배하게 되고 딸들도 상속지분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음
- 제주사회에서는 지금도 조상대대로 상속된 재산은 장남에게 증여하고, 부모가 모은 재산은 딸들에게 증여하는 집안이 있음. 이때 부모는 재산증여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식들에게 선포하고 자식들은 가능하면 부모의 결정을 따름
- 한 면담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은 아들에게 증여하고 부모가 마련한 재산은 딸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이 없다고 함. 이 사례를 보더라도

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은 그 가계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혈연중심사상이 확고함을 알 수 있음

- 장남에게 아들이 없고 차남에게 아들이 있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제사명절과 가문유지 목적으로 차남의 자식에게 상속하기도 함
 - 이때 장남은 자신 몫의 조상전이 동생에게 넘어가서 섭섭해 하지만 본인의 딸들이 친정 조상 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함
- 한 사례를 보면 장남에게 재산과 제사명절 일체를 물려주었음. 그런데 장남이 재산을 전부 탕진해 버리고 제사명절을 지내지 않게 되자 차차남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 집안이 있음
- 친정에서 재산을 상속한 경우 부모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딸들도 있는데, 이는 재산 상속과 제사의례 참여 의무를 별개로 여기는 풍조로 볼 수 있음

재산을 갈라 주랴 해가지고 와서 이제 n분의1해서 갈랐는데 아버지 제사 먹으려도 안 온다는 거야. 누이동생이. 왜 안 오냐 했더니 남편이 안 오니까 안 온다는 거라.
- 사례 11(남, 60대)

- 서귀포지역에서는 장남중심으로 재산과 제사의례 증여가 대세였는데, 최근 들어 제사와 재산을 자식들 간에 공동 분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
- 지금도 제사의례 전담 명분으로 아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데,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만 유리한 상황임. 이런 점에서 딸들이나 차남 이하는 불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상속 시 강조하는 조상전이나 제월전도 세월이 흐르면 의미가 없어짐

2) 장자 상속지분에 대한 시각차

- 제주사회에서는 제사의례와 선산 돌봄 등 가문유지 담당자들이 그에 합당한 상속인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음, 반면 재산을 상속한 후에 다른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별초 등 선산 돌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향에 살고 있는 형제가 담당하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됨
 - 간혹 일본에 사는 친척들이 제주도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별초는 하지 않는 집안이 있음. 소위 재산은 다 팔아가고 산소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주도에

있는 친척들이 별초를 하게 됨. 이에 재산은 다 일본으로 가고 별초는 다른 자손이 담당한다는 말이 나왔음

- 한편 제사의례와 별초 등 가문유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이 조금 더 상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한 사례를 보면 부모 사망 후에 형제들이 재산을 공동 분배했는데 장남은 조부모와 부모제사는 물론 형제 제사도 담당하지만 그 누구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
- 이 경우 재산 상속과 제사의례 이행 의무는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형제간에 불만이 생김

별초도 혼자 다 하고. 이제는 한 군데로 다 해놓고 그런 이장 비용이든 뭐든 혼자서 다 감내 해냈잖아요. 딸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 집을 팔 때는 그렇게 하니까 안 뵈 살기로 했단. - 사례 14(여, 50대)

- 제주도에서는 70대 중반 이후 부모세대들은 최소한 장남들이 제사의례 등 조상 봉사의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왔음
- 집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족의례 전담 의무에 따라 재산증여 지분이 많아도 최종적으로는 제주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제주도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갈등이 일어남
- 60대 이하 세대들은 제사의례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고 매장문화도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의 규모에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
- 재산 상속 시 사위와 며느리의 입장은 다름. 사위는 처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니까 있으면 좋은 정도이며, 며느리는 시가의 일원으로서 자식이 가문유지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재산 상속에 민감함
- 며느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집안의 각종 의례 이행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함

며느리는 발언권을 갖고 있지. 근데 이제 남편하고 며느리가 같이 참석하는 집도 있고 아예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 사례 3(남, 60대)

- 아들들은 집안의 의례담당자로서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하나 시간이 흘러서 그 자손들이

- 가문의 의례담당자 역할을 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재산 상속은 명분 일 뿐이므로 제사의례와 선산 돌봄이 상속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함
- 제주도에서도 지역과 집안에 따라 증여나 상속 방법에 차이가 있음. 대체로 서귀포지역은 장손 중심으로 제사명절과 재산 상속이 쏠리는데, 이런 관습은 지금도 남아 있음
 - 형제간에 조상 봉사의 책무에 따라 상속지분이 다름을 불평하면서도 아들들은 조상 봉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결국 재산 상속 시 상속인의 책무를 고려하여 차등 분배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형제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3) 문중 재산 상속인의 의무

- 한 사례를 보면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장손이 있는데 그 집안에 딸은 있고, 아들이 없음. 문중에서는 문중재산이 많기 때문에 양자를 입적해서 성묘와 제사의례 등 가문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장손은 현재 문중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이며, 문중에서는 가문유지가 중단됨은 물론 그 문중의 재산이 다른 집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음. 이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문중재산을 놓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우리 문중에 땅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종손이 딸만 둘이라. 문중 땅이니까 양자를 해야 이게 벌초도 하고 거기에 다들 묘가 있으니까 제전이니까 그걸 할 건데 양자를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럼 만약에 이 종손이 돌아가 버리면 그 땅은 애들한테 바로 갈 거 아니게. 명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애네는 벌초도 안 할 것인데 땅은 가이네 거가 돼 버리는 거지.

- 사례 11(남, 60대)

다. 상속인으로서 양자의 지위

1) 양자의 역할과 의무

- 양자입적은 70대 이상 세대에서 접할 수 있는 관습이고, 지금은 실행되지 않고 있음. 한 사례를 보면 딸만 있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문중에서는 양자를 입적하라고 강요했음
- 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식들이 외가의 제사를 할 수 있는 데도 문중 어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족보상 양자를 입적했음. 그런데 양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아들의 역할도 하지 않았음

살아가서 계실 때도 양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해 주면 고맙지만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해 준 것만도 고맙던 딸들은 생각했는데 부모님 이제 요양과 케어는 딸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산은 저기 가면 딸들도 일어나게 되고. - 사례 10(여, 50대)

- 본인의 아들을 양자로 보낸 경우에도 재산 상속 대상자가 됨. 간혹 아버지가 형제의 제사를 하고 그 몫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내면서 그 형제의 몫을 증여해 주기도 함. 이때 양자는 호적상 입적은 되지 않고 족보에만 등재됨
- 양자로 간 자식은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므로 본가에서는 모든 순위에서 배제되기도 함. 부모에 따라 양자로 갔기 때문에 자식의 정을 단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가능하면 양부모와 그 집안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임

2) 양자와 형제간의 상속지분 갈등

- 제주사회에도 양자입적제도가 있는데, 집안에 자식이 없거나 딸만 있는 경우 대를 이을 아들을 양자로 입적함
 - 입적 대상자는 친척 내에서 정하며 어려서 양자를 입적할 경우에는 성인이 된 다음 재산을 증여하고, 성인이 된 다음 양자로 입적할 때는 처음부터 재산을 증여함
-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자와 친자 사이에 재산 분쟁이 발생함. 즉 양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치가 억 단위로 높아지자 부모를 돌보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딸들은 자신들의 지분이 적거나 없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함
- 양자가 집안일을 잘 돌보면서 가족(딸들)에게도 조금 양보하면 원만히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재산은 다 갖고 아들로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파양 소송도 제기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제기됨

제사명절 우리가 하쿠다. 그런데 이제 제사명절 딸들이 한뼨 해근에 계속 2-3대가 넘어갈 수 없잖아예.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나면 아들네 가도 제사명절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어디 있냐라고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 사례 10(여, 50대)

- 양부모 사후 재산 상속이 진행될 때 딸이 있는 경우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즉 양자에게 부모의 재산이 전부 상속될 때 딸도 일정부분 상속받기를 바램. 이때 상속받는

당사자가 다른 형제에게도 분배해 주면 좋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위 상속포기각서 동의받기가 어려워짐

라. 증여자(부모세대)의 노후준비 양상

1) 증여자 및 피상속인(부모세대)의 가치관 변화

- 8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재산증여와 상속에 대해 부모의 결정대로 수용하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 당시 관습을 존중하였음
 - 장남에게 전부 상속하던 자신들에게 일정 지분을 분배해 주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고맙게 받아들였음
- 이 부모세대들의 자식들이 60대 이하이며, 그 사이 유교적인 관습과 의식이 변하였음. 부모들은 재산 상속 분배 방법을 부모에게서 답습하지 않고 장남과 차남, 딸 등 자식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속하려는 추세임

아들들은 밭 하나씩 다 주고 딸은 세 명인데 밭 하나를 가정 똑같이 너네가 갈랑 해라, 이렇 게라든가 또는 그 밭도 장자에게 주고 장자가 그 밭에 대한 부분들을 딸 세 명 있으면 3천 만원씩 분배하는 집도 있고
- 사례 15(여, 50대)

- 한 면담자는 자식들에게 대학교육까지는 부모로서 책임지나 그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음. 부모 소유의 재산도 많지 않으나 노후까지 생활하고 난 다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상속하면 된다는 입장임
 - 20대 초반 자식은 부모에게 재산규모를 듣고 부모가 노후까지 생활하면 좋고 빛은 상속하지 말라는 말을 함
- 현재 50대 부모들은 앞으로 올 일이지는 하지만 아들과 딸에게 공동 분배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음. 다만 이 세대들도 노후생활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자식들이 어디에서 살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 상속 절차를 간단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
- 간혹 부모에 따라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질 경우 재산증여 문제가 고민이 됨. 부모 입장에서 믿음이스러운 자식에게 재산관리권으로 주고 싶으나 다른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에는 형제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함

- 부모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친절을 베풀면서 부모 주위에 머물면 부모의 판단이 흐려지고 증여를 해 줄 수도 있음. 이 경우 자식들끼리 분쟁으로 이어짐
- 재산증여 시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분쟁하는 상황도 발생함. 지금 시대는 노후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증여보다 상속이 낫다는 사람들도 있음

2) 부모세대의 노후준비 관심 증대

-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노후 보장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 여기는 추세이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최근 들어 자신이 늙어서 요양기관에 입소하게 되더라도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준비금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 형들도 재산을 증여를 하지만 일부는 다 갖고 계시더라고. 자식들이 딴 마음은 먹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다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위아래 층이 있으면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집만이라도 갖고 있더라고.
- 사례 4(남, 60대)

- 한 사례를 보면 부친이 생전에 자신과 아내의 생활비와 장례비용을 저축해 두었음. 그 비용으로 부부는 요양기관에서 지냈고, 사망 시 장례비용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음
- 남편의 입장에서 본인이 먼저 죽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증여하거나 노후자금을 만들어서 저축해 둬
- 이는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아내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임
- 지금 60대 세대는 부모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를 돌봐야 하고, 제사의례도 이행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인식함. 반면 이들의 자녀세대들은 부모돌봄에 대한 인식이 미미함
- 따라서 적어도 50대 후반~60대 세대들은 자신들의 노후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세대임. 현재 20~30대 세대들은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고 부모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여김. 이는 부모의 재산 상속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한편 부모돌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임
- 80대 이상 세대들은 아들 중심의 상속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자신들도 자식들에게 차별적인 상속방법을 선택했음. 그렇지만 70대 이하 세대에서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

는 상속제도에 불편함을 드러냈고, 본인들이 상속인일 때와 상속을 해 줘야 할 때 불평 등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3) 상속인(자식세대)의 가치관 변화

- 40대 이하 세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재산을 모으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인식함. 또한 그 부모들은 70대 이하 세대여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함
 - 이들은 부모든 자식이든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각자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 이는 부모세대가 부모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마지막세대라는 말에 동의함
- 현재 50대~60대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는 세대이며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대상임. 이들은 딸들도 재산 상속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구하고 상속인이 됨
 - 한편 그들의 자식들은 20대~30대인데 그들에게는 딸과 아들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 자식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이 남아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등 세대별로 개인차가 있음
- 부모의 재산이 없어질 경우 자신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염려하여 부모의 재산 소진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 자신에게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관심을 보이는 경우 등 다양함
 - 어떤 자식은 부모가 재산을 다 써버릴까 봐 절약하라는 말도 함
- 60대 초반 여성은 재산 상속에 대해서 그 부모세대와 다른 입장을 보임. 본인은 시부모의 재산을 조금 받기는 했으나 자식에게 상속할 생각이 없다고 했음
 -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대신 자녀들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힘들다 해도 안 벌리고에 그축 허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나는 주지도 않을 거, 받지도 않을 거 나가 쓰다가 남으면 줄 거. 이제 사고가 그렇게 바뀌었어. 60대 우리 세대는.

- 사례 5(여, 60대)

- 따라서 60대에서도 상속과 증여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즉 부모 재산은 노후자금으로 이용하고 죽은 다음에 남는 재산(부동산, 동산)이 있으면 장례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자식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임

- 60대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개 20대~30대초에 해당하는데, 이들 역시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부모의 재산 처분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4)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확대 기대

-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은 혈연중심의 가족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후보장에 대한 불안함이 많은 편임
-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복지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고, 사회적 부담은 한계가 있음. 그래서 개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 자식들의 주거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그 가족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가 돌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사회적 돌봄이나 국가 돌봄을 할 때 보태는 비용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사례 8(남, 50대)

-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법이 나타나고 있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춰 재산과 현금을 증여하거나 자식명의로 변경해 버림
- 노인들이 이런 잘못을 하는 이유는 간단함.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등 복지혜택 대상자라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김
- 재산이 없는 사람도 그러고 싶지는 않겠으나 노인들의 눈으로 보면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았는데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에 비해 누구는 다달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김
- 부모들은 자신의 편만한 노후도 좋지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함. 따라서 이는 한국사회 또는 제주사회의 특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납세 과정의 투명성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
-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자식 간의 갈등을 개인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로 접근해야 함. 즉 사회제도가 변하면 의식도 변하면서 증여와 상속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될 것임

5. 재산증여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가. 세대별·성별에 따른 상속인의 가치관 변화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식 변화

- 재산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점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음. 조선 중기 이후부터 장남 중심의 상속이 확대되었고, 그 의식은 2022년 현재까지도 남아 있음
- 한 집안은 장남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그에게 가문의 안위와 영속성 유지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했음. 한국사회는 유교풍습에 따라 제사의례와 선산 돌봄 등 자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보상도 따랐음
- 한편 사람들의 삶이 터전이 고향에서 타향으로 이동되고, 종교의 영향으로 유교의례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남녀차별 의식이 약화되면서 상속문제도 다양해지고 있음
- 70대 초반 이하 세대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재산은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음. 물론 여유 재산이 있으면 증여하는 것이고, 재산을 증여할 때 아들과 딸에게 가능하면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딸들은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들들은 딸들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편임
- 60대 이하 세대들은 자녀 교육과 재산 상속 등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처리하겠다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음. 다만 세대별 재산 상속 유형과 규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집안마다 다를 수 있음
- 현재 20대~30대 자식세대들은 부모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개방적임. 부모 노후까지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좋고, 상속지분이 남아있으면 형제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자식세대들은 현재 관점을 지속할 수도 있고,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변할 수도 있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산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성별 구분은 희미해지고 있음
- 결국은 재산증여든 상속이든 남아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공정하게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함. 부모는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빚도 상속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산 규모와 빚 규모까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음

2) 재산 상속에 대한 성차별 태도 변화

- 현재 8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장남 중심, 아들 위주의 재산 분배에 익숙해 있고, 결혼한 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음
- 부모가 사망한 후 재산 상속 문제가 대두되면 50% 정도는 갈등을 일으키게 됨. 이때 중재자가 없거나 장남이 욕심을 부릴 경우, 또는 아버지의 구두 증여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으로 이어짐
 - 그 결과 가족관계망은 깨지고 남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는 최근 들어 제주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임
- 60대 면담자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남게 되면 그것은 자식들이 공동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70대 이상 여성 중에는 아들과 딸은 7:3 비율로 상속하겠다는 의견도 있음
 -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에 기초하여 유교의례를 담당하는 아들에게 상속지분을 좀 더 배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 적어도 80대 이상 세대들은 아들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70대는 딸에게도 줄 수 있다는 입장임. 반면 60대로 내려오면 아들과 딸의 상속지분이 균등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 아들과 딸의 비율이 1:1이어야 하는지 딸에게도 일정 부분 상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개인차가 있음
- 요즘 60대 부모세대들은 가능하면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증여하려고 함.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 분배 생각이 없더라도 딸은 친정 재산 상속분을 계산하고, 사위 역시 처가 재산에 관심을 갖기도 함
 -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처가 재산에 욕심이 있는 사위는 처남의 재산과 자신의 상속지분을 계산하기도 함
- 60대 이하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시누이(딸)들이 상속지분을 요구할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본인이 친정에서 상속해 왔듯이 시가에서도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것이고, 당사자들이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 지금 추세를 보면 60대 이하 부모세대들은 자신들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면서 상속을 받

았지만 자식들(30대 이하 세대)에게는 가능하면 균등하게 분배해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음. 다만 장남인 경우 기대치가 있어서 조금 더 줄 수는 있다는 입장도 있음

- 40대 이하 세대들이 부모세대와 같이 제사명절을 지낸다는 보장이 없고, 유교식 의례 풍습도 퇴색해 지고 있으며, 종교의 영향으로 의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식계명질은 할 걸로 별로 생각 안하고. 안해도 좋던 하더라. 그냥 형제끼리 모영 밥이나 한 끼 먹으면, 잊어버령 안하든, 잊어붙면 할 수 없고. - 사례 13(여, 60대)]

- 30대 이하 자식세대들도 성별에 따라 증여나 상속지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지 않음. 자식에 따라 부모가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항의할 정도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
- 따라서 유교문화에 젖어있는 70대 이상 부모세대가 바라는 제사의례와 조상 돌봄 풍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재산 상속은 의미가 없어질 것임

나. 고령화시대 대비 재산 상속 유형

1) 제주사회의 환경 변화

- 적어도 2005년 이후 제주도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너도나도 사람들의 물욕이 양심을 가리고 있음. 그 결과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관계망이 파괴되고 남보다 못한 상대로 전락하였음
- 또한 재산증여와 상속에 불만을 품고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집안이 증가하였음. 주변을 돌아보면 재산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음

[돈이라는 게 생기니까 형제자매가 없더라도마씨. 정말 좀 특이하게 형이 어려우난 좀 이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지, 재산만 생기면 어떻게 하젠. - 사례 9(남, 40대)]

- 자식들이 모두 부모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탐내는 것은 아님. 한 면담자 사례를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교육시켜 준 것도 고마운데 재산 상속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음. 자식들이 그 보답으로 효도해야 하니까 오히려 부모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기를 부탁함.

[자식의 입장에서는 물려주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건강하게만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먹을 거 많이 드시고 하십서 하죠. 왜냐하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안 하시는 것만도 우리]

[한테 도움 되는 거니까. 사회 활동 하시랜도 하고 운동도 하시라고 하고. - 사례 2(남, 50대)]

- 서귀포지역에서는 6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장남중심으로 재산과 제사의례 등이 상속되었음. 이런 풍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장자에게 100% 상속하던 관습이 차차남 이하로 비율이 분산되는 정도임
- 반면 제주시지역에서는 장남과 차남 등 아들들에게 재산과 제사의례를 분배해 왔음. 간혹 딸에게도 상속하는 집안이 있으나 이는 특수한 상황이며 지금은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음
- 이 경우 아들에게 좀 더 많은 지분이 가고 딸들은 그에 비해 적게 분배됨. 즉 아들중심으로 상속되던 관습에서 딸들에게도 상속되는 풍속으로 변하고 있음

2) 초고령사회 대비 피상속인의 가치관 변화

- 우리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얽히지 말아야 하며, 서로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아주는 것이 효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현재 70대 이하 부모세대들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노후문제를 자식들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이 없어지고 있음. 또한 자식에게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갖지 말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임

[100세 시대인데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경헌디 나중에 잊으면 우리 친구들엔. 또예, 집 하나 잇이민 주택연금 있지?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어. 주택 연금 받았가 쓰다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앙 자기 번 거 자기가 쓰다가 간다. 그 생각도 허고. 어떤 사람은 또 재산 막 아들한테 주젠 현 사람 있고 허난이 성격 나름이라. - 사례 5(여, 60대)]

-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섭섭해 하지 말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 부모가 건강하게 살아서 내 삶에 내 삶에 정신적·경제적 고민을 주지 않는 삶을 바랍
- 형제에 따라 재산이 많고 또는 상속지분이 많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형제가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도 퍼져 있음

[거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최종 목적이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야, 인식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우선 주고 나서 자기네는 죽을 때까지 여행 한 번 안 가고 살다가 가는 거라. 이거 하지 말자 이거지. - 사례 11(남, 60대)

- 최근 들어 증여와 상속 분쟁이 일상화되면서 부모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보임. 평생을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이지만 증여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결국에서 법적 소송을 이어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재산은 본인들이 살아생전에 모두 소진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관습적으로 공유하고 이행되는 상속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함. 가족공동체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재산 상속에 목적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노후복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증여와 상속 갈등은 혈연중심의 가족관계도 재산 앞에서는 무의미함을 극명하게 보여줌. 지금 60대 이하 부모들은 자식들이 재산 증여와 상속 대상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회환원 등 공익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앞으로는 직계가족만 상속인이여야 한다는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환원 방법을 고민해야 함. 이런 사회운동이 확산된다면 증여와 상속에 따른 가족분쟁이 줄어들 것이고,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자식에게 상속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사회기부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야 상속 갈등은 일정부분 해소될 것임

6. 소결 및 시사점

- 4장에서는 심층면접 사례를 통해 재산증여와 상속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성별구조에 따른 상속 방법 등을 살펴보았음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나 지금과 같이 100세 시대에서는 그 무엇도 장담하기 어려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함
- 이때 재산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증여를 한 상태에서는 자식들의 지원에 의지하게 됨. 자식들이 증여분과 상관없이 부모를 돌보면 문제가 없으나 증여분에 따라 자식 간에도 분란이 발생하면 부모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제주사회의 인구이동 변화를 보더라도 적어도 70대 이하 세대는 자식들이 2명이 기준이

고 그 아래 세대로 내려오면 1명만 있으며, 그 자식들이 제주도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보장이 없음

- 반면 부모들은 자식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명절과 별초 등 유교의례를 담당하고 고향을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함
 - 자식들이 제주도에 살지 않고 유교의례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도 관습상 장남(또는 차차남)에게 재산증여 비율을 높이려는 의식이 남아 있음
- 평소에 집안의 각종 의례에 참여하지 않고, 부모돌봄도 외면했던 자식이 부모 사후 재산 상속 지분을 많이 요구할 경우 형제간에 분쟁으로 이어짐. 이 경우에는 장남과 차남들, 아들과 딸들의 대립구도를 형성함
- 이 지점에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변경해야 함. 자식 입장에서 재산 상속은 선택이고, 부모는 자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함
 - 오로지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자식들 간의 갈등만 유발하게 됨
- 따라서 재산 상속의 범위를 자식에게서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식 중심의 재산 상속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 기부문화의 확대가 필요함. 이런 환경에서는 증여와 상속 분쟁이 감소할 것이고, 사람들의 재산 축적 목적도 달라질 것임
- 부모에 따라 자식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청할 때 재산을 증여하지만, 부모의 건강상태와 노후생활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증여 시기도 고려해야 함. 즉 부모는 80대, 90대가 되면서 돌봄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필요한 여유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 이때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들에게도 부담이 됨
- 부모세대들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각도 바뀌면서 자신들의 노후문제와 재산증여에 민감하게 됨. 즉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자식들의 몫으로 남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임
- 70대 이하 부모세대부터는 자식에게 상속할 재산이 많지도 않고, 상속하고 싶어도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후자금도 필요한 세대임
- 지금 50대~60대 부모들은 자신들이 고생을 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식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면 재산 상속에 긍정적인 입장임.

- 2000년대 들어와서 제주도의 지가상승폭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분쟁 비율이 높아졌음. 아버지가 구두로 유언한 상속지분을 지키는 자식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장남의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 아들과 딸 균등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등 다양해졌음
- 심층면접 결과를 보더라도 80대 이상에서는 유교적인 관습법이 유효해 보이며, 70대 이상 세대들은 재산 상속 시 아들과 딸의 지분에 차이가 있음. 60대 또한 재산 상속 시 아들과 딸을 구별하여 받았으나 그 전 세대에 비해서는 딸의 상속지분이 많아졌음
- 현재 50대 자식세대들은 부모돌봄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30대 이하 세대는 부모돌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할 것임.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로 진입할 때 재산 상속과 제사 의례 이행, 부모돌봄 등은 별개로 접근할 것이므로 상속의 목적과 기준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
- 재산 상속 문제를 접하게 되면 물질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공동체도 무의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므로, 이 시점에서 부모들은 재산 상속의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함
 - 재산 상속 문제는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부모의 재산을 놓고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 주고자 하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상속 분쟁의 중심에 놓일 수도 있음
- 면담자들의 사례를 보면 70대 이하 세대들은 겉으로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 상속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들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고 함
- 부모는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식들에게 상속하고자 하나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자식이 있을 경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기도 함
- 전통적인 유교풍속에 따라 재산 상속 대상이 장남과 아들에게 집중되었으며, 70대 이하 세대에서는 점차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 상속하는 풍속이 나타나고 있음
- 60대 부모세대들도 아들과 딸에게 균등분배하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50대 이하 세대에서는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상속하겠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음
- 60대 이하 세대에서는 집안의 제사명절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재산 상속 지분이 많아져야 한다는 관념은 사라지고 있음
- 대다수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하고, 부모는 재산을 모아서 그 자식에게 상속하면서 가문의 혈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혈연중심 가족제도는 변하고 있음. 즉 미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음
- 따라서 1인 가구 등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상속 문제도 다양해질 수 있음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가.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1) 상속 또는 증여 경험

-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부동산의 상속이 남성에게 더 많이 이뤄짐. 또한 부동산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아 부동산의 상속이 주로 아들로 이어짐을 알 수 있음. 반면 딸은 현금 형태가 주를 이루며,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을 받은 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는 낮은 편임. 기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주로 부모이며, 기대 유산의 종류는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지만 여성의 거주용 부동산 기대는 남성보다 낮음. 여성은 부모나 친족으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 기대에 비해 배우자로부터의 상속 증여에 대한 기대가 높고 남성보다 긴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후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상속 계획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산을 증여한 경험은 16.8%에 그쳤고, 연령이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 증여한 경험이 더 많고, 주로 현금을 증여한 경험이 주를 이룸. 앞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40대와 50대에도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재산의 상속 및 증여를 유예하고 있음
- 향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사는 여전히 높고, 기대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 역시 높지만 기대 유산의 생전 자기 소진 계획이 적지 않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로 생전 자기 소진과 유산을 남길 여유 부족이 나타나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의 선호도 평균이 노후대비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등형, 현실형, 전통형, 사회환원형 순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대비형과 현실형, 평등형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재산 상속 인식에 있어 남성보다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보다 유연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형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 받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은 여전히 전통적

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형 상속 인식 중에서도 부모 봉양 자녀에 대한 우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 봉양 책임은 상속 인식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남

3) 재산 상속의 관습 실태 및 관행, 남녀균분상속 인식

- 아들과 딸의 유산 배분 차별 경험이 73.3%로 높고, 아들과 장자 우대, 아들과 딸의 차등 상속 형태의 차별이 행해짐. 제월전의 상속도 제사주제자보다 장자 상속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재산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여전한함을 알 수 있음
- 재산 상속 분쟁은 주로 집안(가족)회의를 통해 해결하였고,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으로 집안(가족)회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 만족도는 2.42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재산 상속에 대한 현행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와 적합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우대 상속분 증액도 적합하다는 인식도 높게 나타남
-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사주제자 우대 인식이 높음

나.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 관련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식 및 태도

- 일반적으로 부모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식을 위해 증여를 원하며, 이를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음. 반면 자식은 자신들의 증여지분에 따라 갈등과 대립을 하기도 함.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의 입장에서 증여시기를 정할 때 자식의 성실성과 경제적 자립도를 고려함. 증여시기 및 부모와 자녀 간 분배 방식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재산의 증여는 아버지의 사망 후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상속과 증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함. 노후자금 준비를 이유로 한 재산의 분배 지연, 분배 방법, 자녀의 이른 증여 요구나 더 많은 분배 요구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부모 세대는 제사의례 수행을 이유로 장자 우대, 아들과 딸의 차등 분배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균등분배를 요구하기도 함
- 최근 길어진 노후기간과 함께 부모세대는 노후비용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재산 상속과 증여의 방법, 시기, 편안한 죽음에 대한 고민이 늘어남. 이에 따라 부모세대는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 선호가 증가하고,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자녀의 부모 봉양 거부를 우려하

기도 함. 부모 부양책임과 돌봄비용 부담이 자식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부모세대의 입장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자녀 위주의 재산 증여 관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식 및 태도

- 부모의 재산을 놓고 자녀들 간 상속 분배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산 상속 분쟁이 발생하고 가족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함. 피상속인인 부모세대는 축적한 재산의 다음 세대 상속을 당연시함. 특히 80대 이상 부모세대의 세대 상속 의지가 강함. 반면 자녀세대는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부모의 재산 규모와 상속, 증여에 관심이 증가하고 상속에 대한 기대심리도 증가함
- 재산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이행됨. 이때 자녀들 간 상속 재산의 분배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순조롭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장자 상속 관습이나 부모 부양책임 불이행, 부모 돌봄비용 부담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분배방식을 주장하기도 함.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 결정권은 남편 사망 후 어머니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 딸들도 상속지분을 요구하는 추세임
- 재산 분배는 가족 내 참여할 갈등을 초래하기도 함. 집안 재산 축적에 주된 기여를 한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이나 부모 부양을 전담한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 환청구 등이 제기되기도 함. 상속 재산의 분배에 이견이 있는 경우 참여한 갈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재산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남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 분배에 관한 부모의 입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3) 증여자의 노후보장과 수증자의 역할

- 자녀가 재산 상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됨. 또는 부모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딸에게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비용의 불평등한 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과거에는 재산 상속과 제사의례, 선산 돌봄 등과 같은 유교적 의례 의무가 함께 상속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입장차가 있음. 지금도 제사의례 전담 명분으로 여전히 장자상속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사의 강제성이 없고, 장자가 고향에 살지

않아 이를 다른 형제가 담당하게 될 경우 딸들이나 차남 이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음. 조상전이나 제월전도 그 의미가 약해짐.

- 유교적 관습과 의식이 약화되면서 60대 이하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재산 분배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자녀들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배하려는 추세임. 40대 이하의 자녀세대는 재산증식도 어렵고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인식하며, 50대와 60대는 상속인이자 피상속인으로 자녀들 간 공평한 상속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 세대에 상속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세대 간 재산 상속인 증여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4) 재산 증여와 상속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조선시대 중기 이후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 상속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 장자 상속 문화가 약해지면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아들과 딸의 차등 분배 인식도 낮아지고 유교적 문화의 영향이 약해짐. 부모세대는 노후준비 후 잔여 재산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고 부모 부양 및 돌봄 이행과 유교의례 이행, 자녀의 재산 축적 기여 등을 고려한 분배를 고민하고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차별적 불평등 관습을 수용하지 않음
- 지금까지 상속관행이 관습적인 가족공동체 영속에 목적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혈연 중심의 재산 상속에서 벗어나 사회환원 등 공익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

2. 정책적 시사점

가. 탈전통적 상속 인식 고취

- 제주사회의 재산 상속 인식은 탈전통적 과도기에 머물고 있음. 전통적 상속 인식에서 벗어나 평등적이고 현실적인 상속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못함. 따라서 탈전통적 상속 인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재산의 형성은 부부 공동 노력의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여성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재산의 분배는 전통적 관습에 의존하여 장자 또는 아들 세대 등의 관습을 따르고 있음
 - 성평등 인식 확산과 함께 성에 따른 차별적 재산 분배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고, 현행

법의 남녀균분상속에 대한 인지 및 적합성 인식도 높지만 제사주재자 우대와 60대 이상의 아들과 장남·장녀 우대 인식은 여전함

- 관습적 상속 인식을 탈피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60대 이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 속의 남녀균분상속 사례를 활용하면 성평등의식 고취와 함께 탈전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남녀균분상속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나. 세대 간 갈등 완화 및 이해 촉진

- 부모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어 이른 증여 요구가 있는 경우 자녀세대와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 세대 간 갈등완화 및 이해 촉진 노력이 필요함
 - 50대와 60대는 이미 40대~50대에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들의 증여를 한 경험은 이에 비해 매우 적어 부모세대들이 재산 분배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자녀세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길어진 노후기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것임.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의지가 높지만 노후불안 때문에 재산 분배 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여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지속적인 저성장 경제환경과 불평등 속에서 재산축적이 어려운 자녀세대는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과 시기가 부모세대와 다를 수 있음
 - 최근에는 젠더 갈등 더불어 세대 갈등도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세대 갈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성인 자녀와 노부모 간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관계 교육이나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음
 - 재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소지를 최대한 감소시키며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재산 상속 재무계획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 있음. 이는 가계별 적절한 재산 상속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세대의 노후설계와 자녀세대의 경제관리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다. 재산 상속의 의무에서 선택으로의 변화

-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부모의 상속의지는 여전하나 긴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 상속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다음 세대로의 재산 상속은 부모의 의무가 아니며, 부모는 자신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함
 - 재산 상속의 범위를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재산 축적 목적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상속과 증여로 인한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상속과 기부를 고려할 필요 있음. 자녀 세대는 유산 상속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께 참여를 권유할 필요 있음
 - 세대 간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현재, 사회적 상속과 기부에 대한 정보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 방안 마련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신의 부모들을 부양하고 유교적 의례 의무로 이행했지만 자녀세대로부터의 돌봄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재산 상속 및 분배의 목적과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함
 - 재산의 분배 및 상속 시기에 있어 부모 세대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 핵가족화된 시대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될 때 이미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상속 지분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배우자상속제도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자 기여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수적(附隨的)으로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임
 -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와 효도를 담보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작성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담부 증여를 홍보할 필요 있음

-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나 농지연금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적극 유도할 필요 있음

마. 재산 상속에 따른 가족공동체의 해체 위기 인식 각성 필요

- 최근 결혼과 출산으로 감소와 다양한 가족 유형의 확산은 혈연중심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옴
- 재산 상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공동체의 균열과 갈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산 증여 및 상속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족공동체의 영속성이지만 재산 증여 및 상속 시기 및 분배 방식은 세대 간, 세대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따라서 장자 중심 상속과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차별적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상속·증여 중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상속·증여 관련 갈등을 사회적으로 예방할 필요 있음

참고문헌

- 강유진. 2012. “단독가구노인의 재산상속의식과 관련요인: 개인특성과 세대관계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생활과학회지』 23(2): 145-162.
- 김상애. 2022. “변화하는 제주도 개발 담론과 마을, 땅을 둘러싼 성원권의 젠더정치학.”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김혜숙·김항원·유철인. 2005. “공동거주의 의미와 한국가족의 변화 - 서울지역과 제주도의 도시중산층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1): 3-34.
- 남보람·이재림·최새은. 2015. “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에 관한 판례분석.” 『가족과 문화』 27(2): 212-261.
- 문영소·김양희. 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17(2): 157-171.
- 박명희 정주원. 2000.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2): 91-107.
- 박미혜. 2010.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 박혜인·홍형욱. 2012. 『한국가정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 이옥부. 2019. “조선후기 제주도 지역 여성의 재산 소유와 상속-구좌읍 김해 김씨 가계의 별급문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4: 287~314.
- 이재림. 2017. “성인자녀의 상속과정 경험과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 문화』 29(1): 225~264.
- 제주여성회 정책위원회. 2021. “제주의 딸들에게 세대 별로 들어보는 증여 상속 이야기.” 『제주여성』 119: 6-23.
- 최재석. 1979. 『제주의 친족조직』 일지사.
- 한삼인·김상찬. 2011. “제주지역의 재산상속에 관한 법문화.” 『법학연구』 42: 117-147.
- 현용준. 1985. “제주도민속문화의 보존과 개발방향.” 『제주도연구』 제2집.
- Sousa, L., A. R. Silva, L. Santos, and M. Patrão. 2010. “The Family Inheritance Process: Motiva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 *European Journal of Ageing* 7: 5-15.
- Stum, M. S. 2000. “Families and Inheritance Decisions: Examining Non-titled Property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3): 177-202.
- 국민연금연구원. 201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8차년도) 원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조사				
<p>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제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p> <p>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와 향후 과제」 연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귀하가 주시는 의견은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년 7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p>					
<p><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p> <p>○ 조사대상 : 제주지역 만 40세 이상 성인 남녀</p> <p>○ 책임연구 : 신승배 연구위원 ☎ 064-720-4915 E-mail : sbsin0314@jewfri.kr</p> <p>○ 조사기관 : 제주리서치 ☎ 064-752-4670 E-mail : na6778@daum.net</p>					

■ 응답 대상자

- ※ 귀하 부모님의 출생지역은 어디입니까?
- 부 _____ ① 제주지역 ② 제주 외 지역 모 _____ ① 제주지역 ② 제주 외 지역
- ※ 부모 모두 제주 외 지역인 경우 조사 중단

■ 상속 및 증여 경험

- Q1. 귀하는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토지나 주택 등의 현물이나 현금 형태로 받은 상속이나 증여(종천재산, 신탁재산 등) 포함)
-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Q2로 이동)
- ※ 상속: 돌아가신 분이 소유권과 처분권을 남겨주신 재산
※ 증여: 살아있는 분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

상속 또는 증여 세부내용	Q1-1. 상속 또는 증여 종류	Q1-2.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가족 코드 참조)	Q1-3. 언제 받았습니까? 년도	Q1-4.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금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년도								
			년도								
			년도								

- * 현물 상태의 상속이나 증여는 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
* 가격 환산이 어려울 경우 해당 현물(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현물명(혹은 m²) 기재
*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명의 명의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응답
* 동일 범주의 증여자 및 상속자가 두 명 또는 두 번 이상이 경우 금액이 큰 순으로 두 개만 응답

참고 Q1-1. 상속·증여 종류	참고 Q1-2. 가족 코드			
1. 부동산	① 배우자	⑥ 첫째 자녀	⑪ 여섯째 자녀	⑯ 동거 손자녀
2. 동산(현금제외, 예금, 채권, 주식 등)	② 부	⑦ 둘째 자녀	⑫ 일곱째 자녀	⑰ 비동거 손자녀
	③ 모	⑧ 셋째 자녀	⑬ 여덟째 자녀	⑱ 동거 형제자매
3. 현금	④ 배우자의 부	⑨ 넷째 자녀	⑭ 아홉째 자녀	⑲ 비동거 형제자매
	⑤ 배우자의 모	⑩ 다섯째 자녀	⑮ 열번째 자녀	⑳ 기타 친인척

증여 세부내용	Q4-1. 증여 종류	Q4-2.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가족 코드 참조)	Q4-3. 언제 주었습니까? 년도	Q4-4. 증여 당시의 금액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천원	
			년도									
			년도									
			년도									

* 증여 당시의 금액 : 여러 번에 걸쳐 물려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물려준 년도를 기준으로 두 개만 응답함.

Q4-1. 증여 종류	Q4-2. 가족 코드			
1. 부동산	① 첫째 자녀	⑥ 여섯째 자녀	⑪ 동거 손자녀	⑯ 기타 ()
2. 동산(현금제외, 예금, 채권, 주식 등)	② 둘째 자녀	⑦ 일곱째 자녀	⑫ 비동거 손자녀	
	③ 셋째 자녀	⑧ 여덟째 자녀	⑬ 동거 형제자매	
3. 현금	④ 넷째 자녀	⑨ 아홉째 자녀	⑭ 비동거 형제자매	
	⑤ 다섯째 자녀	⑩ 열번째 자녀	⑮ 기타 친인척	

※ ‘○ 께 자녀’는 ‘○ 께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하는 의미임

Q5. 귀하는 앞으로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 ① 비해당(남길 유산 없거나 자녀가 없음) (☞Q7로 이동) ① 예(☞Q5-1로 이동) ② 아니오 (☞ Q6으로 이동)

Q5-1. 귀하는 어떤 방식으로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 ① 자녀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함
 ② 동거하며 수발 등 봉양을 해준 자녀에게 많이(혹은 전부) 남김
 ③ 별거하더라도 수발 등 봉양을 해준 자녀에게 많이(혹은 전부) 남김
 ④ 사업 등을 잇는 자녀에게 많이(혹은 전부) 남김
 ⑤ 사업 등을 잇지 않은 자녀에게 많이(혹은 전부) 남김
 ⑥ 자신을 봉양하지 않더라도 장남·장녀에게 많이(혹은 전부) 남김
 ⑦ 자녀가 1명이므로 그 자녀에게 전부 남김
 ⑧ 기타 ()

Q5-2. 귀하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자산은 어떤 것 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② 스스로 취득한 부동산 ③ 상속·증여 받은 금융자산
 ④ 스스로 취득한 금융자산 ⑤ 상속·증여 받은 기타자산 ⑥ 스스로 취득한 기타자산
 ⑦ 기타 ()

Q6. 귀하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 사용하고 싶으므로 ② 자녀 이외에 친족에게 남기고 싶으므로
 ③ 기부하고 싶으므로 ④ 유산을 남길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⑤ 기타 ()

■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및 선호 형태

※ 다음은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및 선호 형태에 관한 물음입니다.

Q7.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및 선호형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산상속은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들의 상속분이 딸의 상속분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재산상속은 아들에게 특별히 더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모든 자녀에게 상속하되 장남에게 좀 더 많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재산상속을 받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재산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종가집에 상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Q7.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 및 선호형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재산은 모든 자녀들에게 균분 상속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지금의 상속법(아들: 딸: 배우자=1: 1: 1.5)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의 상속분이 남성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재산상속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재산상속은 가장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녀 중에서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살핀 사람은 상속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재산은 생전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기존 증여분을 고려하여 유언(공증)에 따라 나누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구두 상속분이 실제 상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여 상속보다는 본인 당사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료비 등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역모기지정책(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주택 연금 제도)을 이용해서 최대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유산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자녀에게 재산모두를 상속하지 않더라도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상속으로 인한 갈등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속보다는 사회 환원이 옳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들이 없는 경우, 재산을 친척에게 상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 상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재산상속은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6. 재산상속은 사후에 법적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 다음은 재산상속의 관습실태에 관한 물음입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답하여 주십시오.

Q8. 귀하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유산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배분 되었습니까?

- ① 생전 처분에 의하여 배분되었다
- ② 유언에 의하여 배분되었다
- ③ 생전에 재산분할을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분되었다.
- ④ 법적상속분에 의하여 배분되었다
- ⑤ 기타 ()

Q9.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배분 되었습니까?

- ①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다 (☞ Q10으로 이동)
- ② 아들과 딸 간에 차별이 있었다

Q9-1. 아들과 딸 간에 차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습니까?

- ① 큰아들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② 아들에게만 공동상속 했지만, 큰아들을 우대하였다
- ③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상속되었다
- ④ 아들:딸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 ⑤ 기타 ()

Q9-2. (여성의 경우) 친정의 상속분을 어떻게 배분할 생각입니까?

- ① 딸에게만 줄 것이다
- ② 아들과 딸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이다
- ③ 아들에게만 줄 것이다
- ④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 ⑤ 기타 ()

Q19-1. 만약 알고 있다면, 배우자를 우대하여 상속분을 증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②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③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유 :)

Q20. 빚(채무) 승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식이 갚아야 한다(단순승인)
- ②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면 된다(한정승인)
- ③ 안 갚아도 된다(그 이유는 :)

Q21.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재산 상속에 있어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우대되어야 한다
- ② 제사를 모시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 ③ 기타 ()

■ 응답자 일반 사항 및 특성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SQ2.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
- ② 제주시 읍면지역
- ③ 서귀포시 동지역
-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SQ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SQ4. 귀하는 제주에서 사진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SQ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 ② 배우자 있음
- ③ 별거
- ④ 이혼
- ⑤ 사별

SQ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 ④ 4년제 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재학 이상

SQ7. 귀하의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월세(보증부 월세, 사글세)
- ④ 연세
- ⑤ 기타 ()

SQ8. (유배우자인 경우) 귀댁은 맞벌이 가구입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SQ9. 귀댁의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총 _____만원

SQ10. 귀하가 하시는 일(직업)은 무엇입니까?

※ 직업이 두개 이상인 경우 주된 직업 1개만 표시합니다.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 노무 종사자

SQ11.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음
- ② 대체로 좋음
- ③ 보통
- ④ 좋지 않음
- ⑤ 매우 좋지 않음

SQ12. 귀하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	중간층	----->				상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마지막까지 응답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서 2022-07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와 향후 과제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민 무 속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 064-720-4923, F. 064-711-2349
www.jewfri.kr
인쇄소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87026-87-7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의 성별 구조와 향후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45 제주시 연으로 89(연동) 3층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9 791187 026877

ISBN 979-11-87026-87-7

비매품/무료

93330

